

2010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

장명립 김진영
김현숙 박창언
신은수 이연승
김명순 이미정
양승실 이신동
민용성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 교육 체제 개편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1부 만 5세 취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차례

I. 서론	3
II. 만 5세 취학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과 쟁점	4
1. 만 5세 취학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기존 연구	4
2. 만 5세 취학의 경제적 효과의 쟁점	5
III. 출산율 관련 연구와 시사점	7
1. 해외 사례	7
2. 국내 연구	12
3. 만 5세 취학과 관련한 시사점	13
IV. 만 5세 취학의 사교육 감소효과	15
1. 유아 사교육 현황	15
2. 취학 후 사교육 패턴	23
3. 만 5세 취학의 시사점	25
V. 만 5세 취학의 여성경제활동 제고 효과	27
1. 해외 사례	27
2. 양육비 경감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33
3. 만 5세 취학의 시사점	36

VI. 만 5세 취학의 입직연령 하락 효과	38
1. 해외 사례	38
2. 최근의 청년노동 시장 변화 추이	43
3. 만 5세 취학의 시사점	50
VII. 맺는 말	52
참고문헌	54

표 차례

<표 III- 1> 국가별 합계출산율 변동추이(2003~2009)	9
<표 IV- 1> 조기 사교육 가짓수	15
<표 IV- 2> 연령에 따른 사교육 실시정도	16
<표 IV- 3> 연령에 따른 사교육의 가짓수	16
<표 IV- 4> 자녀들의 사교육 여부	17
<표 IV- 5>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사교육	18
<표 IV- 6> 유아의 연령에 따른 조기 사교육 종류	19
<표 IV- 7>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의 구조: 자녀 개인 비용	20
<표 IV- 8> 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용 평균(SD) ·	21
<표 IV- 9> 연령과 소득수준 및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용	22
<표 IV-10> 아동의 연령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주당 사교육 시간	22
<표 IV-11> 사교육비 규모, 참여율 및 시간	24
<표 IV-12> 만 연령별 사교육비	26
<표 V- 1> 국가별 여성 고용률 변동추이(2000~2008)	28
<표 V- 2> 유럽 15개국의 여성 고용률(1960~2000)	30
<표 VI- 1> OECD 국가별 20~24세 남성 경제활동 참여율(2000~2008)	39
<표 VI- 2> OECD 국가별 25~29세 남성 경제활동 참여율(2000~2008)	40
<표 VI- 3> OECD 국가별 20~24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2000~2008)	41
<표 VI- 4> OECD 국가별 25~29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2000~2008)	42
<표 VI- 5> 주요 OECD 국가의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전이기간과 유형(1996)	42
<표 VI- 6> 대졸자와 취업자 수(졸업생 취업조사)	43
<표 VI- 7> 대졸자와 취업자 수(졸업생 취업조사)	44
<표 VI- 8> 청년실업률 비율	45
<표 VI- 9> 청년실업률 비율의 국제비교	46
<표 VI-10> 기간노동력에 대한 청년의 입직률과 이직률	46
<표 VI-11> 노동패널자료(KLIPS)를 사용하여 구한 입직률	46
<표 VI-12> 노동패널자료(KLIPS)를 사용하여 구한 이직률	47
<표 VI-13> 우리나라 니트의 현황	48

그림 차례

[그림 III-1] 일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이(1인당 GDP 2만 달러 기준) ……	11
[그림 IV-1] 학년별, 과목별 사교육비 지출액 ……	24
[그림 V-1] OECD 주요국들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29
[그림 V-2]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 ……	33
[그림 V-3] 국가유형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의 변화 ……	34
[그림 V-4] 여성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의 관계 ……	35
[그림 V-5] 저출산 현상의 복합적 인과관계 ……	35
[그림 VI-1] 청년실업의 현황 ……	45
[그림 VI-2] 입직률 ……	46
[그림 VI-3] 이직률 ……	46
[그림 VI-4] 신규졸업자 실업률 ……	47
[그림 VI-5] 신규졸업자 이직률 ……	47
[그림 VI-6] 신규졸업자 입직률 ……	48

2부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조정의 대안 모색

차 례

I. 서론	61
II. OECD 선진국의 만 5세 학제제도 사례 및 시사점	63
1.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정책의 현황	63
2. 이탈리아의 영아보육과 유아교육행정체제	68
3.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73
4. 프랑스의 보육 및 유아교육 제도	78
5. 영국의 보육과 유아교육체제	83
6. 각국 사례의 시사점	90
III. 대안모색 1: 만 5세 초등학교 편입 방안	92
1. 취지 및 배경	92
2.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	95
3. 장점	106
4. 단점	107
IV. 대안모색 2: 기초학년(K-grade) 도입방안	109
1. 취지 및 배경	109
2. 구체적인 세부시나리오	114
3. 장점	122
4. 단점	123
5. 소결	124

V. 대안모색 3: 현행제도 유지 및 개선방안	127
1. 대안 제시 배경	127
2.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	131
3. 장점	143
4. 단점	145
5. 소결	145
VI. 조기진급·졸업 활성화(학제탄력화) 방안	147
1. 취지 및 필요성	147
2. 운영현황	149
3. 국제동향	154
4. 정책대안 시나리오	163
5. 장점	171
6. 단점	172
VII. 만 5세 학제개편 대안별 예산추계	173
1. 초등학교 편입 시나리오 예산추계	173
2. 기초학년 도입관련 예산추계	176
3. 현 지원체계 유지 시 예산추계	184
VIII. 요약 및 결론	191
참고문헌	194
부록	197
1-1. 만 5세 일괄 편입 시 소요 예산(1안): 초등학교	197
1-2. 만 5세 일괄 편입 시 소요 예산(1안): 중·고등학교	199
2-1. 만 5세 3개월 분할 편입 시 소요 예산(2안): 초등학교	200
2-2. 만 5세 3개월 분할 편입 시 소요 예산(2안): 중학교	202
2-3. 만 5세 3개월 분할 편입 시 소요 예산(2안): 고등학교	203
3-1. 만 5세 2개월 분할 편입 시 소요 예산(3안): 초등학교	204
3-2. 만 5세 2개월 분할 편입 시 소요 예산(3안): 중학교	206
3-3. 만 5세 2개월 분할 편입 시 소요 예산(3안): 고등학교	207

표 차례

<표 II-1> 유치원 및 보육소와 인정(認定)어린이원의 기능	65
<표 II-2> 인정(認定)어린이원의 재정상의 특례(사립시설의 경우)	67
<표 II-3> 이탈리아 영아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 행정체제	72
<표 II-4> 이탈리아 영아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 행정체제	73
<표 II-5> 스웨덴의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과 이용 아동 수	77
<표 II-6> 레저타임 센터수와 이용 아동 수	77
<표 II-7> 프랑스 공공 보육시설 아동 수의 추이	81
<표 II-8> 영국의 육아서비스 시설 및 이용 아동 수	86
<표 II-9> 지역별, 시설유형별 이용비용	87
<표 II-10> 영국의 육아서비스 담당 교사의 자격 및 보수	87
<표 II-11> 만 5세 관련 학제의 국가 간 비교	91
<표 III-1> 조기입학 아동의 학교적응 및 성취 관련 연구 정리	94
<표 III-2> 만 5세아 일괄 편입 시 학생 수 증가 현황	95
<표 III-3> 만 5세아 3개월 단위 분할 편입 시 학생 수 증가 현황	100
<표 III-4> 만 5세아 2개월 단위 분할 편입 시 학생 수 증가 현황	104
<표 IV-1> 현행 유치원 생활 영역과 초등학교 1학년 교과 간의 연계	113
<표 IV-2> 3년에 걸친 편입방안	118
<표 IV-3> 5년에 걸친 편입방안	118
<표 V-1> 각 나라별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의 종류	127
<표 V-2>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현황	129
<표 V-3> 유치원과 보육시설 연간 비용에서 부모 부담률	131
<표 V-4>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에서 무상교육 조항 비교	132
<표 V-5> 만 5세 우리나라 인구수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아 재원 비율 ..	132
<표 V-6> 설립유형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아 수	133
<표 V-7> 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른 표준 교육비용의 1안과 2안	134
<표 V-8>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인간상과 목표의 비교	135
<표 V-9>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하위영역별 내용 비교	136
<표 V-10>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인건비 호봉 지급 기준(2010년)	138

<표 V-11> 각 시도 교육청별 만 5세 학급당 유아 수	142
<표 VI-1> 조기졸업자 대상 인원수	150
<표 VI-2> 조기진급 학생 현황	150
<표 VI-3> 조기졸업 학생 현황	151
<표 VI-4> 국내영재교육의 현황	152
<표 VI-5> 특수재능 판별 방법	158
<표 VI-6> 초등학생의 진급 및 유예 운영방식 사례	166
<표 VI-7> 학년별 및 교과별 속진의 약점	172
<표 VII-1> 예산추계의 기준	173
<표 VII-2> 5세 초등학교 편입 소요 예산 1(안)	174
<표 VII-3> 5세 초등학교 편입 소요 예산 2(안)	175
<표 VII-4> 5세 초등학교 편입 소요 예산 3(안)	175
<표 VII-5> 5세 초등학교 편입 소요 예산 4(안)	176
<표 VII-6> 시설유형별 서비스 수혜 대상자(2010년 기준)	178
<표 VII-7> 연도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아동 수 추정	178
<표 VII-8> 보육시설규모별 연장제 만 5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178
<표 VII-9> 보육시설규모별 종일제 만 5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179
<표 VII-10> 제 1시나리오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180
<표 VII-11> 유치원 연장제 기준 만 5세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	180
<표 VII-12> 유치원 종일제 기준 만 5세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	180
<표 VII-13> 제 2시나리오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180
<표 VII-14> 제 3시나리오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2012년 시작 기준)	181
<표 VII-15> 제 4시나리오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181
<표 VII-16> 제 1시나리오 소요예산	182
<표 VII-17> 제 2시나리오 소요예산	182
<표 VII-18> 제 3시나리오 소요예산	183
<표 VII-19> 제 4시나리오 소요예산	183
<표 VII-20> 정부지원 대상 아동 수	185
<표 VII-21> 제 1시나리오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186
<표 VII-22> 제 2시나리오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186
<표 VII-23> 제 3시나리오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2012년 시작 기준)	186

<표 VII-24> 제 4시나리오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187
<표 VII-25> 제 1시나리오 소요예산	188
<표 VII-26> 제 2시나리오 소요예산	188
<표 VII-27> 제 3시나리오 소요예산	189
<표 VII-28> 제 4시나리오 소요예산	189

그림 차례

[그림 II-1] 이탈리아의 기간학제	69
[그림 II-2] 이탈리아의 교육행정체제	70
[그림 II-3] 스웨덴의 아동보육	76
[그림 II-4] 종일제 보육서비스 이용 시 비용 및 부담	85
[그림 II-5] 반일제 육아서비스 이용 시 비용 및 부담	85
[그림 III-1] 4개년 교육과정을 3년으로 압축 적용 예)	98
[그림 III-2] 5개년 교육과정을 4년으로 압축 적용 예)	98
[그림 V-1] 교육과 보육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	141
[그림 VI-1] 조기진급(졸업) 연계 시스템	163
[그림 VII-1] 기초학년 도입의 시나리오 별 예산수준	184
[그림 VII-2] 현 체제 유지 시 시나리오별 예산수준	190

1부

만 5세 취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I. 서론

- 본 보고서에서는 취학연령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출산율 제고 효과 측면에서 논함.
 -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변경할 때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여러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주요 관심은 출산율 제고 효과임.
 - 만 5세 취학과 출산율을 연결하는 중간 효과로는 사교육비 경감, 여성 경제활동 제고, 입직 연령 하락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만 5세 취학과 사교육비 경감 사이의 관계, 만 5세 취학과 여성 경제활동 제고 효과, 만 5세 취학과 입직 연령 하락의 효과를 각각 살펴보고 그에 따른 출산율 제고 효과, 출산율 제고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차례로 살펴보게 됨.

- 국내외의 기존 연구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합리적인 예측을 시도함.
 - 만 5세 취학을 전제로 한 사교육비 경감, 여성 경제활동 제고, 입직 연령 하락 관련 기존 연구는 존재하지 않음.
 - 각 개인 및 사회의 선택은 여건 변화에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 5세 취학연령이 변한다는 전제에서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함. ⇒ 만 6세 취학 시와 만 5세 취학 시의 여러 행태들은 다를 것이기 때문임.
 - 무작위 실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 6세 취학 시 행태를 근거로 만 5세 취학 시의 양상을 유추해보는 방법이 최선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의적인 해석과 가정도 불가피함.
 - 이와 같은 제한점 하에, 가능한 한 합리적인 해석과 가정을 취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할 것임.

II. 만 5세 취학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과 쟁점

1. 만 5세 취학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기존 연구

- 현재 만 5세 취학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는 없는 상태임.
- 만 5세 취학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만 5세 취학의 효과로 예견되는 출산율이나 여성의 노동 참여율 관련 논의는 최근에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짐.

- 기존의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만 5세 취학이라는 맥락과 관계없이 이루어져 왔음.
- 예컨대 출산율이나 여성 경제활동 참여 관련 연구는 각종 정책 효과 예상이라는 맥락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음.
- 사교육비의 경우 주로 총액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2007년 이후의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사교육의 성적 상승효과, 가구별 소득이 가구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된 관심이었음.

- 기존 연구들이 만 5세 취학이라는 맥락과 관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을 지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존 연구들 중에서 만 5세 취학에 대해 명시적인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띤 연구들은 찾을 수 없음.
- 이에 비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나 출산율 변화의 광범위한 원인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축적되어 있음.

- 따라서 기존 연구들이 고려한 주요 변수들과 만 5세 취학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여 만 5세 취학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살펴볼 여지는 있음.

2. 만 5세 취학의 경제적 효과의 쟁점

□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양육비 부담 경감

- 양육비는 개념적으로 육아비, 교육관련 양육비, 간접 양육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육아비는 순수하게 아이를 기르는데 사적(私的)으로 소요되는 비용
 - 교육관련 양육비는 주로 유아 사교육비를 의미
 - 간접 양육비는 명시적인 현금 흐름은 없지만 노동시장 참여 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으로 직접 양육비보다 더 클 수도 있음.

□ 만 5세 취학의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음.

- 취학연령 인하로 최소 1년간의 유치원 교육비가 감소한다는 주장
 - 유치원 단계에서 초등학교 취학 후를 대비해 행해지는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만 5세의 사교육은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임.
- 초등학교 준비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 증대로 오히려 증가한다는 주장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초등학교 취학 대비 사교육 자체가 줄지는 않으며 현재 만 5세의 사교육이 만 4세로 앞당겨지는 효과만 있다는 주장
- 상반되는 주장에 대한 검토를 위해 최근 통계청 사교육비조사를 바탕으로 학년별 과목별 사교육비 분석을 통해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정책이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예측해 봄.
 -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유아 사교육 조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간 기존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아사교육 실태에 더하여 취학 후 사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교육 효과를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양육부담 경감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효과 검토
 -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09) 수준에서 정체(OECD 평균 61.3%)
 - 취학연령을 낮출 경우 30대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초등학교 돌봄 기능 미흡 등으로 퇴직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반론도 존재
 - 양육부담과 기혼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관계를 다룬 기존연구들을 분석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루어진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를 예측해 봄.

- 입직연령 인하효과의 검토
 - 잠재성장률 유지를 위하여 입직연령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 동안 있어 옴.
 - 이에 따른 학제 개편 논의도 진행된 바 있음.
 - 입직 연령 인하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 방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청년실업 및 고용 없는 성장 등을 고려할 때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정책만으로 실제 입직 연령 하락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반론도 존재

- 이상의 상반된 견해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실증연구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정량적 수치를 제공

Ⅲ. 출산율 관련 연구와 시사점

1. 해외 사례

가.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경향

- 1920년대 초에는 유럽 국가의 절반 정도가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fertility level)에 미치지 못함(Frejka and Ross, 2001).
- 출산율 수준은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에 잠시 동안 베이비붐이 일어났던 1950년대에 일시적으로 상승되었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감소됨.
-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선진국의 총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2.8명에서 1.57명으로 44% 감소함(Bongaarts, 2002).
-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출산율이 1.41로 가장 낮았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일본보다 훨씬 낮음.
- 낮은 출산율은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이 늦어진 것에서도 부분적인 영향을 받음.
- 선진국 여성들의 첫 출산 연령이 2-3년 정도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되고 출산율회복도 늦어짐(McDonal, 20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2005」를 보면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을 기준으로 '상대적 고출산 국가군'과 '상대적 저출산 국가군'으로 구분함.
- '상대적 고출산 국가군'에는 북유럽국가, 불어권국가, 영어권국가 등이 해당되고, '상대적 저출산 국가군'에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해당됨.
-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불어권, 북유럽국가, 영미권은 출산율이 안정화되

거나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 과거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독일어권, 남부유럽국가, 동부유럽국가, 동아시아국가는 뒤늦게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함.

□ <표 III-1>에 현 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가들의 최근 합계출산율 변동추이를 제시함.

- 각국의 출산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 증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육아 인프라, 노동시장 구조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출산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유럽지역에 속한 OECD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 출산율이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출산율 1.3명 이하 초저출산 국가도 1990년대 이후 확산되고 있음.
- 프랑스, 미국, 호주는 합계출산율이 1.7명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출산율 증가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프랑스의 출산율은 최근에도 계속 높아져 2.0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은 오랜 기간 동안 출산율 회복을 위해 포괄적 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특히, 한국과 일본은 최저출산국가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낮아지자 이를 “1.57 쇼크”로 받아들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책인 엔젤플랜을 추진함으로써 2004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음.
- 한국과 스웨덴을 비교해 보면, 2003년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1.56명, 스웨덴이 1.54명으로 격차가 미미하였지만 2009년에는 한국이 1.21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스웨덴은 1.67명으로 차이가 늘어남.

<표 III-1> 국가별 합계출산율 변동추이(2003~2009)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독일	1.37	1.39	1.39	1.39	1.4	1.41	1.41
미국	2.07	2.08	2.08	2.09	2.09	2.1	2.05
스웨덴	1.54	1.66	1.66	1.66	1.66	1.67	1.67
스페인	1.26	1.28	1.28	1.28	1.29	1.3	1.31
이태리	1.26	1.28	1.28	1.28	1.29	1.3	1.31
일본	1.38	1.39	1.39	1.4	1.23	1.22	1.21
캐나다	1.61	1.61	1.61	1.61	1.61	1.57	1.58
프랑스	1.85	1.85	1.85	1.84	1.98	1.98	1.98
한국	1.56	1.26	1.26	1.27	1.28	1.2	1.21
호주	1.76	1.76	1.76	1.76	1.76	1.78	1.78

자료: <http://www.indexmundi.com>

나. 스웨덴

- 스웨덴의 출산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가능한 주요 원인
 - 양성평등을 강조하여 출산·양육과 노동시장 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젠더정책과 고용정책을 명시화 함.
 - 미혼모, 동가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공보육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 함. 보육시설에 대해 GDP의 0.3%를 지출하며 질적 수준도 높으며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보편적 수당인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비과세로 적용됨 (김미숙, 2008).

다. 프랑스

- 프랑스는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의 장기적 추진으로 1970년대에 하락하기 시작한 출산율이 최근 들어 최대 2.0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 이유
 - 출산과 자녀양육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가족 친화적 정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저출산 대책을 위해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보편적으로 적용함.
- 여성의 경제활동 및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 가족정책으로써, 여성을 지원해 주는 많은 수당이 출산에 대한 임금의 대가로 지원되고 있음.
- 셋째아 정책을 비롯한 대가족 구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세금감면, 연금 크레디트제도 등 간접적인 혜택의 적용을 확대함.

라.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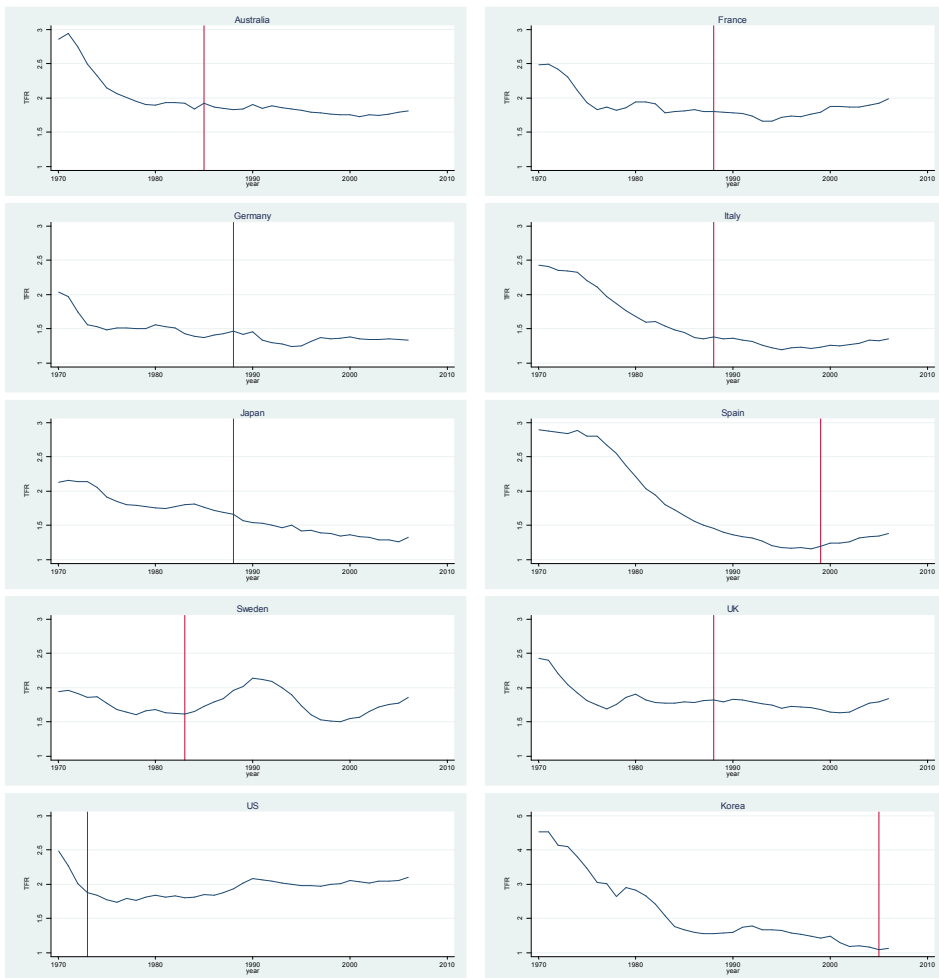
- 미국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민 세대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주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구조가 유연하기 때문에 출산에 따른 부담이 적으며, 보육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구직 및 재취업이 용이하고 근무시간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
- 미국의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에서 1980년대 전반에 1.8명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회복하여 2.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미국에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출산율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이유는 시간제 노동의 보급, 재취업의 용이성과 같은 유연성 때문임.
-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이민정책도 출산율 안정에 기여함.

마. 일본

- 일본은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일본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
 - 노동에 대한 양성간의 전통적 역할규범이 변하지 않고 있음.
 - 정부목표에 비해 재정 투입이 미약하고 정부의 정책이 한계에 부딪침.
 - 시기별로 단편적인 대책마련에 급급하여 핵심적인 문제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함.

바. OECD 국가 출산율 추이의 특징

- OECD 국가를 살펴본 결과 합계출산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1명 이하로 내려가는 사례는 없음.
- 1인당 GDP 2만 달러 도달 이후 합계출산율이 일정기간 후 완만한 증가 양상을 보임.



[그림 III-1] 일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이(1인당 GDP 2만 달러 기준)

2. 국내 연구

□ 기존 출산율관련 연구 소개

- 출산율 저하의 원인: 국민소득 상승,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발달,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정책 및 인구정책,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 육아 및 교육비용 상승, 영아 사망율 급감, 소(少)자녀 선호로의 가치관 변화
- 이 중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녀양육에 따른 요인을 압도(최숙희, 2005)
-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는 현상
- 기존 저출산 연구에 따르면 자녀요인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

□ 만 5세 취학제도가 양육비에 미치는 영향

- 「2007년 KDI 가구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시설, 유치원, 기타육아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 이용률이 영아의 경우 48%, 유아의 경우 96%에 이르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육비 감소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우석진(2008): 모의정책실험에서 보육지원으로 가구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노동공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급 혹은 유급 휴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정책에 비해 크지 않고 오히려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었음.
 -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촉진하지만 예상재정에 대비한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가 기혼 여성 노동공급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만 출산율 제고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지적

□ 양육비 감소가 여성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 김대일(2008): 영유아 등 미취학 자녀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제약함
⇒ 보육시설 지원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음.
 - 취학 자녀(특히 고등학교 재학 자녀)도 고학력 기혼 여성, 그리고 고소득 가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짐.
- 최경수(2008): 출산의 잠재비용에서 여성의 노동공급 축소에 의하여 초래되는 기회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함.

3. 만 5세 취학과 관련한 시사점

□ 만 5세 취학과 출산율 제고와의 관련성

- 만 5세 취학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려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
-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양태와 관련성
 - 기존의 취업 기혼여성과 미취업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여부 및 양태가 다를 것이고 이에 따른 선택의 변화유무가 관건이 될 것임.
 - 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만 5세 입학은 보육비 경감에 따라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임.
 - 하지만 만 5세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미비 시 그 효과는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미취업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만 5세 입학은 보육비 경감에 따라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음.
- 보육비 경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 가능성
 - 취학연령을 낮출 경우 유치원 과정에 들어가는 보육비/교육비 부담의 경감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
 - 하지만 초등학교 돌봄 기능 미비로 인하여 보육비/교육비 부담 증대 가능성 또한 존재

- 사교육비 연령대별 구조를 보면 오히려 교육비 부담 증가 가능성이 큼.
- 또한 보육비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경험적 증거가 존재함.
- 자녀수 및 형제/자매의 연령과 관련하여 만 5세 입학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IV. 만 5세 취학의 사교육 감소효과

1. 유아 사교육 현황

가. 사교육의 형태

-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관점(Bruner, 1962)에서, 초창기의 사교육은 공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실시된 일종의 조기교육의 형태를 취함.
- 이러한 맥락에서 조기에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학습요령을 잘 터득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 음악, 미술 등 예능교육과 같은 조기교육 경험은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이옥, 1997) 사교육 또는 조기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
- 부모들의 교육열은 나날이 높아졌지만 이러한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공교육 기능은 저하되고 사교육에 높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함.
- 만 0~3세까지 영아의 조기 사교육에 대해 연구한 임유경(2003)에 의하면 전체 영아의 16.7%는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83.7%가 적어도 1가지 이상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아의 34.5%가 1가지 사교육을 15.1%가 2가지 사교육을, 16.9%가 3가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 조기 사교육 가짓수

가짓수	0	1	2	3	4	5	6 이상	계
빈도(%)	53(16.3)	112(34.5)	49(15.1)	55(16.9)	31(9.5)	15(4.6)	10(3.1)	325(100.0)

자료: 임유경(2003). 영아기 조기, 특기교육의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만 3세~7세까지 유아의 조기 사교육에 대해 조사한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1)의 연구에서는 전체 유아의 86%가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사교육의 가짓수도 2~3가지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IV-2, IV-3 참조).
- <표 IV-2>와 <표 IV-3>에 의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 가짓수의 종류도 점차 증가하여 만 7세 아동 경우 6가지 이상 사교육을 하는 유아가 전체 1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 연령에 따른 사교육 실시정도

단위: 수(%)

연령	실시함	실시안함	계
3세	88(74.6)	30(25.4)	118(100)
4세	342(78.3)	95(21.7)	437(100)
5세	772(88.0)	104(12.0)	876(100)
6세	477(88.0)	58(10.8)	535(100)
7세	94(92.2)	8(7.8)	102(100)

자료: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이화교육총서, 2003(2).

<표 IV-3> 연령에 따른 사교육의 가짓수

단위: 수(%)

가짓수	연령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만7세 이상
0가지	0(0)	0(0)	0(0)	0(0)	0(0)
1가지	54(61.4)	13(38.3)	195(25.3)	105(22.0)	12(12.8)
2가지	22(25.0)	113(33.0)	250(32.4)	123(25.8)	27(28.7)
3가지	8(9.1)	57(16.7)	174(22.5)	109(22.9)	15(16.0)
4가지	2(2.3)	22(6.4)	92(1.9)	79(16.6)	18(19.1)
5가지	1(1.1)	13(3.8)	38(4.9)	35(7.3)	12(12.8)
6가지 이상	1(1.1)	6(1.8)	23(3.0)	26(5.5)	10(10.6)
계	88(100)	772(100)	772(100)	477(100)	94(100)

자료: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이화교육총서, 2003(2).

- 이러한 결과들은 초등학교 고학년(98.4)>초등학교 저학년(98.4)>유아기(77.0)>영아기(34.6) 순으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우남희, 김영심,

이은정, 김현신(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표 IV-4 참조).

-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실시 연령은 영아기로 하향화되어 가고 있으며 영유아기보다 초등학교시기에 더 많은 사교육을 하고 있음.

<표 IV-4> 자녀들의 사교육 여부(N=871)

단위: 수(%)

적절성 \ 자녀연령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	고학년	전체
예	47(34.6)	184(77.0)	245(98.4)	243(98.4)	719(83.2)
아니오	89(65.4)	55(23.0)	4(1.6)	4(1.6)	152(16.8)
전체	136(100.0)	239(100.0)	(100.0)	(100.0)	871(100.0)

자료: 우남희, 김영심, 이은정, 김현신(2009). 초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25(1).

- 사교육의 가짓수만큼 사교육의 종류 또한 다양함.
 - 사교육의 종류는 피아노, 미술, 한글, 무용, 태권도와 같은 예, 체능 분야를 비롯해 한글, 영어, 논술, 과학등과 같은 학습위주의 사교육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있음.

-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사교육 종류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남희 외 3인(2009)의 연구 결과, <표 IV-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들은 한글(30.0%)을 제일 먼저 시켰고 그 다음은 영어(12.3%), 종합학습지(11.8%), 신체놀이(9.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피아노, 미술 등의 순임.
 - 유사하게 유아를 대상으로 살펴 본 이기숙 외 3인(2001)의 연구도 만 3, 4세 경우 한글(67%, 58%) 사교육이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 영어, 학습지, 수학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만 2세 영아의 84%가 한글과 학습지를 하고 있으며 만 3세 유아의 67%가 한글을, 15%이상이 종합 학습지를 하고 있다고 하였음.
 - 유아기 조기교육 실태를 연구한 이주련(2008)의 연구에서도, 역시 초기 사교육 종목별 실시순위 중 한글(60.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5>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사교육

단위: 명(%)

적절성	자녀연령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	고학년	전체
	한글	18(28.6)	65(33.2)	72(29.9)	68(29.4)	223(30.5)
	영어	1(1.6)	14(7.1)	37(15.4)	38(16.5)	90(12.3)
	종합학습지	11(14.3)	24(12.2)	22(9.1)	29(12.6)	86(11.8)
	신체놀이	9(1.6)	27(13.8)	24(10.0)	12(5.2)	72(9.8)
	피아노	1(1.6)	5(2.6)	18(7.5)	32(13.9)	56(7.7)
	미술	2(3.2)	14(7.1)	19(7.9)	17(7.4)	52(7.1)

자료: 우남희, 김영심, 이은정, 김현신(2009). 초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25(1).

- 영유아기에는 학습지와 한글의 사교육 비율이 높으나, 초등학교 연령에서는 학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영어와 피아노의 비율이 많이 나타남.
- <표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 7세 이상 아동의 경우 피아노(62%)를 가장 많이 함.
 - 이는 영어, 한글 순으로 나타난 어린 연령대와는 사교육의 종류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임.
 - 유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글을 깨우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의 1차적인 관심이 우선 한글과 초등학교 위한 준비에 있으며 이러한 능력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동의 예·체능 분야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 2002).
- 또한 유아의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연구한 박미란(2006)의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종류 중 만4세, 5세 경우 국어나 수학과 같은 교과에 도움을 주는 학습지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35.0%).
- 이는 유아들이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부모들의 자녀 학습에 관심이 증가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 학습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으로 생각됨.

<표 IV-6> 유아의 연령에 따른 조기 사교육 종류

단위: 명(%)

종류 \ 자녀연령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만7세 이상
한글	59(67)	199(58)	453(59)	271(57)	41(44)
수학	10(11)	92(27)	321(42)	218(46)	38(40)
영어	17(19)	94(27)	243(32)	180(38)	48(51)
피아노	6(7)	52(15)	241(31)	220(46)	58(62)
미술	11(13)	82(24)	204(26)	145(30)	20(21)
종합학습지	13(15)	45(13)	103(13)	52(11)	12(13)

자료: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 이상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음.
 - 영유아기보다 초등기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짓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유아들은 학습위주의 사교육을 받고 있음.

나. 사교육비

- 사교육비란 개인이 부담하는 공교육비와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윤철경, 1992)으로 학부모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지출하는 학원비, 과외수업비, 부교재비 등
- 이러한 사교육비는 정부의 공교육비로 인해 원하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이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실시하는 경우로 우리나라 경우 공교육을 받기 이전의 영유아기 부터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는 부모들의 가계경제에 영향을 줄 뿐 만아니라 저출산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
-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중 <표 IV-7>에 의하면 자녀들의 개인 양육비용 가운데 교육비는 2003년

에 비해 2006년에 비슷하거나 약간 늘어난 정도이지만 사교육비는 교육비에 비해 많은 폭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는 자녀양육비 중에 사교육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가 문제로 인하여 자녀출산을 꺼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따라서 부모들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면, 가정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므로 출산을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임(김희태, 2009, p.20에서 재인용).

<표 IV-7>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의 구조: 자녀 개인 비용²⁾

단위: 만원

자녀연령	2003년				2006년			
	교육비	사교육비	기타 ¹⁾	계	교육비	사교육비	기타	계
만 0~2세	1.4	3.6	18.2	23.2	0.4	6.5	23.2	30.0
만 3~5세	7.8	10.8	14.9	33.6	8.9	16.0	18.8	43.7
만 6~11세	2.9	19.0	16.6	38.5	2.9	24.4	20.3	47.6
만 12~14세	5.1	23.9	18.7	47.7	3.6	29.0	21.8	54.3
만 15~17세	14.5	22.4	19.7	56.6	14.8	28.3	23.5	66.6
만 18세 이상	42.8	5.5	21.1	69.3	47.7	10.1	27.0	83.8
전 체	12.1	15.2	17.1	45.4	13.1	20.3	22.3	45.4

주: 1)자녀개인비용의 항목 : 식료품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사교육비

2)기타는 식료품비, 피복비, 보건의료비를 더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2003년, 2006년)

-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자녀연령별 사교육비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IV-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시기보다 중, 고등학교에 자녀의 사교육비가 더 많음.
- 특히 초등시기가 유아시기보다 배 이상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발견됨.
- 요컨대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하게 되고 더불어 사교육비도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이는 사교육비가 많아지면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진다는 우남희 외 3인(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표 IV-8 참조)

<표 IV-8> 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용 평균(SD)

구분	최소값	최대값	월 사교육비(SD)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율(SD)
신생아기(N= 49)	7만원	300만원	33.41만원(41.76)	13.33%(15.78)
영아기 (N= 68)	0원	150만원	16.32만원(23.69)	4.08%(5.47)
유아기 (N=201)	0원	350만원	39.05만원(48.92)	8.22%(8.63)
저학년 (N=244)	4만원	500만원	90.86만원(72.04)	16.68%(14.95)
고학년 (N=239)	0원	400만원	97.31만원(75.33)	20.70%(27.12)
전체 (N=801)	0원	500만원	69.94만원(70.27)	14.44%(18.84)

자료: 우남희, 김영삼, 이은정, 김현신(2009). 초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25(1).

□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 <표 IV-9>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만 6~8세 유아들에게 들어가는 사교육의 비용이 만 0~2세 유아들과 만 3~5세 유아들에 비해 더 많아지는 것도 볼 수 있음.
-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만 0~2세와 만 3~5세 유아들은 주로 어린이집 비용이 주된 사교육비용(실질로는 사교육비가 아닌 보육비임)이지만 만 6~8세 아동들의 사교육의 종류는 유아들에 비해 다양하다는 사실임.
- 특히, 만 6~8세의 경우 학원비와 과외비가 주된 사교육비용임.
 - 만 0~2세 유아들의 경우 학원비는 16.9만원이 지출되지만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별로 없는 부유한 가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며 만 3~5세 유아들의 경우에 학원비는 13.6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빈곤계층에서 많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처럼 빈곤계층이 학원비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비용인 보육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기 때문임.
 - 가정의 이러한 사교육비의 비중은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자녀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갖기를 바라는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초등학교 이상에서 사교육에 들이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짐작됨.

<표 IV-9> 연령과 소득수준 및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용

단위: 만원(평균(SD))

연령	내용	소득수준			지 역			전 체
		빈곤층	차상위	차상위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0~2세	보육시설평균비용	5.5(7.8)	9.4(11.1)	18.0(12.4)	17.4(12.7)	16.4(12.2)	7.7(10.9)	16.0(12.6)
	학원비	0	10(0)	17.6(15.8)	19.9(17.1)	11.7(9.2)	0	16.9(15.3)
	개인·그룹과외비	0	0	11.3(7.7)	15.9(9.2)	8.5(4.7)	0	11.3(7.7)
	학습지	2.1(1.5)	3.5(1.8)	5.0(3.0)	4.8(2.9)	4.7(3.2)	4.4(0.7)	4.8(3.0)
	기타	0.3(2.4)	40(0)	21.2(26.1)	22.5(34.2)	16.1(18.1)	40.4(20.3)	20.8(26.0)
3~5세	보육시설평균비용	10.4(9.1)	15.4(10.5)	23.2(13.4)	23.6(13.1)	22.6(13.7)	14.2(10.9)	22.3(13.4)
	학원비	21.2(16.0)	14.1(3.2)	13.4(11.4)	15.9(14.0)	12.1(8.8)	9.0(2.8)	13.6(11.5)
	개인·그룹과외비	0	20(0)	12.7(8.1)	16.2(8.2)	8.2(5.1)	17.8(7.5)	13.0(8.2)
	학습지	5.7(12.2)	4.8(2.6)	7.2(6.0)	7.9(6.7)	6.6(5.9)	6.3(3.2)	7.2(6.1)
	기타	6.4(3.0)	1.7(2.8)	19.4(25.4)	15.7(21.5)	22.7(28.8)	14.5(14.6)	18.9(25.1)
6~8세	학원비	12.2(6.9)	19.0(10.2)	23.4(16.4)	22.8(15.1)	23.5(15.6)	17.4(9.1)	22.7(15.1)
	과외비	16.3(15.3)	12.5(12.9)	14.5(10.3)	14.8(11.8)	13.6(10.4)	12.9(2.6)	14.1(10.9)
	학습지	7.5(4.8)	7.2(4.7)	8.4(5.0)	7.8(4.8)	8.2(5.0)	8.6(4.8)	8.1(4.9)
	교내보충수업	3.7(4.1)	4.4(3.6)	5.2(5.3)	6.1(6.1)	4.3(3.3)	2.1(1.7)	4.9(4.8)
	방과후교실(교외)	6.0(6.8)	7.0(7.4)	6.0(5.3)	6.9(6.5)	6.3(6.0)	1.3(1.4)	6.3(6.2)
	기타 사교육	4.7(3.7)	11.0(7.1)	26.2(21.4)	17.2(13.3)	23.2(23.5)	28.8(17.4)	21.1(19.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아동이 받고 있는 주당 사교육시간

- <표 IV-10>에 의하면, 학령기 후기, 학령기 초기, 유아기 순으로 많은 사교육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령 전 초기와 후기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10시간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0> 아동의 연령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주당 사교육시간(N=1,034)

사회 인구학적 특성		주당 사교육 시간				
		N	M	SD	F	Duncan
아동의 연령	유아기	301	3.15	3.25	310.91*** df=2/1,031	A
	학령기 초기	399	10.71	5.62		B
	학령기 후기	334	12.07	5.05		C
	전체	1,034	8.95	6.13		
가정의 월수입	150~349만원	232	7.59	6.05	9.44*** df=2/1,031	A
	350~549만원	567	9.07	6.25		B
	550~749만원	235	10.00	5.68		B
	전체	1,034	8.95	6.13		

***p<.001

- 이상의 유아 사교육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사교육비가 가정경제에 많은 부담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저 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조속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
- 현재 학부모들은 만 5세 취학만으로는 사교육비 감소가 어렵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임.
 - 공교육살리기 학부모 연합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학부모 323,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의 대다수가 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저출산 대책방안으로 취학 연령 하향조정과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실제 입학연령 시기를 1년 앞당긴다면, 아이를 더 출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97%, “있다” 3%로 나타났고,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 94%, “예”라고 대답한 학부모는 6%에 그침.
 -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의 학부모 450명을 대상으로 만5세 취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김은심, 최혜진(2010)연구에 의하면, 대다수 부모들은 조기 취학에 반대 하였고 조기 취학에 따라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 될 것이라고 추측함.

2. 취학 후 사교육 패턴

- 자료의 제약 상 취학 이후 사교육비 지출 패턴을 통해 취학 전후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함.
- 만 5세 취학이 이루어지면 만 5세의 사교육은 현재 초등 1학년의 사교육과 유사하리라 예상할 수 있음.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
 -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2007년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서 전국 초·

중·고 272개교 약 3만 4,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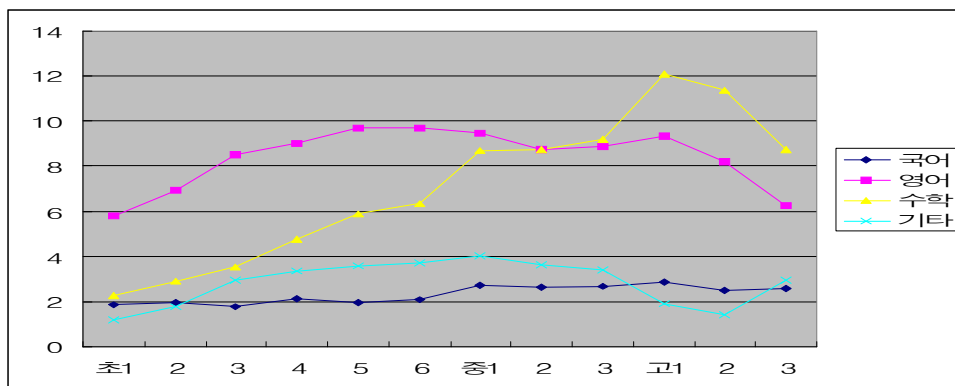
- 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규모가 10조 1,000억원, 중학교는 5조 6,000억원, 고등학교는 4조 2,000억원으로 추정
-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2만 2,000원이었고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면 1인당 평균 28만 8,000원임.

<표 IV-11> 사교육비 규모, 참여율 및 시간

구분	총사교육비 (억 원)	학생 1인당 연평균(만원)	학생 1인당 월평균(만원)		참여율	참여시간 (주당)
			전체	참여자		
전체	200,400	266.4	22.2	25.6	77.0	7.8
초등학교	102,098	272.6	22.7	25.6	88.8	8.9
중학교	56,120	281.0	23.4	31.4	74.6	8.9
고등학교	42,181	236.8	19.7	35.9	55.0	4.5
일반고	38,655	288.3	24.0	38.8	62.0	5.2
전문고	3,526	80.1	6.7	19.8	33.7	2.5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 학년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을 보면 중학교까지는 영어 사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중학교 이후 수학 사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영어 사교육과 교과 외의 예체능 사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



[그림 IV-1] 학년별, 과목별 사교육비 지출액

3. 만 5세 취학의 시사점

- 초등입학시기를 1년 앞당겨 실시했을 때 예상 효과
 - 조기 취학으로 인해 사교육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
 - 오히려 초등시기를 빨리 경험함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사교육을 어린 연령에 접하게 되고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4세 이전부터 사교육이 늘어날 효과
- 만 4세 이전 사교육 효과에 대해서 예측할만한 데이터는 없는 상태이므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는 어려움.
- 주어진 제약 하에서 만 5세로 취학 연령이 당겨질 때 만 5세의 사교육에 미칠 효과는 교과 과목과 비교과 과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함.
 - 비교과 (주로 예체능) 과목 사교육이 크게 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음.
 - 예체능 사교육이 줄려면 학교에서 특기적성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만 5세 취학과는 무관한 정책적 변화임.
 - 교과 과목 중 영어 사교육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영어 사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취학 후 영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암시함.
 - 교과 과목 중 영어 외의 사교육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영어 이외 교과 과목 사교육의 비중은 높지 않음.
- 우리나라의 학년별 사교육 패턴이 주는 시사점
 - 자료를 통해 보면 사교육비용은 연령에 따라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만 5세의 사교육은 현재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즉, 현재 만 5세에서 행해지는 사교육이 완전히 사라지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현 만 6세의 사교육 정도의 사교육은 있으리라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현 만 5세의 사교육비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음.

- 문제는 현재 만 4세에서 행해지는 사교육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인데, 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사교육비의 감소는 현 만 5세 사교육비보다는 그 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됨.
 - 생애주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초중고등 사교육비 총합의 1/12 이하로 볼 수 있음.

□ 개략적인 사교육비 감소 추정을 위해 다음을 가정

- 취학연령 조정 후 만 5세 사교육비는 현 초등 1학년 만 6세 사교육비와 동일
- 취학연령 조정 후 만 4세 사교육비는 현 만 6세 사교육비와 비슷
- 이하 연령에서는 사교육비 변화 없다고 봄.
- 이상의 가정 하에서 아래와 같은 표를 얻을 수 있음.

<표 IV-12> 만 취학연령별 사교육비

단위: 만원

만연령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6세	15.09	15.09	15.09	15.82	17.29	19.60	19.30	19.49	17.90	16.58	18.71	11.94	11.38	9.68
5세	15.09	15.09	15.82	17.29	19.60	19.30	19.49	17.90	16.58	18.71	11.94	11.38	9.68	-

□ 추정 결과

- 만 4세~17세(변경 후 만 16세)까지의 사교육비는 제도 변경 전 2,675만원에서 변경 후 2,494만원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
- 이는 초등에서 고등학교 까지 사교육비 전체의 6.8%감소를 의미함.
- 다만, 위의 계산에서 2009년 사교육비 지출 패턴이 유지될 것을 가정했으므로 이는 개략적인 계산임에 유의
- 또한 만 4세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수치는 사교육비 감소 최고치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V. 만 5세 취학의 여성경제활동 제고 효과

1. 해외 사례

- 육아(childcare)와 여성의 노동력 참여간의 연관성에 관한 많은 외국 연구 사례들에서도 여성이 육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이고 있음.
- Heckman(1974), Blau and Robin(1988), Connelly(1992), Ribar(1992, 1995), Kimmel(1995), and Blau and Hagy(1998) in the United States;
- Gustafsson and Stafford(1992) in Sweden;
- Cleveland, Gunderson and Hyatt(1996) and Power(2002) in Canada;
- Denise and Guyonne(2002) in Australia;
- Vittanen(2005) in the UK;
- Groot and Van Den Brink(1997) and Wetzels(2005) in the Netherlands,
- Wrohlich(2006) in Germany

- 서유럽과 북유럽에서의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유럽 남부보다 높기 때문에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력 참여도가 함께 높음(Bongaarts, 2002; Caldwell et al., 2002; Chensnais, 1996; Lesthaeghe, 1995).
- Butts(2009)의 연구를 보면, 보육시설에 등록된 아동의 비중이 높은 나라일 수록 여성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또한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의 관계를 개인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에서 살펴본 결과 이 둘의 상관관계는 negative하다고 밝혀짐. 이는 국가적 수준만을 변인으로 했던 이전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
- McDonal(2000a, b)에 의하면 여성이 교육과 취업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더라도 여성은 아이를 가짐으로 해서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성은 자녀의 수와 비례하는 제약을 갖게 되는 것임.

- Bagavos and Martin(2000)의 연구를 보면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어 남녀 간의 성별격차가 작아지면, 노동력 참여에서 성별 격차가 심한 나라들에 비해 성별격차가 적은 나라의 출산율은 높아짐.
- 오늘날에는 한 자녀를 가진 여성의 70%와 두 자녀를 가진 여성의 62%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반면 childless 여성은 74%가 직업을 가지고 있음 (Sleebos, 2003).

□ 최근의 국가별 여성 고용률 추이

- 아래의 <표 V-1>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별 여성 고용률 변동추이를 정리
- 2008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수준은 63.55%임. 독일(70.61%), 미국(72.12%), 스웨덴(79.43%), 영국(71.50%), 캐나다(75.76%), 호주(71.11) 등의 여성 노동력 참여율은 70% 이상임.
- 한국(58.68%)과 이태리(52.08%)는 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침.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성인력 활용율이 낮은 국가에 속함.
- 여성의 단시간근로자 비율을 보면 네덜란드가 59.9%이고, 스위스, 독일, 영국 등은 35% 이상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2.5%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낮은 국가에 속함.
- 우리나라는 남녀 간 인력활용율의 편차가 크고, 인력활용구조에서도 남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표 V-1> 국가별 여성 고용률 변동추이(2000~2008)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독일	63.73	64.37	64.80	65.06	66.34	67.63	69.28	70.21	70.61
미국	72.71	72.43	72.12	71.88	71.48	71.57	71.74	71.71	72.12
스웨덴	77.29	77.95	77.88	77.69	77.45	78.52	78.66	79.32	79.43
스페인	53.16	51.90	53.98	56.00	57.95	59.46	61.37	62.60	64.53
영국	69.80	69.73	70.31	70.24	70.63	70.82	71.52	70.95	71.50
이태리	46.78	47.77	48.41	48.83	51.02	50.73	51.22	51.07	5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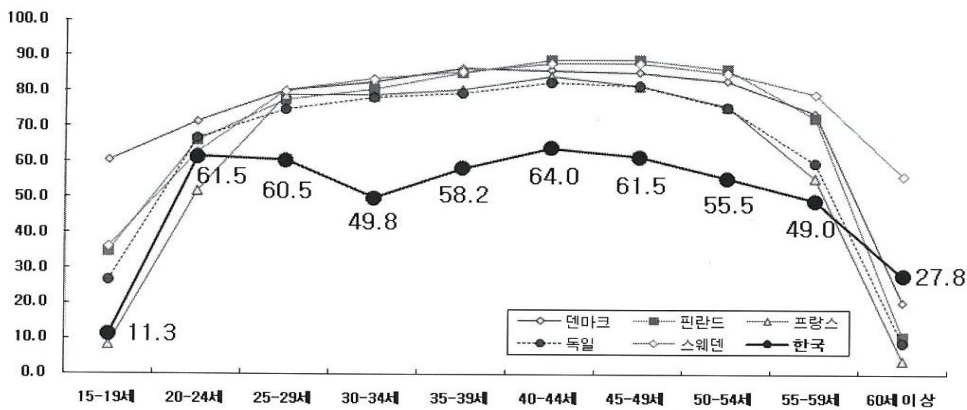
(표 V-1 계속)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본	63.82	64.27	63.96	64.17	64.55	65.22	65.98	66.86	67.35
캐나다	71.02	71.44	72.88	74.08	74.31	74.06	74.53	75.38	75.76
프랑스	61.95	62.09	62.40	63.93	64.20	64.55	64.68	65.24	65.52
한국	54.93	55.82	56.67	56.03	57.40	58.06	58.52	58.69	58.68
호주	66.08	66.63	66.86	67.69	67.48	69.09	69.85	70.55	71.11
European Union 19	60.66	60.79	61.33	61.87	62.75	63.36	63.99	64.36	64.97
European Union 15	60.68	60.86	61.63	62.27	63.34	64.05	64.96	65.45	66.13
Europe	57.04	57.21	57.75	57.97	58.50	58.89	59.38	59.76	60.43
G7 Countries	66.56	66.75	66.85	67.06	67.39	67.73	68.28	68.57	69.04
North America	65.34	65.00	65.03	64.89	65.14	65.25	65.70	65.93	66.39
OECD countries	60.90	60.97	61.25	61.32	61.75	62.11	61.62	63.02	63.55

자료: <http://www.oecd.org>

□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 [그림 V-1]을 보면 한국은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양상이 OECD 주요국들의 종(bell)형과는 달리 임신·출산과 아동양육이 집중되는 시기에 급격히 낮아지는 M자형의 양상을 보임.
- 이와 같은 M자형 곡선은 일-생활균형(work-life balance)의 부담을 여성 개인이 떠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육과 가사의 짐이 여성개인들의 몫으로만 지워지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나타냄(배윤경, 2009).



자료: 주재선, 『2007 여성통계연보』

[그림 V-1] OECD 주요국들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유럽 내 15개 국가의 여성 고용률을 비교해본 결과

- <표 V-2>는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총 여성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네덜란드의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1980년도 35.7%에서 2000년도에는 62.1%로 빠르게 증가함.

<표 V-2> 유럽 15개국의 여성 고용률(1960~2000)

국가	1960	1980	2000
Austria	-	52.4	59.3
Belgium	29.6	35.0	51.1
Denmark	42.7	66.2	71.2
Finland	54.9	65.0	64.3
France	42.9	50.0	53.1
Germany	35.0	34.8	58.1
Greece	-	30.7	40.4
Ireland	-	32.2	52.2
Italy	28.1	33.2	39.7
Netherlands	-	35.7	62.1
Norway	26.1	58.4	73.4
Portugal	-	47.1	60.1
Spain	21.0	28.4	40.3
Sweden	38.1	67.6	72.1
United Kingdom	43.1	54.5	65.2

자료: OECD(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가. 만 5세 취학 국가의 사례

□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여성 고용률은 여성들이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대인 약 29세에 가장 높게 나타나며, 25~54세 여성들의 30%만이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함(OECD, 2003).
- 네덜란드는 과거 청년층 중심에서 모든 연령층의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한 대표적인 국가임.
- 네덜란드의 여성고용정책의 핵심은 '시간제 근로'에 있음 관련 정책들은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방향의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모성보호 휴가제도, 조세제도도 함께 발달함.

- 1996년 정부는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노동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도입함.
- 2000년에는 근로시간조정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그 결과 일하는 어머니의 87%가 자녀보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감축했고 1/4은 시간제로 부모휴가를 사용함(홍승아, 이미화, 김영란, 유계숙, 이영미, 이연정, 이채정, 2008).
- 0~14세 아이를 둔 부모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양부모가 모두 전일제인 비율은 5.6%, 한 부모만 전일제인 비율은 19.4%, 한 부모가 전일제 다른 부모는 시간제인 경우는 59.7%로 매우 높음(OECD, 2007).
- 네덜란드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비용을 부모, 정부, 고용주가 1/3씩 부담함. 그러므로 자녀를 보육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
-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보육비가 1/3 수준으로 낮아짐.
- 의무 취학 연령이 5세이기 때문에 4세에도 취학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1980년대 이후 4~6세의 유치원과 6세 이후의 초등학교 과정이 통합되었기 때문
 - 1985년 Primary Education Act 1981이 시행되면서, 과거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합한 새로운 형식의 초등학교가 5~12세의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하게 됨.
- 자녀가 없는 여성의 시간제 근무 참여도가 53%인데 비해,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는 자녀가 한 명일 때 85%, 두 명일 때 90%로 월등히 높음.

□ 영국

- Viitanen(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의 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은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공적 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음.
 -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의복(food)과 주거(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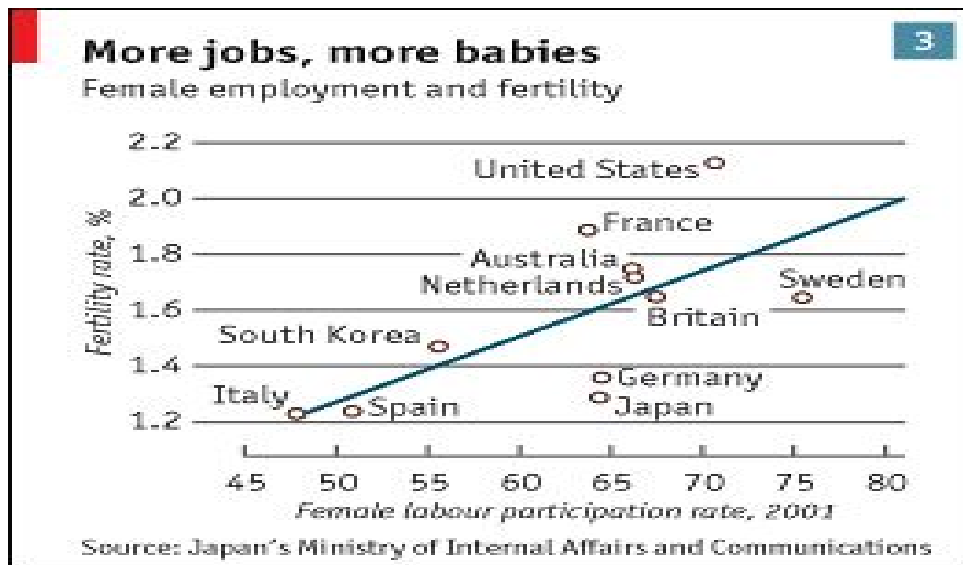
에 드는 연간 평균비용을 초과함.

-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취학연령이 5세인 국가인데 반해 영국 여성들 역시 아동보육에 지출되는 경비가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영국 여성의 고용은 시간제에 집중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율은 37.7%임(OECD, 2008).
- 영국에서 시간제 근로가 많은 것은 앞서 설명된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법적 제도장치가 잘 되어있기 때문
- 2000년에 제정된 '시간제 근로지침'으로 인해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않게 됨.
- 2003년 4월부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탄력근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됨.
- 자녀수에 따른 고용상태를 보면, 한 명일 경우에 여성 고용률은 75.0%, 2명은 71.3%, 3명은 48.0%로 나타남.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막내가 2세 미만인 경우는 53.8%, 3~5세는 58.9%, 6~15세는 73.2%로 자녀 연령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고용률도 급격히 증감함(OECD, 2007).
- 영국은 의무교육 연령이 5세이고, 3세부터는 시간제로 제공되는 무상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4세가 되면 유치원을 무상교육 받을 수 있음(그러므로 만 3세부터 정부에서 모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함).
 - 1944년 교육법(Butter Act)에서 초등교육단계(primary education: 5~12세), 중등교육단계(secondary education: 12~19세), 계속교육단계(further education)의 3단계 체제(Three-tier system)로 공식화 됨.
- 영국은 여성들의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과 가족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3~6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일인당 교육비용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아동 시기부터 빈부의 격차를 최소화 시키려면 영아기 때부터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슈어스타트(Sure Start)'는 영국의 대표적인 빈곤정책임.
 - 이를 통해 무상교육, 양질의 보육제공, 가족지원을 하고 있음.

2. 양육비 경감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 1: 정태적 관계

- [그림 V-2]는 여성 고용과 출산율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임.
-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2001년의 여성 노동참여율과 출산율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양육비 감소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양육비 감소 → 여성 고용률 증가 → 출산율 증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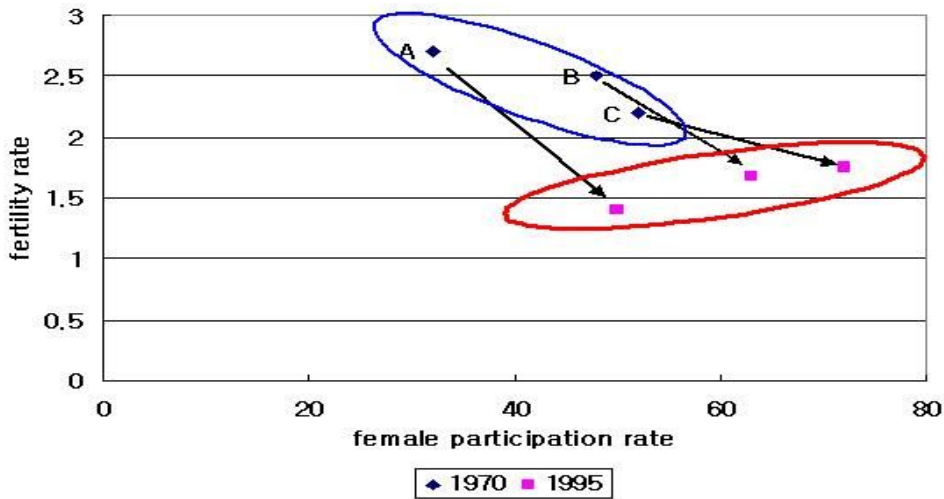
자료: A guide to womenomics, Apr 12th 2006, From The Economist.
http://www.economist.com/finance/displaystory.cfm?story_id=6802551

[그림 V-2]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

□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 2: 동태적 관계

-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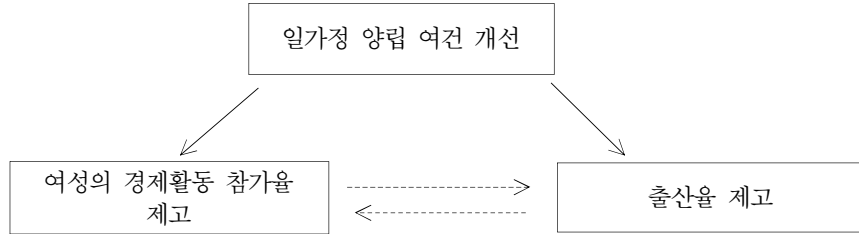
- 1970년대에는 국가별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2000년대에 가까워지면서 양의 상관관계로 변한 것임.
- 1970년과 1995년의 국가별 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 국가 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났음을 볼 수 있음.
- 즉 한 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다면, 출산율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자료: Ahn & Mira(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 Fig. 4, 5 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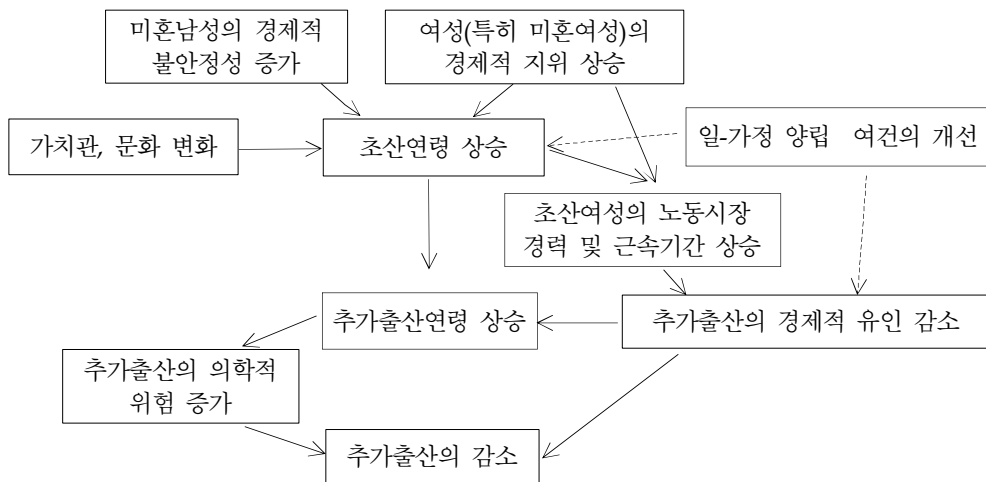
[그림 V-3] 국가유형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의 변화

-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 3: 종합
 - 기본적으로 한 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출산율의 감소를 동반함.
 - 국가별로 보자면 여성의 경제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부여하는 나라가 출산에도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별 자료에서는 양자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V-4] 여성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의 관계

- 저출산은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얽힌 복잡한 현상으로 양육비는 그 중 하나의 요소
 - 우리나라에서는 초산 연령의 가장 근접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양육비 감소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 여건의 개선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 초산 연령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양적으로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V-5] 저출산 현상의 복합적 인과관계

3. 만 5세 취학의 시사점

□ 기존 연구의 결과

- 기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이후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이 빨라지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

□ 기존 연구의 해석 상 유의점

- 초등학교 취학 후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취학효과인지 연령효과인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태
- 즉, 초등학교 취학 시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연구는 없었음.
 - 자녀 연령 상승에 따라 아동 돌봄에 필요한 절대시간이 줄어드는 효과와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측면과 보육시설 또는 가정에서 초등학교로의 보육 형태의 변화가 주는 효과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연령효과를 통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자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된 연구는 현재로서는 없음.

□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취학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가 어느 정도 활발해질지는 만 5세 돌봄 서비스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판단됨.

□ 만 5세 취학은 아동 돌봄 방식의 변동을 야기함.

- 만 5세 취학이 아동 돌봄에 소요되는 각종 명시적 화폐 비용과 암묵적 시간비용 등을 추가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줄여주는 것인지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 학교가 아동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보육비용을 줄여준다면?

- 학교가 주는 안정감, 신뢰감 등은 자녀를 맡겨두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학교가 보육비용을 줄여준다 하더라도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감안되어야 함.

□ 취학이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면?

- 방과 후 보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일제 보육과 비교할 때 방과 후 보육 등과의 조정비용이 소요됨.
-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 취학 이후 부모가 교육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해야 함.
- 추가적인 시간노력이 소요될 경우 오히려 노동공급을 저해할 수 있음 ⇒ 자녀 취학 시점에 고학력 커리어 우먼의 노동시장 퇴장 현상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연결됨.

□ 학교 교육의 명시적 비용이 유아교육 + 보육비용보다 더 들지 덜 들지에 대한 판단은 이론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

- 학교 교육은 무상인데 비해 보육은 유상이므로 명시적 비용은 학교가 더 낮은 것은 사실
- 그렇지만 사교육비의 증가 가능성(연령에 따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경향)과 방과 후 보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직·간접 양육비용이 감소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음.

□ 이러한 사실은 만 5세 취학만으로 여성의 양육부담 경감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동반되어야 함.

VI. 만 5세 취학의 입직연령 하락 효과

1. 해외 사례

□ 주요 OECD 국가들의 청년층 노동시장

- 최근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청년층이 퇴직 연령 계층과 노동시장을 떠나는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음(이남철, 2005).
- <표 VI-1>, <표 VI-2>, <표 VI-3>, <표 VI-4>는 2000년에서 2008년까지 OECD 국가들의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한 것임. 청년층은 나이별(20~24세, 25~29세), 성별(여성, 남성)으로 구분하였음.
- OECD 국가별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20~24세 청년층보다(73~75% 사이) 25~29세 청년층(90~92% 사이)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월등히 높음.
 - 이는 20~24세에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20~24세(59~60% 사이)와 25~29세(67~71%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음.
- 2008년도 참여율을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평균은 남성의 경우 20~24세가 73.3%이고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국가들로는 호주(84.8%), 덴마크(83.8%), 네덜란드(83.9%)등이 있음.
- 여성의 경우 20~24세의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0.6%인데 비해 80%를 상회하는 국가들로는 덴마크(80.2%), 네덜란드(80.5%)등이 있음.

□ 주요 OECD 국가의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전이

- <표 VI-5>는 주요 OECD 국가의 교육에서 직업으로 전이기간과 유형을 제시한 것임(OECD, 2000b).

<표 VI-1> OECD 국가별 20~24세 남성 경제활동 참여율(2000~2008)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86.5	85.4	85.5	85.2	84.1	85.1	85.5	85.3	84.8
Austria	75.6	74.4	74.2	74.7	76	77.8	77.8	79.2	79.3
Belgium	65.5	62.3	60.9	63	61.4	58.5	61.9	63.1	59.8
Canada	80.3	79.8	81.2	81.6	81.4	79.8	80.1	80.5	80.8
Czech Republic	79.4	76.9	73.1	70.1	67.6	65.5	63.6	62.8	60.7
Denmark	84.4	85.3	82.7	79.8	81.7	81.1	79.2	86.5	83.8
Finland	75.9	76.5	74.9	74.1	74.1	74	77.4	78	79.3
France	55.5	56.2	56.1	66.4	67.1	66.1	66.5	64.9	66.8
Germany	74.8	75.1	73.3	71.6	71.7	73.9	74.2	74.7	74.9
Greece	68.1	62.9	64.1	61.7	64.9	57.8	57.3	55.6	55.4
Hungary	66.8	63.5	60.3	55.8	53.9	52.8	52.4	51.9	50.9
Iceland	84.9	82.2	80.7	79.1	78.2	80.3	80.2	84.9	82.9
Ireland	79.	77.5	75.4	74.7	75.9	75.8	80.2	80.4	79
Italy	63.6	62.1	61.5	60.5	59.5	58.3	59	57.8	57.9
Japan	72.7	71.9	71.6	70.8	68.5	68.9	69.1	70	69.1
Korea	52.9	50.7	52.1	51	52.1	49.8	48.3	47.3	43.8
Luxembourg	61.5	58.6	61	51.6	50.3	54.4	52	59.3	51.6
Mexico	83.1	81.4	80.2	79.7	79.7	78.7	79.8	79.8	79.6
Netherlands	82.7	83.7	83.8	84	82.9	81.2	82	84	83.9
New Zealand	79.4	80.1	79.3	78.7	79.5	77.1	82.3	80.3	77.9
Norway	79.3	76.8	77	76.8	75.5	75.4	77.2	76.4	78.7
Poland	68.7	68	65.8	63.2	61.8	60.5	62.5	61.4	62.6
Portugal	70.1	71.5	72.3	67.5	66.2	68.2	67.5	67	67.7
Slovak Republic	80	81.3	78.7	75.9	7.9	70.5	65.5	65.5	63.4
Spain	67.2	66.1	66.2	67.7	70	72.1	72.4	72.1	72.7
Sweden	70.3	71	70	70.7	70.2	72.8	73.4	75.4	76.8
Switzerland	83.9	81	80.6	80.6	80	77.9	83.2	83.7	79.3
Turkey	71.9	71.9	69.4	68.4	73.6	73.2	72.1	71.4	71.8
United Kingdom	82	80.4	81.8	80.7	80.2	80.5	80.1	80.9	80
United States	82.6	81.6	80.7	80	79.6	79.1	80	78.7	78.7
OECD countries	75	74.1	73.4	73.3	73.4	73.1	73.6	73.4	73.3

자료: www.oecd.org

- 노동시장 진입 연령(동일한 연령 집단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서 취업하는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최초의 연령 집단)과 전이기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이기간이 긴 이태리(11.3년)와 스페인(9.6년)의 경우 입직 연령이 높은 25.3세와 25.6세를 나타낸 반면 전이 기간이 짧은 미국(5.0년)과 영국(5.0년)은 각각 22.0세와 21.0세로 나타남.

-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은 나라에는 덴마크(25.3세), 스페인(25.6세), 노르웨이(24.6세), 이탈리아(25.3세) 등이 있으며,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낮은 나라에는 호주(21.4세), 영국(21.0세), 스위스(21.0세), 아일랜드(21.2세) 등을 들 수 있음.

<표 VI-2> OECD 국가별 25~29세 남성 경제활동 참여율(2000~2008)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91.9	90.6	90.7	90.6	90.6	90.4	91	91.9	91.6
Austria	88.8	89	90.3	90.4	90	90.2	90.4	91.7	90.5
Belgium	94.9	90.5	91.1	92.2	91.9	92.9	93.3	93	93
Canada	90.6	90.9	90.9	91.1	90.4	90.3	90.1	90.3	90.6
Czech Republic	95	95	95	95	93.6	93.6	92.4	92.3	90.9
Denmark	90.1	88.8	91.4	88.8	87	86.4	87.1	91.2	92.3
Finland	89.2	90.1	89.6	89.1	90	89	89.6	88.4	90.3
France	91.7	91.9	91.2	92.6	93.5	93	93.3	93.4	93.2
Germany	87.6	87	85.9	85.1	84	85.9	86.6	86.9	87
Greece	93	91.6	92.3	91.5	92.7	91.6	90.7	90.5	91.5
Hungary	89.3	89.7	88.2	87.3	88.2	88.2	88.9	89.1	88.2
Iceland	90.5	94	93.9	90.1	86.8	90	91.7	93.5	92.7
Ireland	92.9	92.8	91.2	90.5	91.6	92.2	92.6	92.1	91.6
Italy	81.1	81.1	82.4	82.4	83.1	81.7	82.1	80.4	80.8
Japan	95.9	95.4	94.6	94.4	94.2	93.6	93.9	94.2	94.4
Korea	84.3	83.9	83.8	83	82.4	81	78.8	77.7	76.4
Luxembourg	88.9	89.9	92.2	89.6	92.9	89.1	91.7	89.6	84
Mexico	94.2	93.8	93.4	93.7	94.2	93.4	94.6	94.2	94
Netherlands	93.9	93.6	93.2	93.3	93.4	91.9	92.5	93.7	93.9
New Zealand	90.7	90.2	89.9	88.8	89.6	89.6	90.9	91.9	91
Norway	88.6	90	88.9	86.7	86.8	87.5	89.5	88.8	88.5
Poland	93.1	93.3	92.2	91.6	91.6	91.4	91.4	90.3	91.3
Portugal	90.8	90.3	90.5	90.2	92.4	92.8	91.6	92	92.3
Slovak Republic	94.6	94.4	95.2	94.9	94.4	93.9	95	93.7	94.2
Spain	89.7	88.1	88.6	89.2	89.7	89.9	90.5	90.6	90.1
Sweden	85.4	86.6	86.3	85.7	85.9	88.6	89.3	89.9	90
Switzerland	90.7	91.7	93.7	92.7	92.5	93.3	92.8	93.3	92.9
Turkey	90.9	90.3	90.5	90.2	92.4	92.8	91.6	92	92.3
United Kingdom	93.1	92.3	92.7	91.1	90.9	90.9	92.3	92.3	92.3
United States	92.5	91.7	91.4	90.6	90.9	90.8	90.6	91.3	90.2
OECD countries	91.4	90.9	90.6	90.3	90.6	90.4	90.4	90.5	90.3

자료: www.oecd.org

<표 VI-3> OECD 국가별 20~24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2000~2008)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78	78.1	77.1	77.5	76.8	77.7	77.9	78.2	78.7
Austria	67.7	66.2	67	66.4	71.4	71.9	71.4	71.8	71.4
Belgium	55.8	51.4	51.3	49.4	55.5	55.1	51.4	54.1	51.9
Canada	73.9	74.3	75.2	77.3	76.5	76.1	77.1	76.1	76.1
Czech Republic	61.8	60.7	57.8	56.4	53.2	48.5	50.1	47	44.4
Denmark	74.2	73.9	73.6	71.3	70	72.2	79.5	78.7	80.2
Finland	65.4	65.6	64.8	65.4	64.2	66.7	66.9	69.3	70.4
France	46.9	46.9	47	58.2	57.7	57.7	57.1	58.6	58.6
Germany	68	67.6	66.6	65	64.4	66.4	67.1	67.7	68.6
Greece	56.3	53.5	53.7	51.3	54.6	49.1	47.9	47.2	45.2
Hungary	50.6	48.2	49.1	47.1	43	42.1	41.5	39.3	38.6
Iceland	81	79.5	71.7	73.4	73.2	79.3	82.1	79.1	80.4
Ireland	67.6	65.6	65.1	65.5	65.8	68.6	69	69.8	70.4
Italy	50.2	48.3	46.9	45.3	49.3	45.8	43.9	41.5	42.1
Japan	72.7	72	70.3	69.1	68.9	69.8	70.1	69.5	69.5
Korea	61.2	62	62.6	61.8	62.8	62.6	59.1	56.5	54.5
Luxembourg	54	51.1	50.6	52	45.8	46.4	43.5	30	46.1
Mexico	43	42.3	42.4	41.2	42.4	44.2	45.2	45.6	46.2
Netherlands	78.6	81.1	81.4	80.7	80	80	79.4	80.5	80.5
New Zealand	67.1	68	68.4	67.7	66.5	66.3	69.6	68.4	69.2
Norway	68.9	70.1	71.1	71.1	70.9	69.5	71.8	74.9	74.5
Poland	58.6	57.4	53.8	51.1	49.6	49	51.4	49.4	49.8
Portugal	57.8	59.4	60.6	61.2	57.6	58.2	58.4	59.7	61.8
Slovak Republic	62.9	62.6	62	61	60.4	55.3	52	51	46.1
Spain	57.3	54	55.7	56.8	58.5	61.7	63.1	62.4	63.3
Sweden	61.7	64.8	65.1	63.6	63.8	68.3	68.9	70.7	69.5
Switzerland	80.1	80.1	81.4	81.7	80.2	78	80.8	78.3	80.5
Turkey	31.5	33.5	34.5	32.2	32.7	31.9	31.4	32.1	33.2
United Kingdom	69	69.3	70	69	70.5	69.3	71.1	70.1	69.6
United States	73.1	72.7	72.1	70.7	70.5	70.1	69.5	70.1	70
OECD countries	60.7	60.5	60.3	59.8	60.1	60.3	60.3	60.4	60.6

자료: www.oecd.org

<표 VI-4> OECD 국가별 25~29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2000~2008)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72.6	74.2	73.9	74.3	73.6	75.1	75.4	75.9	76
Austria	77.8	79.1	79.8	80.7	80.9	80.9	80.1	78.6	79.1
Belgium	85.3	78.8	80.3	81	82.7	82.8	83	84.7	84
Canada	80	80.6	80.8	81.3	81.7	81.2	81.9	81.9	81.6
Czech Republic	64.9	63.7	64.5	64.1	64.1	65.2	65.4	65.9	66.4
Denmark	80.6	78.5	79.2	78.8	81.9	77.2	84.1	82.4	85
Finland	76.4	76.2	79.6	77.4	75.6	78.6	78.3	79.2	79.6
France	79.3	78.5	79.5	80.8	80.7	80.9	81.4	81.7	81
Germany	74.7	74.6	74.9	74.5	74.7	73.5	75.7	76	76.3
Greece	72.1	71.7	73.4	74.6	75	76.6	78	77.8	76.4
Hungary	61.1	61.6	61.7	63.7	64.9	66.2	66.5	66.9	67.9
Iceland	80.1	81.7	83.3	83.6	80.1	79.5	82	80.4	75.6
Ireland	82.6	80.1	81	79.6	78.9	79	80.6	82.1	80.6
Italy	61.8	62.8	64.4	64.2	65.4	63.7	64.7	63.1	63.7
Japan	70	71.1	71.8	73.2	74	74.9	75.5	75.6	76.1
Korea	55.9	57.7	59.5	60.7	63.9	66.1	67.5	68.2	69.3
Luxembourg	79.1	76.6	80.8	79.6	81.7	81.6	80	76.1	78.9
Mexico	46.5	44.8	46.6	46.5	48.2	49.9	50.1	51.8	52.1
Netherlands	82.5	82.4	81.7	83.4	84.2	84.2	85.2	85.2	85.7
New Zealand	70	69.3	69.8	70	70.6	73.4	72.1	73.2	74.8
Norway	80.6	79.4	79.3	78.8	78.6	79.7	81.9	81.9	84.9
Poland	74.5	74.8	74.7	75.6	76	76.1	75.7	74.3	74.9
Portugal	82.4	82.8	83.9	85.2	85.1	82.3	85.2	85.5	85.8
Slovak Republic	71.8	72	72.6	72.9	72.9	68.1	69	68.1	70.1
Spain	76.9	74.3	76.1	79	79.8	79.6	80.7	80.9	82.6
Sweden	78.8	79.7	79.4	80.4	79.5	83.2	81.7	82.1	82.3
Switzerland	80.6	79.3	82	83.8	84.9	86.7	84.6	85.1	87.3
Turkey	31.7	30.9	32.6	32.1	31.2	31.4	32	31.9	33.3
United Kingdom	76	75.7	76.7	76	75.7	76	77	76.6	77.4
United States	76.7	75.4	75.7	74.3	73.1	74	75.2	74.9	75.9
OECD countries	67.5	67	67.7	67.8	68	68.6	69.5	69.7	70.4

자료: www.oecd.org

<표 VI-5> 주요 OECD 국가의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전이기간과 유형(1996)

국가	의무교육 종료연령(A)	노동시장 진입연령(B)	학교를 떠난 연령(C)	직장으로 전이기간	
				교육 (C)-(A)	비교육 (B)-(A)
호주	15	21.4	19.8	4.8	6.4
오스트리아	15	-	18.6	3.6	-
캐나다	16	22.8	20.4	4.4	6.8
체코	15	-	18.2	3.2	-
덴마크	16	24.3	19.4	3.4	8.3

(표 VI-5 계속)

국가	의무교육 종료연령(A)	노동시장 진입연령(B)	학교를 떠난 연령(C)	직장으로 전이기간	
				교육 (C)-(A)	비교육 (B)-(A)
핀란드	16	-	18.8	2.8	-
헝가리	16	21.9	18.1	2.1	5.9
일본	15	-	-	-	-
노르웨이	16	24.6	19.0	3.0	8.6
포르투갈	14	22.7	18.5	4.5	8.7
스웨덴	16	23.6	18.7	2.7	7.6
스위스	15	21.0	19.3	4.3	6.0
영국	16	21.0	18.6	2.6	5.0
미국	17	22.0	18.5	1.5	5.0
벨기에	17	22.7	20.9	3.9	5.7
프랑스	16	23.2	21.5	5.5	7.2
독일	15	22.2	19.8	4.8	7.2
그리스	14.5	23.0	19.4	4.9	8.5
아일랜드	15	21.2	19.9	4.9	6.2
이탈리	14	25.3	-	-	11.3
네덜란드	16	23.4	20.9	4.9	7.4
스페인	16	25.6	20.3	4.3	9.6

자료: OECD(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Table 3.2.

2. 최근의 청년노동 시장 변화 추이

- KEDI의 대졸자 취업조사에 따르면 대졸자의 일자리(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가 2005년~2009년 사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졸업생 수 감소폭보다 더 큼.

<표 VI-6> 대졸자와 취업자 수(졸업생 취업조사)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	취업자	졸업자
2005	286,774	78,430	9,370	374,574	553,582
2006	292,292	57,373	8,690	358,355	561,203
2007	282,227	60,909	8,826	351,962	560,632
2008	273,977	59,998	9,069	343,044	558,964
2009	227,579	85,941	9,022	322,542	547,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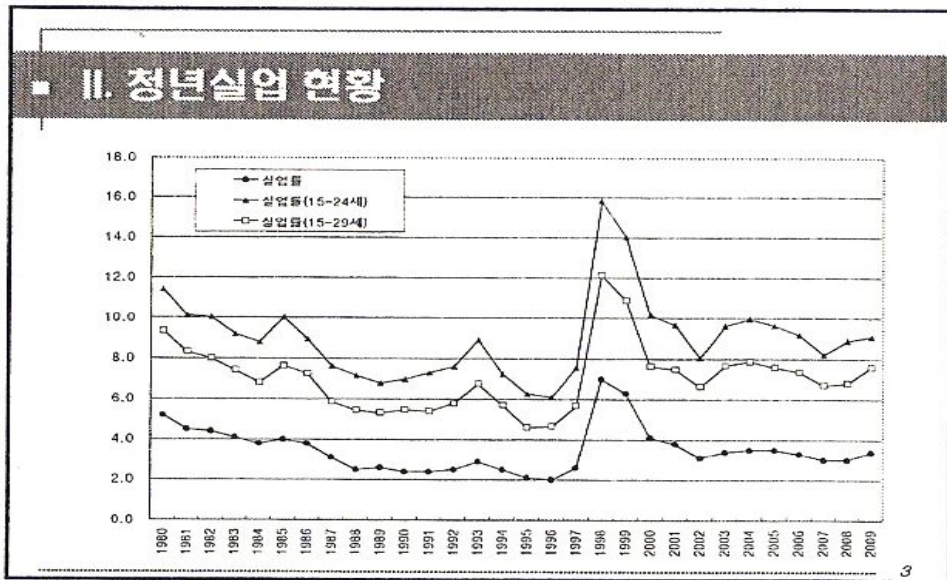
- 연도별 증가율로 환산해보면 대체로 졸업자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졸업생 조사 이후 지속됨.

<표 VI-7> 대졸자와 취업자 수(졸업생 취업조사)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	취업자	졸업자
2006	1.9%	-26.8%	-7.3%	-4.3%	1.4%
2007	-3.4%	6.2%	1.6%	-1.8%	-0.1%
2008	-2.9%	-1.5%	2.8%	-2.5%	-0.3%
2009	-16.9%	43.2%	-0.5%	-6.0%	-2.1%

- 대졸자 시장에서 알 수 있듯이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졸업자가 2배 늘어나는 해에는 대졸자 취업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이하에서 최근의 청년 노동시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
- 최근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
-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임. 이는 지난 30여년 동안 일관성 있게 나타난 전체적인 경향임(그림 VI-1 참조).
 - 15~24세 청년실업률이 15~29세 청년실업률보다 더 높은 특징을 보임(표 VI-8 참조).
 -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다소 높으나 최근 선진국의 경우도 청년실업률이 높은 국가 많음(표 VI-9 참조).
 - 청년실업의 문제는 동태적 특성으로 파악해야 함. 청년실업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입직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임(그림 VI-2, 3 참조).
 - 즉, 청년은 일자리에 안정되지 못하고 들락날락하는 특성이 있고, 일자리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약간만 맞지 않으면 쉽사리 이직하는 특성이 강함.
 - 청년실업의 주원인이자 본질은 잦은 이직에 있음. 입직률은 다른 연령군과 큰 차이 없음.

- 기간노동력에 대한 청년의 입직률과 이직률 비율을 살펴보면, 입직률에는 차이가 없으나 이직률은 3배 정도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남녀의 차이가 없었음.
- 노동패널자료(KLIPS)를 사용하여 구한 입직률과 이직률을 살펴보아도 기간노동력에 대한 청년들의 입직률은 큰 차이가 없었던데 비해 이직률은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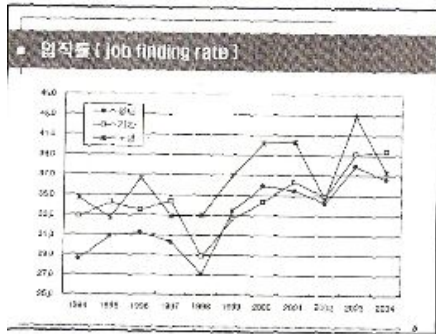
[그림 VI-1] 청년실업의 현황

<표 VI-8> 청년실업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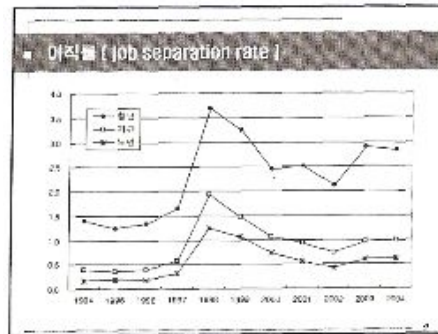
	1980 ~1984	1985 ~1989	1990 ~1994	1995 ~1997	1998 ~1999	2000 ~2004	2005 ~2008	2009
15~24세	2.3	2.6	3.0	3.0	2.2	2.7	2.8	2.7
15~29세	1.8	2.0	2.3	2.2	1.7	2.1	2.2	2.2

<표 VI-9> 청년실업률 비율의 국제비교

	한국 (15~29세)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1990	2.3	2.0	2.0	2.2	0.9	2.6	1.5	2.0
2000	1.9	2.0	1.9	2.2	1.2	2.1	2.2	2.3
2001	2.0	1.9	1.9	2.2	1.1	2.4	2.1	2.3
2002	2.1	1.9	2.0	2.3	1.2	2.6	2.2	2.1
2003	2.3	1.9	2.0	2.3	1.2	2.5	2.3	2.1
2004	2.2	2.0	2.1	2.4	1.3	2.7	2.3	2.1
2005	2.2	2.0	2.1	2.4	1.6	-	2.5	2.2



[그림 VI-2] 입직률



[그림 VI-3] 이직률

<표 VI-10> 기간노동력에 대한 청년의 입직률과 이직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입직률	1.0	1.0	1.0	1.0	0.9
이직률	2.3	2.7	2.9	3.0	2.9

<표 VI-11> 노동패널자료(KLIPS)를 사용하여 구한 입직률

	1998-99	2001-02	2003-04	2005-06	평균
청년	54.7	55.5	55.0	67.7	60.5
기간	65.1	70.3	66.7	63.0	64.1
고령	37.8	38.5	53.0	43.5	42.9
청년/기간	0.8	0.8	0.8	1.1	0.95
노년/기간	0.6	0.5	0.8	0.7	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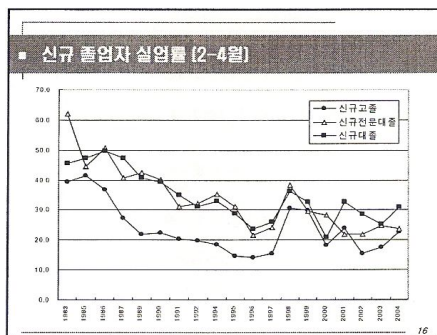
<표 VI-12> 노동패널자료(KLIPS)를 사용하여 구한 이직률

	1998-99	2001-02	2003-04	2005-06	평균
청년	6.6	5.3	7.2	6.1	6.0
기간	3.3	1.7	2.4	2.7	2.5
고령	5.1	1.6	2.4	2.0	2.7
청년/기간	2.0	3.1	3.0	2.3	2.48
노년/기간	1.6	0.9	1.0	0.8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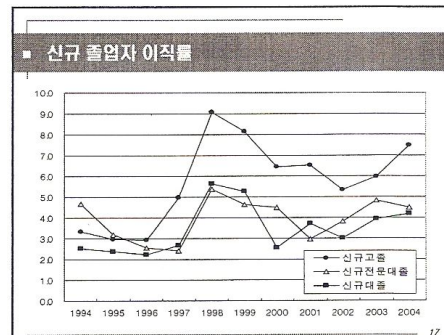
○ 청년 노동시장의 경우 입직률과 이직률이 보다 높고 불안정한 특성을 가장 많이 보이는 계층은 신규졸업자 계층임. 신규졸업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청년계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업률을 높이는 계층으로 변질될 가능성 높음. 따라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년 전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신규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할 필요 있음.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해결의 핵심임. 청년실업 정책의 또 다른 오류는 그동안 청년실업을 낮추기 위해 주로 신규 졸업자보다 청년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점임.

－ 신규졸업자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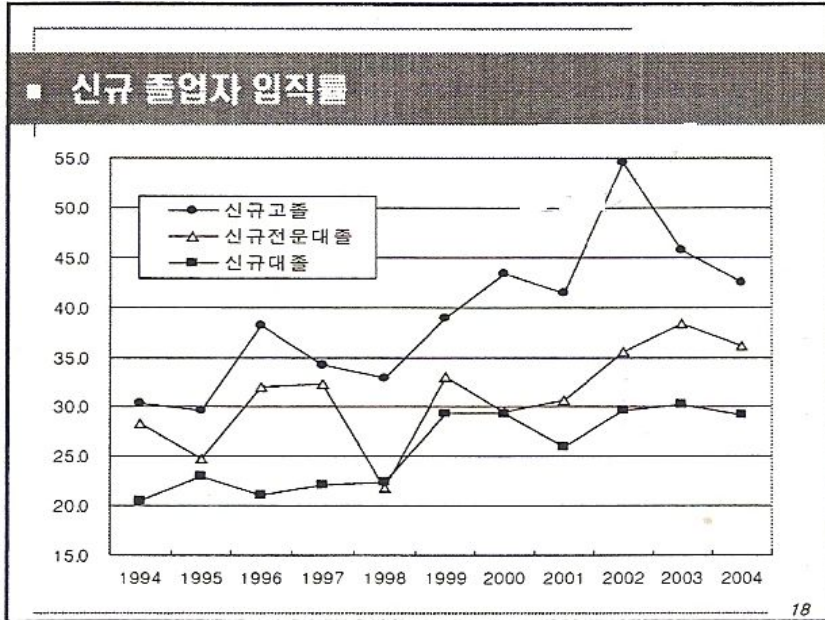
- 신규고졸자 실업률이 가장 낮고, 신규 전문 대졸자와 신규 4년제 대졸자의 실업률은 비슷함.
- 그러나 신규고졸자의 경우 입직률과 이직률이 모두 높아, 신규고졸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수준을 보여줌.



[그림 VI-4] 신규졸업자 실업률



[그림 VI-5] 신규졸업자 이직률



[그림 VI-6] 신규졸업자 입직률

- 우리나라도 청년 전체 실업자 중에 청년 무업자(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15~34세 인구 중 2005년 현재 9%에 이릅니다.
- 영국, 일본 등도 청년실업방안으로 청년무업자 등의 청년취약계층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파악함.

<표 VI-13> 우리나라 니트의 현황

단위: 천명(%)

	1995	1997	1998	1999	2000	2003	2004	2005
15~34세 인구	15,458	15,295	15,803	15,625	15,461	14,759	14,504	14,162
청년무업자 (니트)	510(3.3)	619(4.0)	1,022(6.5)	1,051(6.7)	940(6.1)	1,148(7.8)	1,214(8.4)	1,270(9.0)
구직니트	241(1.6)	301(2.0)	606(3.8)	551(3.5)	396(2.6)	397(2.7)	407(2.8)	387(2.8)
비구직니트	269(1.7)	318(2.1)	416(2.6)	500(3.2)	544(3.5)	751(5.1)	806(5.6)	873(6.2)

□ 청년실업을 낮추기 위한 그동안의 정책적 특성

-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이므로 청년실업은 국가정책의 중요 관심사가 된지 오래이며, 그동안 정부는 청년 실업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의 개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따라서 청년실업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 있음.
- 청년실업의 주원인이자 본질은 잦은 이직에 있음. 그런데 그동안 청년실업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이 이직이 아닌 입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점은 가장 큰 오류 중 하나임. 청년실업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 청년실업 정책의 또 다른 오류는 그동안 청년실업을 낮추기 위해 주로 신규 졸업자보다는 청년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점임. 따라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년 전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신규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할 필요 있음.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해결의 핵심임.

□ 청년실업을 낮추기 위한 정책대안

- 청년실업의 본질은 잦은 이직
- 입직촉진정책에서 이직예방정책으로 방향전환
 - 청년의 일자리 안착을 위한 정책으로 멘토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 청년들의 일자리 불일치(mismatch)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정보유통촉진
 -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주로 겪는 시행착오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한 직업교육강화
 - 즉, 청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직 예방책이 됨.
 - 노동시장의 정보유통 촉진
 - 학교에서 직업교육 강화
 - 사내 멘토링(mentoring)제도 도입
- 청년실업정책의 무게 중심을 청년니트를 포함한 청년취약계층(신규졸업자 포

함)으로 전환

- 그동안 청년정책의 초점은 실업정책에 맞추어져 왔음.
- 따라서 청년무업자를 포함한 청년취약계층은 관심밖에 있었음.
- 청년니트를 포함한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3. 만 5세 취학의 시사점

- 만 5세아 조기취학과 입직연령 하향화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만 5세아 조기취학의 최종목적은 입직연령의 하향화를 통한 실업률 낮추기, 결혼연령의 하향화 및 출산율 제고에 있다고 사료됨.
 - 만 5세아 조기취학 → 입직연령 하향화 및 실업률 낮추기 → 결혼 연령 하향화 → 출산율제고. 그러나, 만 5세 조기취학이 장기적으로는 입직연령의 1년 하향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왜냐하면 청년 실업의 주요인이 입직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직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입직연령의 1년 하향화가 직업의 안정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임.
- 청년실업은 입직률이 낮아서 발생한다기보다 오히려 높은 이직률(기간노동력 이직률의 약 3배)이 더 큰 원인임. 따라서 입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보다는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인 청년실업 정책이 됨.
- 만 5세 조기취학이 과연 입직연령의 하향화를 가져올 것인가?
 - 단기적으로는 만 5세아 조기취학이 입직연령 하향화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한 해에 200% 혹은 최소한 4년 동안 연속적으로 125%라는 많은 인원이 동시에 대학을 졸업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한꺼번에 진출하게 되는 노동시장은 고용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조기 입학한 많은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노동시장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졸업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입직을 늦출 가능성이 보다 큼.
 - 결론적으로 조기입학 한 대상들의 사회진출이 더 빨라진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 조기 입학 초기 해당 대졸자들이 취업에 실패하는 비율을 더 높일 수 있고 청년무직자(니트)를 양산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함.
- ‘만 5세아 조기취학 →입직연령 하향화 및 실업률 낮추기 →결혼 연령 하향화 →출산율 제고’ 모델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
- 만 5세아 조기취학 →입직연령 하향화를 가져오기 어려움. 노동시장상황에 따라 졸업유예가능성 높음.
 - 혹시 입직연령 하향화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실업률을 낮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청년실업률은 입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높은 이직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
 - 입직연령은 실업률을 낮추는데 중요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의 고용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단언하기는 어려움.
 - 결혼연령 하향화 및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 논리적 실증적 고리는 약하다고 판단됨.
 - 만 5세 취학이 입직연령 인하로 연결될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우므로 5세 취학자들이 만 6세 취학자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이리라는 기대 역시 현실화될지 의문
- 최종목표가 출산율 제고인데, 입직연령 하향화를 통한 청년고용의 안정성 변수를 만5세아 조기취학변수와 연결한 것은 청년실업의 본질에 대한 파악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직접 청년고용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VII. 맺는 말

- 이상에서 만 5세 취학과 출산율을 연결하는 중간 효과로 제시된 사교육비 경감, 여성 경제활동 제고, 입직 연령 하락 등이 만 5세 취학으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살펴봄.
- 만 5세 취학과 사교육
 - 조기 취학으로 인해 사교육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와 오히려 초등시기를 빨리 경험함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사교육을 어린 연령에 접하게 되고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4세 이전부터 사교육이 늘어날 효과가 상존
 - 2009년 사교육비 자료 조사를 활용하여 2009년의 “연령-사교육비” 사이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만 4세~17세 (변경 후 만 16세)까지의 사교육비 총액을 계산해 보면 만 6세 취학 시 2675만원에서 만 5세 취학 시 2494만원으로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이는 초등에서 고등학교 까지 사교육비 전체의 6.8% 감소를 의미함.
 - 만 4세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수치는 사교육비 감소 최고치로 해석할 수 있음.
- 만 5세 취학과 여성 경제활동 제고
 - 취학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가 어느 정도 활발해 질 지는 만 5세 돌봄 서비스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판단됨.
 - 만 5세 취학이 아동 돌봄에 소요되는 각종 명시적 화폐 비용과 암묵적 시간비용 등을 증가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감소시키는 것인지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 학교가 주는 안정감, 신뢰감 등은 자녀를 맡겨두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는 하나, 학교가 보육비용을 줄여준다 하더라도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 감안되어야 함.

- 방과 후 보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일제 보육과 비교할 때 방과 후 보육 등과의 조정비용이 소요됨.
-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 취학 이후 부모가 교육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해야 하고 추가적인 시간노력이 소요될 경우 오히려 노동공급을 저해할 수 있음.
- 학교 교육의 명시적 비용이 유아교육+보육비용보다 더 들지 덜 들지에 대한 판단은 이론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
- 학교 교육은 무상인데 비해 보육은 유상이므로 명시적 비용은 학교가 더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교육비의 증가 가능성(연령에 따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경향)과 방과 후 보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직·간접 양육비용이 감소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음.
- 이상의 논의는 만 5세 취학만으로 여성의 양육부담 경감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함.

□ 만 5세 취학과 입직 연령 하락

- 최근 청년 노동시장의 추이를 감안한다면 만 5세 취학이 입직연령을 1년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조기 입학한 많은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노동시장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졸업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입직을 늦출 가능성이 보다 큼.
- 또한 높은 이직이 높은 실업률과 연결되는 청년 노동 시장의 특성 상 입직연령은 실업률을 낮추는데 중요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의 고용안정성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만 5세 취학이 결혼연령 하향화 및 출산률 제고로 이어진다는 확실한 논리적 실증적 근거를 찾기는 어려움.

□ 결론적으로 만 5세 취학이 여성의 고용촉진이나 출산률과 직계되는 본질적 요소로 보기는 어려움.

- 사교육비 감소, 여성 경제활동 제고, 취학연령 앞당기기 효과 등이 모두 불확실한 측면들을 안고 있음.
- 만 5세 취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육아비용 경감을 위한 다른 조치들과 병행될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김미숙(2008).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태(2009).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허와 실.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편), 2009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학술토론회 미래기획위원회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단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박미란(2006). 유아 조기·특기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 창원지역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배운경(2009). 경력단절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취업지원 운영체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남희, 김영심, 이은정, 김현신(2009).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97-325.
-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이기숙, 장영희, 장미라, 홍용희(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이화교육총서, 2003(2), 1-112.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남철(2005). 주요 OECD 국가의 청년층 노동시장과 교육에서 직업으로 전이 분석. *경영컨설팅연구*, 5(1), 274-289.
- 이옥(1997). 조기교육 경험요인과 아동의 창의성과의 관계. *교육연구*, 5, 99-112.
- 임유경(2003). 영아기 조기, 특기교육의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재선(2007). 『2007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2008).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 홍승아, 이미화, 김영란, 유계숙, 이영미, 이연정, 이채정(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9(2). 1-563.
- A guide to womenomics. April 12, 2006, From The Economist. Available online at: http://www.economist.com/finance/displaystory.cfm?story_id=6802551.
- Bagavos, C., & Martin, C. (2000). Low fertility, families and public policies. *Synthesis report for the annual seminar of the European Observatory on Family Matters, September 15-16, Sevilla, Spain.*
- Blau, D. M., & Robins, P. K. (1988). Child-Care Costs and Family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0(3), 374-81.
- Blau, D., & Hagy, A. (1998). The demand for quality in child ca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 104-39.
- Bongaarts, J. (2002). The end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3), 415-450.
- Bongaarts, J.(2002). The end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3), 415-150.
- Bruner, J. (1962). *On Knowing: Essays for the left ha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reprinted 1979)
- Caldwell, J., Caldwell, P., McDonald, P.(2002).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its consequences: A global surve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9(1), 1-24.

- Chensnais, J.C.(1988).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the European Union(EU-15): Facts and policies 1960-1997.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7, 82-101.
- Chesnais, J. C. (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729-739.
- Christin, H., & Butts, C. T. (2009).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A welfare regime paradox. *Social Science Research*, 38(1), 103-117.
- Cleveland, G., Gunderson, M., & Hyatt, D. (1996). Child care costs and the employment decision of women: Canadian evide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9, 132-51.
- Connelly, R. (1992). The effect of child care costs on married women' labor force particip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1), 83-90.
- Denise, D., & Guyonne, K. (2002).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and Labour Supply in Australian Families. *Australian Economic Review*, June 2002, 35(2), 204.
- Frejka, T., Ross, J.(2001). Paths to sub-replacement fertility and the empirical evidence. In Bulatao, R.A., Casterline, J.B. (Eds.), *Global Fertility Transition* (pp. 213-154). The Population Council, New York.
- Groot, W., & Van Den Brink, H. M. (1997) A household production model of paid labor, household work and child care. *De Economist*, 145(3), 325-343.
- Gustafsson, S. S., & Stafford, F. P. (1992). Child care subsidies and labor supply in Swed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1), special issue on child care, 204-230.
- Heckman, J. J. (1974) Effects of Child-Care Programs on Women's Work Effor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136-163.
- Kimmel, J. (1995). The effectiveness of child care subsidies in encouraging the welfare-to-work transition of low-income single mothers. *American Economic Review*, 85(2), 271-275.
- Lesthaeghe, R.(1995).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western countries: an

- interpretation. In K. Oppenheim, M. Jensen, A.-M. (Eds.), *Gender and Family Chang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pp. 17-62).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cDonal, P.(2002). *Low fertility: unifying the theory and the demography*. I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May 9-11, Atlanta, GA.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1-16.
- Mira, N. & Ahn, P. (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
- OECD(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 OECD(2001).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Helping Parents Into Paid Employmen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mployment Outlook. Available online at: <http://www.oecd.org/dataoecd/11/12/2079435.pdf>.
- OECD(2002). "Women at Work: Who Are They and How Are They Faring?."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mployment Outlook. Available online at: <http://www.oecd.org/dataoecd/36/7/17652667.pdf>.
- OECD(2003).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and Life*.
- OECD(2007). *OECD Employment Outlook 2007*.
- OECD(2008). OECD 영유아교육·보육정책Ⅱ(Start strong Ⅱ)(교육과학기술부, 육아정책개발센터 역).
- Powell, L. M. (2002). Joint labor supply and childcare choice decisions of married mother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7(1), 106-128.
- Ribar, D. C. (1992). Child care and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reduced form eviden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1), 134-165.

- Ribar, D. C. (1995). A structural model of 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3(3), 558-597.
- Sleeb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Viitanen, Tarja K.(2005). Cost of Childcare and Female Employment in the UK. *Labour*, 19, 149-170.
- Vittanen, T. K. (2005). Cost of Childcare and Female Employment in the UK. *LABOUR: Review of Labour Economics & Industrial Relations(Supplement 1)*, 19, 149-170.
- Wetzels, C. (2005). Supply and Price of Childcare and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the Netherlands. *LABOUR, CEIS, Fondazione Giacomo Brodolini and Blackwell Publishing Ltd*, 19(Special Issue), pp. 171-209.
- Wrohlich, K. (2006). *Labor supply and child care choices in a rationed child care market*. IZA DP working paper, 2053/policy/state/pdf.

2부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조정의
대안 모색

I. 서론

- 생애 초기 인적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선진국들은 초등학교 입학단계 이전인 영유아기의 초기 교육단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음.
 - Heckman의 인적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분석 이후, 효율적인 교육투자의 관점에서 생애초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
 -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에서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도입 및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인한 생산인구감소와 성장 동력의 약화를 우려하여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증대시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초기투자로의 관심을 유도

-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유례없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
 - 급격한 출산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자녀양육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 5세 관련 학제를 개편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필요성 대두
 - 만 5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

- 구체적으로 미래기획위원회가 제 1차 저출산 대책회의에서 만 5세 취학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만 5세 관련 학제개편의 논의가 활발해짐.
 - 만 5세로 취학연령을 한살 낮추어 육아비용을 경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만 4세 이하 아동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강화하는데 투입하여 일하는 여성의 양육

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

- 이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실현가능한 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만 5세의 초등학교 편입방안과 함께 다른 학제개편 시나리오로 기초학년 도입방안 및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함.
 - 초등학교 편입방안의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 필요예산을 도출함.
 - 만 5세를 기초학년으로 설정하는 방안과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단점 및 필요예산을 도출하여 초등학교 편입방안과 비교분석
 - 만 5세 학제개편과 더불어 아동 개인 간의 학습능력, 정서발달 등의 격차에 따른 학제의 탄력적 운영방안도 더불어 분석함.
 - 선진국의 유아관련 교육시스템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
- 만 5세의 학제개편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설정
 - 현재의 만 5세 관련 다양한 제도 및 예산의 제약조건 하에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
 - 대안별 예산을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에 관한 수준파악에 정보 제공

II. OECD 선진국의 만 5세 학제제도 사례 및 시사점¹⁾

- OECD 국가들의 만 5세 학제는 만 5세만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만 3~5세 유아교육시스템의 일부로 존재하거나 만 5세 이하 전 아동을 아우르는 교육시스템의 부분으로 편입되어 있음.
- 따라서 만 5세 학제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은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하므로 대표적인 국가들의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1. 일본의 유아교육 · 보육 일원화 정책의 현황

- 일본은 2004년 12월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적 구상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모의 취업 유무·형태 등으로 입학을 구별하지 않음.
 - 1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
 - 이용자와 유아교육시설 간에 직접 계약을 함.
 - 이를 바탕으로 2005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35개 영유아 시설에서 모델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법 개정을 통해 2006년 4월부터 본격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구상을 구체화하여 2006년 10월부터 인정(認定)어린이원이라는 정책시설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있음.

1) 본 장의 내용은 김현숙, 신은수, 유영의, 전홍주, 노재은(2008)의 부록을 참조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이하에서는 일본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정책의 현황에 대해 인정(認定)어린이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가. 인정(認定)어린이원의 제도화 배경과 목적

- 인정(認定)어린이원의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과 가정 및 지역 사회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교육수요의 다양화에 있음.
 - 부모 혹은 보호자의 취업여부에 따른 다양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존재
 - 저출산으로 인하여 영·유아의 수가 줄고 형제자매의 수가 줄어들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단체 활동이나 다른 연령과의 교류가 감소
 - 도심부를 중심으로 많은 대기아동이 있어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대기아동을 해소할 필요성
 - 핵가족화 및 지역의 자녀양육 능력의 저하를 배경으로 유치원에도 보육소에도 다니고 있지 않은 가정의 영아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부족
- 인정(認定)어린이원 제도는 위와 같이 각 지역특성에 맞게 유치원·보육소 등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인정(認定)어린이원의 기능 및 유형

- 인정(認定)어린이원은 영·유아 발달의 기초를 다지고, 보호자나 지역의 자녀양육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보육소는 부모가 모두 취업을 한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하지만, 인정(認定)어린이원은 부모의 취업 유·무와 직장형태에 관계없이 입학이 가능함.
 - 취학 전 영유아에게 적절한 유아교육·보육의 기능을 제공함과 더불어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

- 구체적인 인정(認定)어린이원의 기능을 다음과 같음.
 - 보호자의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이용가능하며 영유아의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고 영·유아 발달의 기초를 다짐.
 - 단체 활동과 다른 연령과의 교류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대기 아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치원등을 활용함.
 - 충실한 지역 자녀양육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 가정을 지원함.
- 유치원과 보육소 중 위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로 부터 인정(認定)어린이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음.

<표 II-1> 유치원 및 보육소와 인정(認定)어린이원의 기능

유치원	인정(認定)어린이원	보육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중심 - 3세에서 취학 전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전 유아교육·보육을 하나로 보고 일관된 내용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중심 - 1세에서 취학 전까지 가정에서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

자료: 최순자(2007). 일본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최근 동향 검토. 생태유아교육연구, 6(1).

□ 인정(認定)어린이원의 지역적 유형 4가지

- 유보연계형: 인가 유치원과 인가 보육소가 연계하여 인정(認定)어린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으로, 유치원과 보육소의 각각의 건물과 부속 시설이 일원화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
- 유치원형: 인가 유치원이 유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하여 보육 시간을 늘리는 등 보육소적 기능을 갖추어 인정(認定)어린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
- 보육소형: 인가 보육소가 보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뿐 아니라 그 이외의 어린이도 받아들여 유치원적인 기능을 갖추어 인정(認定)어린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
- 자치단체 재량형: 유치원이나 보육소의 인가가 없는 지역의 유아교육·보육 시설이 인정(認定)어린이원으로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

다. 인정(認定)어린이원의 인가기준

□ 교사배치 및 자격

- 교사배치 기준은 문부과학부 장관과 후생노동성 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지침에 의해 정해지며 다음과 같음.
 - 1세~2세: 1일 8시간을 이용하는 1세가 되지 않은 영아에게는 약 3명당 교사 1명, 1세~3세까지는 약 6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함.
 - 3~5세: 3세 이상의 유아 중 유치원과 같이 1일 4시간을 이용하는 유아에게는 약 35명당 교사 1명 이상, 3세 이상에서 4세까지의 유아에게는 보육소와 같이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유아에게는 약 20명당 교사 1명 이상, 4세 이상의 유아 중 장시간 이용 유아에게는 약 30명 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해야 함.
- 교사자격 기준
 - 1~2세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가 종사하도록 함.
 - 3~5세는 유치원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둘 다 가진 교사가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으며, 학급담임 교사에게는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자, 장시간 이용하는 유아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치원 교사 자격만 가진 교사나 보육교사 자격만을 가진 교사를 배제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유아교육·보육 내용

- 유아교육·보육 내용은 <유치원교육요령>과 <보육소보육지침>이 달성되도록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야 함.
- 이용시간이 다르거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든 보육소에 다니는 영유아든 간에 모두 같은 내용이 적용되어야 함.
- 초등학교 교육과 적절하게 연계되어야 함.

□ 시설설비의 기준

- 건물, 교실, 운동장 등 시설 설비는 유치원과 보육원의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보육실, 유희실, 옥외 놀이터, 조리실을 설치해야 함.

□ 자녀양육 지원 기준

- 인정(認定)어린이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영·유아와 보호자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자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지역의 여러 인재나 사회자원을 활용하도록 함.

라. 유아교육 · 보육 일원화의 재정상 특례

- (재정상의 특례) 기존의 유치원 운영비나 시설 정비비의 재정지원은 학교법인에만 한정되었으며 보육소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에 한정되었음.

<표 II-2> 인정(認定)어린이원의 재정상의 특례(사립시설의 경우)

	항목	현행제도	개정제도
유치원	(시설 정비비) 사립유치원 시설 정비비 보조금	학교법인만 조성	사회복지법인도 조성
	(운영비) 사학 조성	학교법인만 조성	사회복지법인도 조성
보육소	(시설 정비비)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사회복지법인, 일본적십자 등에서 조성(학교법인 제외)	학교법인도 조성
	(운영비) 보육소 운영비 부담금	설치주체에 관계없이 조성	현행 이외에 조성 대상을 확대(정원 10명에도 보육소 인가)

자료: 최순자(2006). 일본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최근 동향 검토. 생태유아교육연구, 6(1).

- 하지만 유아교육·보육의 일원화 시설인 인정(認定)어린이원은 설치자가 학교법인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관계없이 운영비 및 시설 정비비의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음.

마. 행정자치단체의 역할

- '취학 전 어린이에 관한 교육·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함.
 - 유아기의 교육·보육에 대해 보호자 중심의 창구역할
 - 인정(認定)어린이원의 인가신청과 유치원·보육소의 인가신청 접수창구 역할
 - 보조금 신청창구 역할

2. 이탈리아의 영아보육과 유아교육행정체제

- 이탈리아의 영아보육과 유아교육행정체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장과 밀접한 시(city) 수준에서는 통합관리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연령을 구분하여 놓은 보육행정과 교육행정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인 학부모를 고려하고, 각 지방의 특색에 맞게 통합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가. 이탈리아의 교육체제

- 이탈리아 학교 교육제도는 2003년의 모라티(Morrati) 개혁안에 의해 바뀜.
 - 이전의 학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의무교육이 고등학교로까지 12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임.
 - 유아학교는 3년의 기간이며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이탈리아 국민의 90%가량이 다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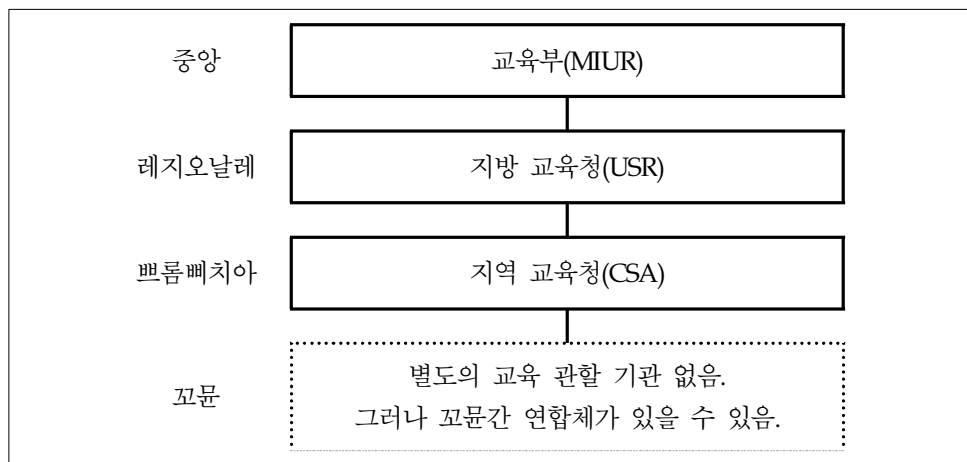
고등 교육	대학교 (Universita)	석사학위 전문 과정 (Laura Specialistica)	2	
			1	
입학연령 18.5~19세		학사학위 (Laura)	3	고급 전문인력 육성과정 (Formazione Tecnica Superiore)
			2	
			1	
국가시험 (Esame di Stato)				
중등 교육	5		5	
	고등학교 (Liceo)	2	4	
1		3		
2		2		
1		1		
국가시험 (Esame di Stato)				
초등 교육	중학교 (Scuola Secondaria di I Grado)	1		
		2		
		1		
입학연령 5.5~6세	초등학교 (Scuola Primaria)	2		
		1		
		2		
		1		
		1		
입학연령 2.5~3세	유아학교 (Scuola dell'intanzia)	3		
		2		
		1		

자료: 김정현, 박애경(2006). 이탈리아 영아보육과 유아교육행정 체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6(1).

[그림 II-1] 이탈리아의 기간학제

- 이탈리아의 교육행정은 교육·대학·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and Research)에서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통합하여 관장하고 있음.
- 교육부 관할아래 각 레지오날레별로 지방교육청을 두며, 그 아래의 행정구역 단위인 뽀뽀치아에 지역교육청을 두고 있음.
- 뽀뽀치아 내의 시인 코뮌에는 관할청을 따도 두지 않고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함.

-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도시들이 연합체를 형성해서 유아학교, 초·중등학교의 시설과 통제 등에 관한 권한과 학교 네트워크 형성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이는 뾰름삐치아 수준의 지역교육청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



자료: 김정현, 박애경(2006). 이탈리아 영아보육과 유아교육행정 체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6(1).

[그림 11-2] 이탈리아의 교육행정체제

나. 이탈리아 영아보육과 유아교육 체계의 역사

- 1922년 파시스트 정부의 국가개혁 법 '영아를 위한 보화와 지원' 법률의 통과
- 1925년 OMNI(National Organization for Maternity and Infancy)라는 산모와 영아를 위한 국가조직 결성
- OMNI센터는 1933년까지 유치원의 60%이상이 종교적 영향력 안에서 운영되었음.
- OMNI는 1970년대까지 많은 복지측면의 활약을 하였으나 사회정치적으로 주요 입법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않았음.

- 1975년 604번째 기관의 권한을 시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양함으로써 OMNI 센터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시운영체제로 전환되었음.
 - 이는 국가주도형 시대에서 지방자체의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것임.
 - 1971년 통과된 이탈리아 법 1044호로 각기 다른 공립체제로 운영되는 영유아보육과 교육이 가능해졌음.
 - 1970년대 무렵은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차원의 배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강제되던 시기로, 근로여성에게 0~3세 자녀양육을 위해 5개월간의 유급휴가, 3개월의 1/2급휴가 및 6개월의 무급휴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음.
 -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근로여성의 가정을 위한 것이었으며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고려한 것은 아니었음.
 -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부에서 이를 관할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1980년대 이후 영아서비스를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보사부에서 교육부로 일부 옮겨졌으며 유아학교서비스와의 연계성을 창출해 나가기 시작했음.
 - 심리학자들의 이론적 지원에 힘입어 영아보육서비스체제와 유아학교체제와의 합병이 시작되었음.
 - 유아교육기관의 설립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행정자치정부의 정치적 색채에 의해 시립 유아교육체제(진보적 정부)나 천주교회체제(기독교민주당 정부)의 모습을 나타냄.
 - 레지오 에밀리아시에서는 1963년 최초의 시립유치원이 세워졌으며 이는 비종교적인 최초의 유치원이었음.
 - 1980~90년대에 이르러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을 선두로 다른 지역들도 양질의 시립유치원과 영아센터 체제를 확립하였음.

다. 이탈리아 영아보육과 유아교육행정체제

- 이탈리아의 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과 함께 교육부가 관장하며 영아보육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이원화체계를 갖추고 있음.

- 하지만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에 교육개념이 접목되면서 지역 단위에서 관할부서가 일원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1980년 이탈리아에서는 대부분의 영아서비스가 사회복지부서에서 교육부서로 이관되었으며 유아학교와 연계해 가기 시작함.

□ 영아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의 행정체제

- 영아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의 담당행정기관은 각 지방별로 다름.
- 유아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할 대상이나 영아센터는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부서가 관할하거나 교육청에서 공동 관할하기도 함.

<표 II-3> 이탈리아 영아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 행정체제

	영아센터	유아학교
담당행정기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행정권한	보건부 지방 사회복지 관청 또는 교육관청 지방 종교 단체 사립기관 설립자	교육부(55%+) 지방교육청(15%) 지방 종교 단체(20%) 사립운영자(9%)

자료: 김정현, 박애경(2006). 이탈리아 영아보육과 유아교육행정 체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6(1).

□ 영아센터와 유아학교의 교육과정

- 국가수준 교육지침서(National Guidelines for individualized plans of educational activities)와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교육과정을 함께 활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적 특성이 강한 이탈리아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제와 교육과정을 운영
 - 밀라노, 팔마, 레지오 에밀리아, 피스토이아 등은 시가 주도하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임.
 - 이 중 레지오에밀리아시는 레지오에밀리아 접근법(Reggio Emilia approach)

라는 교육과정과 독특한 시립 영·유아보육과 교육 통합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교육적 성과물을 전시회를 통해 그 지역 주민에게 공개함은 물론 외국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하여 인정받아왔음.

□ 영아센터와 유아학교의 입학연령

- 영아센터가 생후 3년까지 입학이 가능하며 유아학교는 입학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생후 3년이 되는 유아부터 생후 6년까지 입학이 가능
 - 2003년 개혁법 53조에 따라 2005년 2월 28일로 3세가 되는 유아도 유아학교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음.
- 오늘날 이탈리아에서는 3~6세 유아의 약 90%가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부모는 국립, 시립, 사립 세 종류의 기관 중에 선택할 수 있음.

<표 II-4> 이탈리아 영아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 행정체제

	영아센터	유아학교
담당 연령	0~3세	3~6세
취원률	전국 6~8% 북부지역은 30% 이상	전국 95% 이상 이탈리아 남부지역은 90%
설립형태	지방자치단체, 사립	국립, 지방자치단체, 사립
기관 운영시간	유연한 운영시간 일평균 9시간 주당 최소 24시간	오전 8시30분~오후 4시 30분 시립과 사립은 더 긴 시간을 운영하기도 함

자료: 김정현, 박애경(2006). 이탈리아 영아보육과 유아교육행정 체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6(1).

3.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 스웨덴의 아동보육은 초기에는 부모의 부재기간 동안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동의 복지권의 보장과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스웨덴의 아동보육은 교육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교육과학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대상아동 연령은 방과 후 보육까지 포함하여 12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방과 후 아동보육이 이루어지는 레저타임 센터교사들은 대학졸업자로서 보수가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편임.

가. 보육환경의 변화와 아동보육의 발전과정

- 스웨덴의 아동 보육 및 교육은 아동교육의 발달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
 - 1854년에 최초의 탁아소가 설립된 스웨덴의 초기단계의 아동보육은 아동 보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여성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음.
 - 1949년 스웨덴 국가아동보육위원회의 설립 이후 아동보육체계의 확대가 이루어짐.
 - 1968년 스웨덴 국가아동보육위원회에서는 아동보육을 통해 아동의 교육, 사회적, 관리감독 요소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였음.
 -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많아지고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보육수요는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 위원회는 아동보육 정책의 원칙을 선별성의 원칙에서 보편성의 원칙으로 전환하였음.
 - 이에 따라 아동보육기관을 유아학교(pre-school)로 개정하였음.
 - 1975년 유아학교법(National Pre-school Act)을 통해 공적보육의 체계적 확대를 도모하였음.
 - 1985년 사회민주주의 정부는 1991년까지 1.5~6세의 모든 아동은 부모가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동안 공적 아동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해 법률화함.
 - 하지만 1990년대의 베이비붐에 의한 보육수요로 인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자, 1995년 1월 지방정부의 의무조항을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됨.

- 현재 1~12세의 아동들은 대부분 유아학교(pre-school), 가정보육(family day care homes), 레저타임센터(leisure-time centres) 등의 공적보육체계 안에 있음.
-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확대 결과 6~12세의 방과 후 아동보육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 공공의 레저타임 센터,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의 수가 급증하였음.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도입은 아동의 권리보다는 부모의 노동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1996년 아동보육 업무를 보건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하였는데, 이는 아동보육과 학교체계간의 통합을 촉진하고 아동보육 및 교육적 환경을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더 중요시 한 결과임.
- 현재 스웨덴의 방과 후 아동보육은 교육체계의 일부로 존재하며 이는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

나. 아동보육의 개념과 유형

- 스웨덴의 아동보육은 학교에 다니는 12세까지의 아동을 부모가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동안 제공하는 교육적 집단 활동을 지칭함.
- 전체 학령기 아동의 58%가 방과 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아학교반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91%가 방과 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유아학교 활동과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구분이 존재
 - 유아학교 활동은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유아학교(pre-schools), 가정보육(family day care homes), 개방형 유아학교(open pre-school)가 있음.
 - 방과 후 아동보육은 학교에 다니는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레저타임 센터(leisure time centres), 가정보육(family day care homes), 개방형 레저타임 활동(open leisure time activities) 등이 있음.

아동보육				
유아학교 활동(1~5세)			학령기 아동보육(6~12세)	
개방형 유아학교	유아학교	가정 보육	레저타임 센터	개방형 레저타임 활동

자료: 김재인, 이향란(2005). 스웨덴과 일본의 방과 후 아동보육제도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5(2).

[그림 II-1] 스웨덴의 아동보육

— 방과 후 아동보육에 대한 유형

- 가정보육은 교사가 자신의 집에선 부모가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동안 아동을 돌보는 경우
- 주로 학교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레저타임센터는 일하거나 학업중인 부모들 둔 학령기 아동과 특수아동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형태임.
- 개방형 레저타임 센터는 10~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지방 정부에서 설립하고 있음.

다. 아동보육 행정체계

- 정부 내 담당부처는 교육과학부의 학교교육국이 담당하지만 구체적인 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기금을 배분함으로써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스웨덴 국립교육원이 사후점검, 평가, 개발연구와 감독 등을 통하여 국가적 수준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보장하고 아동보육 부문의 발달을 도모하고 있음.

라. 방과 후 아동보육 시설현황

- 방과 후 아동보육 시설은 가정보육, 유아학교, 레저타임 센터가 있음.

- 가정보육시설 9,236개 소·중 공립이 8,679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학령기 아동은 9,544명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레저타임센터는 총 4,439개소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립시설이 4,086개 이고 사립시설은 371개소로 공립시설이 압도적임.

<표 II-5> 스웨덴의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과 이용 아동 수

유형	기관수	이용 아동 수(명)	6~12세 아동 비율(%)
가정보육시설	9,236	9,544	1.2
공립	8,679	9,384	
사립	557	457	
레저타임 센터	4,439	336,508	40.1
공립	4,068	311,513	
사립	371	24,995	

자료: 김재인, 이향란(2005). 스웨덴과 일본의 방과 후 아동보육제도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5(2).

- 레저타임 센터의 기관수는 1999년과 2000년에 줄어들었지만 이용 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II-6> 레저타임 센터수와 이용 아동 수

분류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기관 수		5,211	5,070	5,797	4,229	4,389
아동 수		239,439	263,954	301,065	332,168	332,469	336,508

자료: 김재인, 이향란(2005). 스웨덴과 일본의 방과 후 아동보육제도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5(2).

마. 방과 후 아동보육 교사

- 방과 후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가정보육교사 및 레저타임 교사 등이 있음.
- 유치원교사는 3년제 대학을 수료하고 아동발달, 가족사회학, 교수법, 예술과 공예 등을 전공하여 유치원, 개방형 유치원, 유아학교반 등에서 활동
- 보육교사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아동을 돌보는 기본기술과 발달심

리를 학습한 후 보육시설이나 레저타임 센터에서 활동

- 가정보육교사는 지방정부에서 50~100시간의 가정보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후 가정보육시설에서 활동
- 레저타임 교사는 대학교육을 받은 교사로서 교육과 훈련내용이 유아학교 교사와 유사함.

4. 프랑스의 보육 및 유아교육 제도

- 프랑스에서는 유치원부터 무상교육에 포함되며, 3세부터 유치원에 취학하므로 3세 이상 아동에게는 100% 보육기회가 제공되어 있는 반면, 3세 이하 아동은 약 20%가 크레쉬(crèche), 다른 20%는 관인육아도우미, 나머지는 가족이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가. 3세 미만 아동 보육제도

- 프랑스의 3세 미만 영아들에게 주어지는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크레쉬(crèche), 소(小)크레쉬(Micro crèche), 시간제 탁아소(halte-garderie), 보육도우미(assistantes maternelle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들을 영아보육기관(EAJE: Equipement d'Accueil de Jeune Enfant)이라 총칭함.
- EAJE는 가족이나 학교가 아니면서 0~6세 아동들에게 삶의 장소를 제공하는 제도를 총칭함.

나. 크레쉬(Crèche)

- 크레쉬는 생후 3개월부터 취학하기 전까지의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보육시설로, 프랑스 주간보육을 대표하는 유형임.
- 크레쉬를 제도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집체크레쉬(crèches collectives), 가정크레쉬(crèches familliales) 및 부모조합크레쉬 (crèches parentales) 등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음.

- 집체크레쉬는 보육이 전문적인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집체보육시설에서 보육이 이루어짐.
 - 한 반의 인원은 30~60명 정도.
 - 교사 수는 걷기 전 영아의 경우 영아 5명당 교사 1명, 걷기 시작한 영유아의 경우 영아 8명당 교사 1명으로 구성됨.
 - 보육교사는 국가보육사자격증(DEEJE: Diplôme d'Etat d'Edicateur de Jeunes Enfants) 소지자이어야 함(이화도, 2007).

- 가정크레쉬는 공공보육시설과 부모보육의 중간 형태로, 보육도우미(assistantes maternelles)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가정크레쉬는 1개당 영아 40명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부모조합크레쉬는 부모가 아동보육에 참여하는 소규모 보육기관임.
 - 영유아 수는 약 20명 정도이며, 부모의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서비스에의 최소한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음.

- 크레쉬는 관리방식에 따라 공립크레쉬와 민영크레쉬로 구분됨.
 - 공립크레쉬는 시립(municipales) 및 지자체연합(intercommunales)으로 운영되는 크레쉬들을 포함함.
 - 민영크레쉬는 다시 비영리조합크레쉬와 영리크레쉬로 구분될 수 있으며, 비영리조합크레쉬는 부모조합크레쉬를 포함하며, 영리크레쉬는 사립크레쉬와 기업직장크레쉬를 포함함.
 - 공립크레쉬의 경우 부모의 재정부담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달리 책정됨.
 - 부모의 보육비 부담은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음.

다. 그 외 보육시설

- 소(小)크레쉬(Micro crèche)는 2007년의 법령 n°2007-206을 통하여 새로이 도입된 보육형태로 한 지점에서 하나의 아파트나 주택에서 3~9명 정도의 영아를 보육하는 형태임.
 - 소크레쉬제도는 가정크레쉬와 집체크레쉬를 혼합한 형태로 보육방식에 더 많은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시간제탁아소(Halte-garderie)는 0~6세 영유아들을 위한 간헐적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의 탄력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 보통 20명 영유아를 수용하며, 한해 약 600,000~700,000 정도의 영유아 수용
 - 주로 지자체(commune)에서 운영되어지지만, 조합(association)에서 운영하기도 함 (이화도, 2007).

- 보육도우미(Assistantes maternelles)는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보육대상자의 가정이나 가정크레쉬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를 의미함.
 - 보육도우미는 고용과 관련된 제반 권리를 보장받음.
 - 보육도우미는 광역지자체(région) 단위에서 실시되는 자격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 보육도우미의 약 90%는 부모에 의해 고용된 가정보육모이며, 나머지는 가정크레쉬에 고용되어 있음.

- 영유아 보육기관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는 아래 <표 II-7>과 같음.

<표 II-7> 프랑스 공공 보육시설 아동 수의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예상)
Crèche collective	142,816	144,222	144,923	143,312	145,628
De quartier	92,852	93,858	93,256	92,555	88,878
De personnel	14,613	15,109	14,783	11,598	11,282
Mini-creche	57,000				
Parentales	3,409	3,595	3,474	3,389	2,965
Multi-accueil	26,242	31,660	33,410	35,770	42,503
Halte-garderie	71,448	69,760	69,905	68,427	65,689
Traditionnelles	53,251	48,764	48,816	47,767	45,164
Parentales	3,104	2,933	2,820	2,735	2,247
Multi-accueil	15,093	18,063	18,269	17,925	18,278
Jardin d'enfants	10,209	9,984	9,659	9,138	9,009
Mono-accueil	10,209	9,511	9,098	8,422	8,145
Multi-accueil		473	561	716	864
복합 보육(Accueil polyvalent)		5,464	12,609	20,025	33,562
공공 보육 총계	224,473	229,430	237,069	240,902	253,888

자료: 이화도(2007). 프랑스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 연구. 유아교육연구, 27(5).

- 일반적으로 부모를 제외하면 보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주로 담당하는 곳은 가족 급여 관리공단(CAF)과 지방자치단체임.
- 예를 들어 집체크레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약 35%를, CAF가 약 30%를 지원하고 있음.

라. 3~5세 보육제도: 유치원(ecole maternelle)

- 프랑스에서 유치원 교육은 3~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 유치원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3~5세 아동의 경우 2005년 현재 2세 아동의 약 26%와 3~5세 아동의 거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음.)
-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3~5세 아동에 대하여 부모가 원하는 경우 학교는 입학할 허락하여야 함.

2) 프랑스에서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자리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2세아의 입학도 허용하고 있음.

- 학급구성은 연령별로 이루어지며, 2세아의 경우 대부분 3세아와 함께 혼합반으로 구성되지만, 2세아가 많은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함.
- 프랑스 유치원은 주로 공립학교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며, 2005/2006학년도 의 경우 공립 2,289,328명, 사립 323,792명으로 공립유아학교의 비중이 전체 의 약 87.4%에 이름 (이화도, 2007).
-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유치원교육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는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음.

마. 프랑스 보육행정지원체계

- 프랑스의 보육행정은 연령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3세 미만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3세 이상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지만, 주관 행정부처와 다른 관련 부처 사이의 상호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식 행정체계를 통한 공교육체계를 갖추고 국가의 지원 하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1882년 3월 2일 지방분권법에 의하여 많은 업무와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왔음.
- 유아교육의 주관 행정부서는 교육부(Ministre d'Education)로 주로 교원선발 및 교사교육, 교원자격관리 등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급여 등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화의 영향으로 유아교육에 있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점점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공립학교 건물의 신, 개축을 위한 비용, 건물유지와 설비비용 등을 책임지고, 보조교사 등 비전문직 직원의 급여나 부가서비스 운영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담함.
-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에 대한 중앙집권식 행정지원체계에 비해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업무는 사회복지, 건강, 노동, 가족부 등 다양한 행정부서간의 유기적 관계 하에 정책이 실현되고 있음.

- 사회문제(affaires sociales)를 주관하는 부처는 보육관련 법령공포나 법령 조적을 통해 보육정책을 통해 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보육교사의 자격관련 제도를 담당
- 건강 주무부처의 모자보건국(PMI-Protecgtion maternelle et infantile)은 보육관련 위생 건강 업무를 담당
- 중앙가족급여관리공단(CNAF: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은 보육관련 각종 수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역의 면 단위 소속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
- 체육 및 청소년문제 주무부처는 정규교육 및 보육시간 외 교육활동을 담당
- 3세 이상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3세 미만 영유아보육에 있어서도 198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
- 유치원 교육과는 달리 크레쉬의 경우 공통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육의 질적, 양적 기회균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5. 영국의 보육과 유아교육체계³⁾

- 영국은 1998년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담당하던 보육(childcare)을 교육부의 유아교육(preschool)과 통합하여 교육부로 이관하고, 2006년에 교육부의 일부 기능을 정리한 후 부서 명칭을 어린이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es)로 개칭하고 모든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정부정책 일원화
- 초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서비스 기준을 달성하고, 0~5세의 초기교육을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해 담당부처 일원화
- 부처통합 10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간의 질적 수준이나 교사수준, 서비스 등에 차이가 잔존하지만 부처통합은 학령기 이전

3) 영국사례에 관한 내용은 영국유아교육전문가인 Edward Melhuish, Peter Moss와 재무성(HM Treasury)의 Marie-Anne Barnes와 Sam Tendeter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초함.

초기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체제일원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

가. 초기교육 10년 전략

- 영국 정부는 세 가지 원칙하에 10년 초기교육전략을 입안
 - 모든 영유아에게 인생 초기에 필요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체계 마련
 - 부모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이와 같은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안
 - 부모의 선택가능성 확대를 위한 전략
 - － 12개월의 모성휴가 정착을 목표로 2007년 4월에는 9개월의 법적 모성휴가 설정
 - － 다음 정부초기까지 어머니의 모성휴가를 아버지에게 이전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모성휴가를 부모휴가로 전환
 - － 아동센터(Children's Center)가 지방정부를 통해 부모에게 정보, 보건, 보육 및 기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08년까지는 2,500개, 2010년까지는 3,500개로 증설
 - 0~14세를 둔 가정의 모든 부모가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지방정부에게 충분한 육아지원시설을 확보할 책임부과
 - － 3~4세의 아동에게 1년 38주에 걸쳐 매주 20시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는 15시간의 무상보육서비스 제공
 - － 현재 주당 아동 1인당 60파운드 제공
 - － 2010년까지 3~14세의 전 아동에게 방과 후 보육서비스가 주 5일 8시~18시까지 제공되도록 함.
 -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매년 125백만 파운드를 시설의 서비스 수준 개선에 이용
 - 초기교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개혁
 - 초기교육관련 시설에 대한 인증 및 평가제도 강화
-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수단
- 근로장려세제(Working Tax Credit)의 Child Element를 매주 최대 300파운드로 증가시키고 육아비용의 최대 80%까지 보전

Families with two young children, full-time childcare				
Total childcare cost (per week)	£320		£320	
Per week	Maximum support (income up to £24,000)		Partial support (income of £37,500)	
	Current system	Reformed system	Current system	Reformed system
Early years entitlement (3s and 4s for 12.5 hours)	£50	—	£50	—
Early years entitlement (3s and 4s for 15 hours)	—	£60	—	£60
Childcare element	£140	£208	£44	£112
Total Govt contribution	£190	£268	£94	£172
Parental contribution (% of total costs)	£130 (41%)	£52 (16%)	£225 (70%)	£148 (46%)

[그림 II-2] 종일제 보육서비스 이용 시 비용 및 부담

Families with two young children, part-time childcare				
Total childcare cost (per week)	£160		£160	
Per week	Maximum support (income up to £24,000)		Partial support (income of £37,500)	
	Current system	Reformed system	Current system	Reformed system
Early years entitlement (3s and 4s for 12.5 hours)	£50	—	£50	—
Early years entitlement (3s and 4s for 15 hours)	—	£60	—	£60
Childcare element	£77	£80	£0	£0
Total Govt contribution	£127	£140	£50	£60
Parental contribution (% of total costs)	£33 (41%)	£20 (13%)	£110 (69%)	£100 (63%)

[그림 II-3] 반일제 육아서비스 이용 시 비용 및 부담

나. 육아지원 서비스 관련 현황

- 현재 영국의 육아지원 공식서비스는 Daycare, Childminder, out of school club, preschool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의 서비스는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초등학교에 부속된 preschool도 있으나 상당부분은 민간시설에 의해 만 3~4세의 유아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일부지역에서는 부모가 유아교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국지적 초과수요 존재
- 노동당정부의 의욕적인 육아지원에 따라 Daycare 시설 수와 이용 아동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낮은 Childminder의 수와 이용 아동 수는 크게 감소하여 육아지원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동시에 질적 수준의 개선이 발생

<표 II-8> 영국의 육아서비스 시설 및 이용아동수

공급자 유형	공급자 수		아동수	
	1997년	2004년	1997년	2004년
Childminder	98,500	72,700	365,200	322,100
Full Daycare	6,100	11,500	193,800	483,600
Out of school clubs	2,600	9,400	78,700	332,400
총계			637,700	1,138,100

자료: <http://www.daycaretrust.org.uk/>

- 전형적인 육아지원시설 이용비용은 종일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으며 지역별 차이가 존재
 - Childminder가 Daycare보다 다소 이용비용이 낮음.
 - 2세 이하 영아의 이용비용이 만 3세 이상 유아에 비해 높음.
 - 지역별 차이는 영아의 경우가 크며, 런던시내나 요크셔 지방이 비싼 편

<표 II-9> 지역별, 시설유형별 이용비용

단위: 파운드/주

	Daycare (만 2세 이하)	Daycare (만 3세 이상)	최고 비용	Childminder (만 2세 이하)	Childminder (만3세 이상)	after school club	휴가시 이용시설 비용('04)
전국평균	134	123	-	121	120	35	73.71
런던시내	168	149	338	137	132	31	70.83
런던교외	169	147	284	135	134	29	77.48
southeast	148	137	250	135	145	33	79.52
southwest	129	121	186	120	115	35	76.63
동부	141	118	215	149	148	33	77.89
중서부	107	105	179	101	99	33	74.35
중동부	111	110	160	101	101	41	67.26
요크셔와 햄버사이드	140	131	175	127	126	48	76.69
북서지방	114	107	162	96	97	31	66.46
북동지방	110	103	183	105	104	31	70.00

자료: <http://www.daycaretrust.org.uk/>

-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의 자격이나 수준은 시설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나며 교사의 급여도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교사급여는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 낮은 편

<표 II-10> 영국의 육아서비스담당 교사의 자격 및 보수

시설유형	여성비율	25세 이하 비율	NVQ3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시간당 임금 (파운드)
childcare	98%	41%	52%	5.50
childminder	99%	6%	15%	na
nursery	99%	16%	76%	7.10
playgroup	99%	7%	44%	5.40

자료: <http://www.daycaretrust.org.uk/>

- nursery 교사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아 4년제 대학이나 3년제를 졸업하고 NVQ3 자격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이 76%에 달하며 시간당 임금도 7.10파운드로 다른 시설유형 교사에 비해 높음.
- childminder의 교사는 자격조건이 가장 낮음.

다. 10년 전략의 성과

- 정부의 육아지원 확대에 따라 평균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는 연간 1,350 파운드의 보조금을 수혜하고 빈곤가정은 약 3,000파운드의 정부보조 수혜
 - 1997년과 비교하여 2004년 현재, 첫째아에 대한 Child Benefit의 수혜비중은 약 25% 순증가
 - 2003년 4월, 자녀세액공제제도(Child Tax Credit)와 근로장려세제(Working Tax Credit)의 도입이후 새로운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입은 가구 수는 6.1백만이고, 아동 수는 10.5백만명을 초과

- 법적으로 모성휴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아를 둔 부모의 일과 가정양립의 권리를 강화
 - 유급모성휴가기간을 18주에서 26주로 확대하였으며 그 이후 26주간의 무급휴가도 가능하도록 조정
 - 육아휴직급여는 2005년 4월부터 주당 106파운드로 증가하여 초기 6주간의 휴가동안에는 통상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2003년부터 아버지도 2주간의 부성휴가를 확보

- 육아시설의 확대 및 3~4세 유아의무교육 도입
 - 1997~2004년 사이에 525,000명의 아동이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확보
 - NNI(Neighborhood Nurseries Initiative)의 빈곤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육아시설확대전략에 따라 1,279개의 육아시설이 빈곤지역에 설립되어 45,000명의 아동이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 3~4세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거의 100% 가까운 수요자가 이를 이용
 - 180개의 Sure Start 아동센터가 설립되어 빈민지역에 거주하는 5세이하의 아동에게 통합서비스 제공

□ 육아서비스 수준제고

- 3~4세 의무교육 도입이후 모든 유아가 파트타임 서비스를 수혜함으로써 아동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Foundation Stage 커리큘럼이 2000년 도입된 이후 3~4세 아동의 교육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 Ofsted(Office for Standard in Education)가 2001년 이후 영유아의 육아지원시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이후 영국전체의 육아지원시설에 대한 일관적인 평가기준을 확립하여 평가 시행 중임.
 - 초등학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육아지원시설까지 확대

라. 향후 개선방향

□ 유급육아휴직제도의 확대 및 탄력근무제 도입 필요성

- 모성휴가는 12개월 보장되어 있으나 유급휴직은 6개월에 국한되므로 6개월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경향이 있어 모성휴가 관련 급여를 확대할 필요
- 2003년에 도입된 탄력근무제 법안에 따라 약 80만명의 근로자가 탄력근무제를 신청하여 크게 성공하였으나 영유아가 아닌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에도 도입 필요

□ 저소득층 집중지역의 육아지원시설은 그 숫자는 적지 않지만 지속성이 거의 없어 수개월내에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정적인 시설공급의 중요성 여전히 존재하며 만3~4세의 의무유아교육 서비스를 받은 이후 지속적인 종일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정시설이 부족

□ 3~4세 의무유아교육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2세에게 정부 지원을 확대할지 여부를 시범연구를 통해 고민 중임.

- 현재의 15시간은 너무 짧아 일하는 기혼여성의 직장양육의 양립에 부담
- 2세의 아동에게도 의무교육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 중임.

-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여전히 교사수준이나 급여는 매우 낮은 편이므로 개선 시급
- 현재는 level 1~5까지 매우 다양한 수준의 교사가 혼재되어 있어 NVQ3 수준(level 3)까지 상승시키는 것이 급선무

6. 각국 사례의 시사점

- 위에 제시한 국가들의 5세 학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일본의 경우, 5세는 5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정어린이원이나 보육소, 유치원에서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며 정부가 통일된 교육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경우, 영아센터는 보건부에서 유아학교는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5세는 모두 유아학교에서 서비스를 수혜 받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이원화된 시스템이기는 하나 연령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이나 지속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스웨덴의 경우, 교육부에서 1~12세 전체아동의 교육시스템을 관장하고 있으며 만 5세 아동은 유아학교, 개방형 유아학교에서 주로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일부아동은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부모의 보육비 부담은 소득의 3% 수준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음.
 - 프랑스의 경우, 보육 및 유아교육 담당 부처가 이원화 되어 있고 5세는 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며 유치원교육을 일부 의무교육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1998년 보육과 유아교육이 어린이부로 일원화 되었고, 일부 초등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유아학교가 있기는 하나 5세 대부분이 민간 유아학교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 현재 주당 15시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표 II-11> 만 5세 관련 학제의 국가 간 비교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영국
공통점		초등학교와는 독립된 교육체계 (주로 유아학교에서 서비스 제공)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강화하는 방향				
차이점	행정 체계	이원화	이원화→ 교육부로 상당부분 이관	일원화 (교육부)	이원화	일원화 (교육부)
	교육 집단	인정어린이 원 일원화, 유치원, 보육소	대부분 유아학교	유아학교 대부분, 일부 가정보육시설	유치원	유아학교, 보육시설
	보조금	부모부담 존재	부모부담 비중 큰 편	부모부담은 소득대비 3%	무상교육	주15시간 무상교육

- 5세를 초등학교에 편입하는 방안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제도임.
 - 외국의 사례들은 3~5세의 유아교육을 영아교육과 통합하여 취학 전 아동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보육 및 교육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음.
 - 5세의 교육내용을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하려는 교과과정 개편의 움직임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5세를 초등학교학제에 편입하는 방안은 시도되지 않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영국 역시 기초교육시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5세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추세

- 외국의 사례에 기초할 때 5세를 초등학교 교육에 편입하는 방안보다는 5세 교육내용을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재정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Ⅲ. 대안모색 1 : 만 5세 초등학교 편입 방안

1. 취지 및 배경

- ◎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1차 저출산 대책회의'에서 만 5세 취학방안 제시('09. 11. 25)
- 최근 빨라진 아동의 발달 상황을 고려, 입학연령을 1년 낮추면 육아비용 경감, 자녀를 사회에 일찍 진출시켜 예산 절감
- 절감된 예산은 만 4세 이하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강화하는 데 투입, 아이를 가진 직장인들의 부담 경감

❖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정책제언 검토과제

- ①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앞당기기
- ② 만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 확대
- ③ 만 3~4세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
- ④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을 동일시설에서 돌보는 방안 추진
- ⑤ 육아 및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 평가를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대

□ 최근 아동의 성장·발달이 빨라진 관계로 취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 조정

- 정보자극이 풍부해진 현대사회의 교육환경과 청소년 성장·발달의 조기화에 근거함.
-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은 급격하게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유추할 수 있음.
- 유아들의 성장·발달이 과거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유아의 발달상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부모의 양육 부담과 취학 전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 취학전 교육은 대부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관계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며, 취학 전 출발점 교육에 있어서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이 유발될 수 있음.
 - 교육기획균등 차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 간의 출발점 행동의 격차를 조기에 줄여야 함.

-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입학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안
 -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의 입장 : 대체적으로 산업화와 직업의 변화가 급변해가는 추세에 우리의 학교 교육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학연령 또한 선진국에 비해 늦으므로 만 5세 취학 찬성(하윤수, 2006)
 - 「한국노동연구원」의 입장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자원재배치가 불가피하므로 만 5세 취학 찬성(하윤수, 2006)

- 조기입학 아동의 학교 적응에 큰 문제가 없음.
 - 이전의 연구들은 조기입학 아동의 수가 극히 적은 경우,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취 등을 다룬 것으로, 이번과 같이 재학아동의 전수(특정 연령 전체 일괄 입학 시), 25%(3개월 단위로 단계적 입학 시), 20%(2개월 단위로 단계적 입학 시)를 차지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데 제한적임.
 - 즉, 이번과 같이 대다수 집단 조기입학의 상황에서 해당 아동들을 종단적으로 추적 연구해서 얻은 결론만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음.
 - 단, 참고적으로 이전에 수행된 조기입학 아동의 학교 적응 관련 선행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취학연령과 학업성취도 및 사회적응력은 상관이 없다는 연구(조부경, 김영실, 신은수, 2006에서 재인용하여 표로 정리함.)

<표 III-1> 조기입학 아동의 학교적응 및 성취 관련 연구 정리

연구자	주요 연구 결과
Sweetland 와 DeSimone(1987)	◎ 6학년 아동의 학업성취 정도를 분석한 결과, ⇒ 같은 학급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DeMeis와 Stearns(1992)	◎ 생월이 빠른 아동과 늦은 아동 1,676명 조사 결과, ⇒ 생월이 빠른 아동이 학업문제나 사회적인 행동문제 등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Morrison, Griffith와 Alberts(1997)	◎ 초등학교 1학년 중 생월이 빠른 아동과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에 대해 조사한 결과, ⇒ 생월이 늦은 아동이 빠른 아동만큼의 성취를 보여주어 취학연령이 학습이나 학업 부진을 예측해 주지는 못하였음.
Spitzer, Cupp와 Parks(1995)	◎ K학년과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연령과 사회적 수용도, 자아지각, 신체와 인지 및 사회적 능력, 학교적응 등의 전반적인 사회적 발달과의 관계 분석한 결과, ⇒ 교사평정에 의한 사회적 행동과 또래들이 평가한 친사회성과 인기도에서만 낮은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 월령이 낮은 아동이 높은 아동에 비해 사회적 수용과 행동에 있어서 덜 호의적인 평가 받았음. ⇒ 이러한 차이는 1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크게 줄어 연구자들은 월령이 낮은 아동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전반적인 결론 제시

자료: 조부경 외 3인(2006). [쟁점연구] 어린이 삶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유아교육 학제 개편. 유아교육연구, 26(3).

- 초등학교 편입의 경우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연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일괄 입학이나 만 5세아 단계적 입학을 고려할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만 5세아의 초등학교 편입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함.
 - 특히 유치원 영역별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 교과 간 연계를 위해 양자 간 내용의 양과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생활 영역별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유-초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의 경우 현행 수준별 교육과정(공통, 1, 2)에서 만 3, 4, 5세의 연령에 적합한 '연령별 교육과정' 구성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만 4세와 만 5세(초등학교 입학아)의 교육과정 연계 차원임).

- 정책 시행 첫 해에 일괄 전면 시행, 2년차부터는 만 5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정착
 - 특정 한 한해에 학생수가 200%(6세 100%+5세 100%)로 증가, 매년 다음 학년으로 이동, 총 초등학생 수는 시행전년도 대비 17%씩 증가하여 6년간 지속되었다가 7년차에 이전 학생 수로 환원됨.
 - 초등학생 수 변화 추이: 600 → 700 → 700 → 700 → 700 → 700 → 700 → 600
 - 이를 감안한 대폭적인 시설·학급 증설 및 교사 증원 배치 등의 조치 필요(6년간에 해당함)
 - 현재의 시설 및 교사의 상태로는 아무리 과밀학급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한 해에 200%로 증가한 학생 수 수용 불가능함.
 - 놓여준 유휴교실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시설(건물)을 수요대로 증설할 수는 없는 바, 교실만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컨테이너 교실 수업 등) 모색 필요
 - 단, 7년차에는 다시 이전의 초등학생수로 환원되므로 증가된 학급 및 교사 수에 대한 감축 조치 필요
- 7년차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수가 200%로 증가, 매년 다음 학년으로 이동 3년간 지속, 총 중학생 수는 시행 전 대비 매해 33%씩 증가하여 3년간 지속됨.
 - 중학생 수 변화 추이: 300 → 400 → 400 → 400 → 300
 - 학교 시설, 교사 수급, 교육과정 개편 등 미리 준비해야 함.
 - 해당 아동이 포함된 학년(학급)에서 연령 차이는 최대 24개월임.
- 10년차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200%로 증가, 매년 다음 학년으로 이동 3년간 지속, 총 고등학생 수는 시행 전 대비 매해 33%씩 증가하여 3년간 지속됨.
 - 고등학생 수 변화 추이: 300 → 400 → 400 → 400 → 300
 - 학교 시설, 교사 수급, 교육과정 개편 등 미리 준비해야 함.
 - 해당 아동이 포함된 학년(학급)에서 연령 차이는 최대 24개월임.

2) 교육과정

- 기존 연령 학생과 조정 대상 연령 학생이 동시에 공존하는 학년(2012년 입학 학생)
 - 학급 구성 방식: 1~3학년까지 3년간은 기존 연령 학생과 조정 연령 학생의 학급을 별도로 구분하여 구성함.
 - 단, 20~30명의 한 학급 학생 수가 충족되지 않아 연령별 학급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학급 내에서 개별화 교육 조치
 - 기존 연령 학생은 기존의 교육과정 그대로 적용
 - 조정 연령 학생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만 5세(유치원), 초등 1년, 초등 2년, 초등 3년의 4개년 교육과정을 압축하여 적용
 - 4년 과정을 3년간으로 압축하여 적용할 교육과정 마련 필요
 - 만5, 6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 구성 시 연령 및 학습 발달 단계에 적합한 수준별(단계형)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 때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급 구성은 2단계 또는 3단계로 구분하여 학습자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적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임.
 - 또한 연령 및 발달 수준 차이에 대응하여 조기 진급 및 유예 제도에 따른 학생 정치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해야 함. 이때 조기 진급이나 유예 학생의 선별은 중등학교 이전 단계에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만 5세아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하되,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놀이·활동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만 5세아 교육과정 구성에서는 초등학교 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이 2학년 이후 본격적인 교과 중심 교육과정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놀이, 활동중심→탐구, 학습 중심'으로 나아가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임.

-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조정 연령 학생도 기존 연령 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 적용
- 장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교육과정을 일치시키는 작업 완료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기존 연령 학생	⇒	기존 초 1년 교육과정	기존 초 2년 교육과정	기존 초 3년 교육과정	기존 초 4년 교육과정	기존 초 5년 교육과정	기존 초 6년 교육과정
조정 연령 학생	⇒	만5세 과정	초 1년 과정	초 2년 과정			

[그림 III-1] 4개년 교육과정을 3년으로 압축 적용 예

- 대안: 위와 같은 틀에 따르되, 교육과정 압축시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교육과정, 즉, 만 5세(유치원), 초등 1년, 초등 2년, 초등 3년, 초등 4년까지의 5개년 교육과정을 4년으로 압축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이 경우, 초등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학년 균을 설정하고 있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게 됨.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기존 연령 학생	⇒	기존 초 1년 교육과정	기존 초 2년 교육과정	기존 초 3년 교육과정	기존 초 4년 교육과정	기존 초 5년 교육과정	기존 초 6년 교육과정
조정 연령 학생	⇒	만5세 과정	초 1년 과정	초 2년 과정	초 3년 과정		

[그림 III-2] 5개년 교육과정을 4년으로 압축 적용 예

- 조정 연령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학년(2013년부터 이후 입학생)
 - 초·중등 교육과정은 하향 조정된 연령 수준에 맞게 개정
 - 2013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부분 개정
 - 만 5세(유치원), 초등 1~6년까지 총 7년간의 교육과정을 초등 6년간 압축하여 적용
 - 즉, 7년간의 교육과정을 6년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 저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유치원 단계의 놀이·활동 중심의 교육내용과 기존의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 교과 등에서 추구하는 교육내용을 기초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함.

- 만 5, 6세아와 만 5세아 대상의 별도 교육과정 구성, 운영에 따른 다음의 문제 해결이 편입 방안 성패의 중요한 관건임.
 - 별도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서 개발의 비용 부담 가중
 - 일괄 입학 당해연도 입학 만 5세아 입시 등의 경쟁에 따른 형평성 문제
 - 일괄 입학 당해연도 입학생의 수용 시설 및 교원 확충 문제 등

3) 교사 자격 및 수요

- 초등 교원이 담당하되, 초등학교 1~3학년 담당 교사에 대한 재교육 필요
 - 특히, 만 5세 유치원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교사 연수 필수

4) 학급 규모 및 교사 대 유아 비율(적용 기준)

- 만 5세아 취원 대상 아동이 100% 초등학교에 편입하는 경우 예상
 - 학급당 학생 수 30명으로 고려 시(최대 가능한 규모 고려)

- 만 5세아 취원 대상 아동이 100% 중학교에 편입하는 경우 예상

- 총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5년차에는 만 5세 아동 일괄 초등학교 입학
 - 첫 해에 학생수가 125%로 증가, 매년 다음 학년으로 이동 4년간 지속, 총 초등학생 수는 3년 단위로 3년간 증가 → 3년간 유지 → 3년간 감소 (이전상태로 환원) 과정을 거치며 9년간 증감변화 가져옴.
 - 초등학생 수 변화 추이: 600 → 625 → 650 → 675 → 700 → 700 → 700 → 675 → 650 → 625 → 600
 - 이를 감안한 시설·학급 증설 및 교사 증원 배치 등 조치 필요
 - 현재의 시설 및 교사의 상태로는 아무리 과밀학급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200% 학생수 수용 불가능함.
 - 단, 10년차에는 다시 이전의 초등학생수로 환원되므로 증가된 학급 및 교사 수에 대한 조치 고려해야 함.
- 7년차부터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수가 125%로 증가, 매년 다음 학년으로 이동 3년간 지속, 총 중학생 수는 2년 간격으로 증가 → 유지 → 감소(이전상태로 환원)하며 6년간 증감변화 가져옴.
 - 중학생수 변화 추이: 300 → 325 → 350 → 375 → 375 → 350 → 325 → 300
 - 학교 시설, 교사 수급, 교육과정 개편 등 미리 준비해야 함.
 - 해당 아동이 포함된 학년(학급)에서 최대 연령 차이는 최대 15개월임.
- 10년차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125%로 증가, 매년 다음 학년으로 이동 3년간 지속, 총 고등학생 수는 2년 간격으로 증가 → 유지 → 감소 (이전상태로 환원)하며 6년간 증감변화 가져옴.
 - 고등학생 수 변화 추이: 300 → 325 → 350 → 375 → 375 → 350 → 325 → 300
 - 학교 시설, 교사 수급, 교육과정 개편 등 미리 준비해야 함.
 - 해당 아동이 포함된 학년(학급)에서 최대 연령 차이는 최대 15개월임.

2) 교육과정

- 기존 연령 학생과 조정 연령 학생이 동시에 공존하는 학년(2012~2015년 사이의 입학생)
 - 학급 구성 방식: 기존 연령 학생과 조정 연령 학생을 혼합하여 구성
 - 동일 학급에서 수업을 하되,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함.
 - 연령 및 발달 단계의 차이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두 연령대 혼합 비율의 차이(1차년도: 만 6세 100, 만 5세 25; 2차년도: 만 6세 75, 만 5세 50; 3차년도: 만 6세 50, 만 5세 75; 4차년도: 만 6세 25, 만 5세 100; 5차년도: 만 5세 100)에 따라 교육과정의 양과 수준, 적합성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학년도별 두 연령대의 구성비가 달라짐에 따라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의 주 대상 연령(main target)에 따른 교육과정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1차 년도에는 만6세아 중심의 교육과정, 4차 년도에는 만5세아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것인지,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융통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는 추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
 - 기존의 교육과정과, 2016년 이후 적용될 전면 개정 교육과정 두 가지를 가지고 교육과정 재구성(수준별 교육과정: 크기는 2개 수준으로) 매뉴얼 개발·제공
 - 따라서 두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자체를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지 않고,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교육과정 재구성 또는 교육과정 압축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교육과정 문서상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조정 연령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학년(2016년부터 이후 입학생)

○ 초·중등교육과정은 하향 조정된 연령 수준에 맞게 개정

- 2016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
- 특히 아동의 발달 특성, 흥미 및 요구를 반영한 주제 중심의 통합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원 단계의 활동 중심 교육 내용과 기존의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 교과 등에서 추구하는 교육내용을 기초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야 할 것임.
-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의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 활동 영역과 현행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에 대한 양자 간의 연계성 및 내용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편제 구성 등을 비롯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재편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사회적, 학문적 변화 동향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하거나 초등학교급과 별도로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 다만,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될 경우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과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간의 연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등학교 교육과정 또한 전면 개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임.

3) 학급 규모 및 교사 대 유아 비율(적용 기준)

□ 만 5세아 취원 대상 아동이 25% 초등학교에 편입하는 경우 예상

- 학급당 학생 수 30명으로 고려 시(최대 가능한 규모 고려)

□ 만 5세아 취원 대상 아동이 25% 중학교에 편입하는 경우 예상

- 학급당 학생 수 35명으로 고려 시(최대 가능한 규모 고려)

□ 만 5세아 취원 대상 아동이 25% 고등학교에 편입하는 경우 예상

- 학급당 학생 수 35명으로 고려 시(최대 가능한 규모 고려)

다. 2개월 단위 분할 편입 방안

1) 개요

- 2012년부터 시행, 2개월 단위로 전체 아동 수의 17%씩 누적 증가 편입(한 학년 아동 수 100명일 경우 예시)

<표 III-4> 만 5세아 2개월 단위 분할 편입 시 학생 수 증가 현황

연도	<유치원> 만5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1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2	83	100+17 1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3	66	83+34 117	1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4	49	66+51 117	117	1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5	32	49+68 117	117	117	1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6	17	32+85 117	117	117	117	11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7	0	17+100 117	117	117	117	117	117	100	100	100	100	100	100
2018	0	100	117	117	117	117	117	117	100	100	100	100	100
2019	0	100	100	117	117	117	117	117	117	100	100	100	100
2020	0	100	100	100	117	117	117	117	117	117	100	100	100
2021	0	100	100	100	100	117	117	117	117	117	117	100	100
2022	0	100	100	100	100	100	117	117	117	117	117	117	100
2023	0	100	100	100	100	100	100	117	117	117	117	117	117
2024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7	117	117	117	117
2025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7	117	117	117
2026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7	117	117
2027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7	117
2028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7

- 총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7년차에는 만 5세 아동 일괄 초등학교 입학
 - 첫 해에 학생수가 117%로 증가, 매년 다음 학년으로 이동 6년간 지속, 총 초등학생 수는 증가 → 감소(이전상태로 환원)하며 11년간 증감변화

가져옴.

- 초등학생 수 변화 추이 : 600 → 617 → 634 → 651 → 668 → 685 → 702 → 685 → 668 → 651 → 634 → 617 → 600
- 이를 감안한 시설·학급 증설 및 교사 증원 배치 등 조치 필요
- 17% 소폭 증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증설 및 증원 조치 없이 다소간의 과밀학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12년차에 다시 이전의 초등학생수로 환원됨.
- 7년차부터는 중학교 1학년 학생수가 117%로 증가, 매년 다음 학년으로 이동 3년간 지속, 총 중학생 수는 2년 단위로 증가 → 유지 → 감소(이전상태로 환원)하며 8년간 증감변화 가져옴.
- 중학생 수 변화 추이 : 300 → 317 → 334 → 351 → 351 → 351 → 351 → 334 → 317 → 300
- 학교 시설, 교사 수급, 교육과정 개편 등 미리 준비해야 함.
- 해당 아동이 포함된 학년(학급)에서 최대 연령 차이는 최대 14개월임.
- 10년차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117%로 증가, 매년 다음 학년으로 이동 3년간 지속, 총 고등학생 수는 2년 단위로 증가 → 유지 → 감소(이전상태로 환원)하며 8년간 증감변화 가져옴.
- 고등학생 수 변화 추이 : 300 → 317 → 334 → 351 → 351 → 351 → 351 → 334 → 317 → 300
- 학교 시설, 교사 수급, 교육과정 개편 등 미리 준비해야 함.
- 해당 아동이 포함된 학년(학급)에서 최대 연령 차이는 최대 14개월임.

2) 교육과정

- 기존 연령 학생과 조정 연령 학생이 동시에 공존하는 학년(2012~2017년 사이의 입학생)
- 학급 구성 방식 : 기존 연령 학생과 조정 연령 학생을 혼합하여 구성
- 동일 학급에서 수업을 하되,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함.
 - 단, 학년별도 구성비가 달라짐에 따라(2012년에는 기존 연령 학생이, 년

도가 뒤로 갈수록 조정 연령 학생이 더 많게 구성),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의 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기존의 교육과정과, 2018년 이후 적용될 전면 개정 교육과정 두 가지를 가지고 교육과정 재구성(수준별 교육과정: 크게는 2개 수준으로) 매뉴얼 개발·제공

조정 연령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학년(2018년부터 이후 입학생)

- 초·중등교육과정은 하향 조정된 연령 수준에 맞게 개정
 - 2018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일부 개정

3) 학급 규모 및 교사 대 유아 비율(적용 기준)

만 5세아 취원 대상 아동의 17%가 초등학교에 편입하는 경우 예상

- 학급당 학생 수 30명으로 고려 시(최대 가능한 규모 고려)

만 5세아 취원 대상 아동이 17% 중학교에 편입하는 경우 예상

- 학급당 학생 수 35명으로 고려 시(최대 가능한 규모 고려)

만 5세아 취원 대상 아동이 17% 고등학교에 편입하는 경우 예상

- 학급당 학생 수 35명으로 고려 시(최대 가능한 규모 고려)

3. 장점

현행 초·중등 학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함.

만 5세의 공교육 체제 편입으로 학부모의 유아기 육아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 부모의 양육 부담 감축 및 취학 전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 있음.
- 전체 수학 연한이 줄어들어 청년들의 사회진출 및 입직 시기를 단축하여 경제활동 인구 증가 효과 있음.
- 초등학교 입학 시 아동의 출발점 행동에 있어 개별적 차이를 좁힐 수 있음.
 - 유치원 원아들의 초등학교 교육으로의 이행을 도울 수 있음(김정효, 2007)
 - 조기에 취학하게 되면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학습하여 높은 학업성취도를 기대할 수 있고,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학업 기술의 결손도 보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약 2020년경 취학아동 수가 1/3정도 감소하여 유휴시설이 생길 것으로 예상, 지금의 병설유치원 제도를 확대하여 초등학교로 유치원을 편입한다면 교육시설과 교사의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김정효, 2007).

4. 단점

- 학부모, 유아교육·보육계의 반대 심함.
 - 만 5세 조기 취학에 대한 학부모 및 일반 국민 여론 조사 결과(별첨 참조)
 - 만 5세아 조기취학 반대가 더 우세
 - 반대 이유: 학교생활(교과과정)에 부적응, 사교육비 더욱 늘 것임(다른 학원이나 과외로 대치). 경쟁과열 등 혼란 문제 등
 - 4교시에 끝나면 방과 후 지도 문제 등 맞벌이 부부에게 더욱 부담.
 - 일부 찬성 이유: 빨라진 발육과 성장 상태, 사교육비 경감, 사회진출 앞당김.
 - 만 5세 조기취학이 자녀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주지 못함.
 - 만 5세 조기취학이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 없음.
 -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취학 전 유아 무상교육이 더 필요하며 현실적 대안임.

- 만 5세 지도 부담, 만 5세 취학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설 개선 및 보조교사 필요(초등교사 의견)
- 조정 연령대 아동(학생)들의 경쟁(대입, 취업 등) 심화
- 현재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부모와 유아 모두 학교 교육에 대한 학습 스트레스 심화
- 어린 연령에 취학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불안감과 과도한 경쟁심리로 인한 기타 학원 및 개인 과외교습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정규 수업시간이 일찍 끝나게 됨에 따라, 이후 시간 방과후 지도 및 자녀 관리의 문제와 비용 지출 예상해야 함.
- 시나리오별 초등학교 편입 방식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3~4년, 장기적으로는 7~10년씩 교원 및 학급(시설) 확대, 초등교사 보수 교육 등 개편에 따른 재정 소요
- 국가 공부담 공교육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은 교사 인건비와 시설 초기 투자비용임.
- 현재의 초등학교 시설·환경을 만 5세의 발달과 학습 특성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
 - 공부담 공교육비를 추가 투자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만 5세를 취학시킨다는 것은 현재의 초등 1학년 교실 규모를 그대로 이용하여 과밀학급을 구성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추가 학급 구성없이, 추가 교사 배치가 없는 경우로서, 교사 대 학생 비율이 1:40이상을 초래할 것임.
 - 일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읍면지역의 경우이며, 대도시 지역은 해당하지 않음. 읍면지역의 경우에도 교실 그 자체 공간만 확보된다는 것이며, 시설 개선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임.

IV. 대안모색 2 : 기초학년(K-grade) 도입방안

1. 취지 및 배경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관련 학제 개편의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만 5세 무상공교육 및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제도 구축용이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기초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학제 개편에 의한 사회적 문제 최소화
 - 현행 초등학교 이상의 각 급 학교 체제 유지에 의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
 - 학제 개편 시 해당 연령과 중복되는 학년의 교육과정, 시설, 교원 수급 문제 및 추후 과잉 수급된 문제 최소화
 - 해당 학년의 학부모, 아동의 입시, 취업의 과열 경쟁에 의한 불만 최소화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재교육, 시설 개조 및 증축 비용을 위한 재정적 부담 최소화
- 만 5세 유아의 K학년 체제 구축에 의한 OECD 국가 중 최하위 만 5세 취원율 상향과 만 5세 유아를 위한 교육의 보편성 확보 및 수월성 교육의 기반 구축
- OECD 국가 중 만 5세 유치원 취원율이 가장 낮으며, 유아 공교육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보고됨(OECD, 2009a).
 - OECD 국가 만 5세 유치원 취원율 대부분 90%이상이나 우리나라는 만 5세 유치원 취원율 50.0%로 매우 낮게 나타나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제기됨(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09; OECD, 2009a)
 - 만 5세의 유아교육기관의 취원율은 보육시설 만 5세 취원아를 포함 86.0%로 매우 낮음(OECD, 2009b).

- 만 5세를 포함한 만 3~5세 유아공교육 비율은 2009년 37.9%로 매우 낮으므로 OECD 국가의 평균 90%이상으로 상향할 필요성 제기됨 .
- 유치원의 만 5세반을 K학년 체제로 구축함으로써, 만 5세 유아교육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공교육 비율을 높여, 영유아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교원의 질 제고를 위한 체제 구축
- GDP 대비 교육비 공공지출 비율은 OECD 국가 중 프랑스 0.6, 스웨덴 0.4 등이며, OECD 국가 평균은 0.3으로 보고됨(OECD, 2009b).
-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교육비 공공지출 비율로 일본과 함께 매우 낮은 0.1로 보고(OECD, 2009b)
- 만 5세의 K학년 체제 구축을 통하여 만 5세를 포함한 만 3세, 4세의 유아 무상공교육 체제의 발판으로서 정책 기반 확보 및 만 3-5세 유아 무상공교육 확대에 의한 유아교육 선진화 체제의 발판 구축
- 만 5세 K학년과 연계된 만 3-5(K학년)세의 유아교육 단계의 기간 학제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 확보
 - 만 3, 4, 5세(K학년) 연령별 유아교육과정 개정 및 양 질의 교원 체제 구축
 - 만 5세 K학년과 초등학교 연계 체제 구축에 의한 기간 학제로서 유아교육의 안정성 확보
- 만 5세 K학년과 연계된 초등교육 체제로서 초등 저학년과의 연계 학제 구축
- 만 5세 K학년 체제와 연계된 만 3, 4+ 5세(K학년) 유아교육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여,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의 만 3~12세 초등교육프로그램 PYP(Primary Years Programme)의 국제기준에 적합한 학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시작점으로 체제 전환
-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유치원 내 만 5세 K학년 체제로서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학교급으로서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 조성
- 미국의 초등학교 내 K학년 체제의 만 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아교육 전문성에 기초한 K학년 체제 적용

- 미국의 초등학교 급을 기반으로 한 만 5세 K학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 3, 4세의 Universal PreK체제 보완에서 시사점 도출
 - 만 5세 K학년 유아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유아기 교육 역량 강화
 - 만 5세 K학년의 유아교육 전공의 유아 교사의 교육 전문성 활용
 - 만 5세 K학년의 유아를 위한 사회적 물리적 교육환경 제공을 통한 시설 기반 확보
- OECD 및 아시아 경제 선진국의 초등학교 연계 체제인 유아학교 (Preschool)의 초등준비반, 유아반, 혹은 유아학년 체제를 도입한 한국형 만 5세 K학년 체제로서 유아교육의 선진 체제 제안(European Commission, 2009)
 - 선진화된 유아학교 급의 만 5세 K학년 교육과정 개발 및 만 3, 4세 연계 교육과정 개발로서 교육과정의 선진화 기반 구축
 - 만 3, 4, 5세(K학년)의 연령별 표준화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 의한 생애초기의 유아기 역량 강화
 - 유아교육 단계의 만 5세 K학년 체제 구축을 통한 유아교원의 전문성 고양, 시설 환경 선진화 구축
 - 만 5세 K학년의 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질 제고와 시설 환경 정비 체제 구축
- K학년은 현 유치원과 초등교육과의 연계 학년으로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가교적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외국 선진국의 학제를 살펴보면, 유아학교와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유아반, 준비반을 운영하여 유아기 학교 준비도를 강화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K학년을 초등학교 준비학년의 기초학년 체제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European Commission, 2009).
 - 만 5세 K학년을 유치원 내 상급학년으로서 기간학제로 보고, 초등학교 준비학년 체제로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과 OECD 국가 중 유아학교 급 내 초등학교 연계 체제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의 K학년, 네덜란드의 유아반(Preschool class), 영국의 준비반(Reception class), 호주의 준비학년(Preparatory years), 노르웨이의 기초반(Grunskole), 덴마크 준비반(Preparatory class), 스웨덴의 유아반(Forskola klass), 프랑스 초등준비반(cp) 체제임.
- K학년 도입 방안의 대안 모형은 K+5(초등학교 5년형), K+6(현행 학제형: 초등학교 6년형), K+2(초등학교 저학년 연계 농산어촌형: 복식운영)로 제시할 수 있음.
- 초등학교와 연계된 K학년은 만 5세 K학년의 기간학제 편입으로 현행 유치원의 만 5세반과 초등학교 교육의 혼합형 시스템으로 기존의 초등학교와는 다른 체제라고 볼 수 있음.
 - K학년은 현 학제를 유지하면서 유아교육의 학교급, 초등교육 학교급의 현 교육체제의 변동을 최소화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K학년은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과 연계할 수는 있으나, 초등학교의 교육 체제와 성격이 다른 유치원 교육 체제임.
 - K학년은 현행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유아교육 체제로서는 유치원의 상급학년으로 볼 수 있음.
- K학년의 교육과정은 현행 유치원교육과정의 개정에 의하여 만 5세 유아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운영함.
- K학년 교육과정은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도, 교과 교육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통합교육과정의 현행 유치원교육과정으로 운영함.
 - K학년 교육과정은 오전의 '기본과정'과 오후의 '기타 교육활동 과정(심화, 특성화 교육활동+보육)'으로 구성함(현 유치원교육과정의 선진화 TF).
 - K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 함께 종일제 교육과정에 기초한 보육의 비

중을 높이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운영할 체제를 구축함.

- K학년 교육과정 재구조화 시 K학년 이후 향후 초등교육 단계에서의 원활한 학습을 담보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K학년 도입을 기반으로 만 5세와 연계된 만 3~5세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로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뿐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함.

- 현행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 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연계에 기초한 가교형태의 K학년 교육과정 개발이 요청됨.
 - 공교육 체제 내에 기간학제로서 K학년의 교육과정은 만 3, 4세 표준교육과정, 만 5세 K학년 교육과정의 표준화 문제와 연계됨.
 -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교육과정과 보건복지가족부의 표준보육과정과 차별화된 별도의 K학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K학년과 연계된 만 3, 4세 교육과정의 표준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
- 현행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 교육과정 내과 내 돌봄 기능이 포함된 보육 활동과 방과후 교육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유치원교육과정의 5개 생활영역별 교육활동을 유지할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국어, 수학, 통합 교과) 및 활동 영역이 유치원 5개 생활영역과 연계되도록 교육과정 재편성이 요구됨. 특히 이들 영역과 교과 간의 중복 또는 계열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표 IV-1> 현행 유치원 생활 영역과 초등학교 1학년 교과 간의 연계

현행 유치원 영역	언어생활	건강생활	표현생활	사회생활	탐구생활	
현행 초등학교 1학년 교과	국어	즐거운 생활 (체육)	즐거운 생활 (음악, 미술)	슬기로운 생활 (사회)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학)

2. 구체적인 세부시나리오

가. K+6 방안

1) 교육과정

-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의 수준 별 교육과정을 만 3, 4, 5세의 연령별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여 만 5세 교육과정을 K학년 교육과정으로 구성
 - 만 3, 4세 유아교육과정과의 연계된 만 5세 K학년의 교육과정을 위한 3, 4, 5세 연령별 교육과정이 요구됨.
 - 만 3, 4, 5(K학년)세 교육과정은 연령별로 개정하고, 각 연령별 교육과정은 유아의 발달 편차를 고려하여 세분화하는 것이 요구됨.
 -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과의 연계될 수 있는 만 5세 K학년 연령별 교육과정이 요구됨.
 - K학년의 유치원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1, 2학년 통합교육과정의 개정 시 교과영역의 연계 방안 추진
 - K학년의 유치원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1, 2학년 통합교육과정의 개정 시 교육내용의 수준별 연계 방안 추진
- 현행 초등학교 6년 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만 5세아를 위한 1년 교육과정이 연계됨.
- ※ 이 방안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새롭게 설정한 K학년의 정체성 확보와 1학년과의 연계성 강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초등학교 교육과정 현행 유지, 초등 1학년 하위 기초학년 단계로 K학년을 설정함으로써 K학과 초등학교 6년간의 교육과정 성격을 구분하여 차별화하여 K학년의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을 K학년의 교육과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만약 K학년에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할 경우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성격과 차별화된 만 5세에 적합한 교육과정 적

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K학년과 1~6학년 교육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 개정 초등학교 편제와 같이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K학년을 별도로 구분하여 K학년,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구성할 수 있음. 이에 따라 K학년은 놀이 및 활동 중심 교육과정으로, 1~6학년은 탐구 및 학습 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K학년과 1~6학년의 교육 목적과 성격이 차별화 된다면 동일 학교급 내 학년 간 교육의 비일관성이라는 모순점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K학년의 담당 교사의 학교급 자격 문제를 포함한 교원 양성 문제에까지 쟁점화 될 수 있음.
-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전면 또는 일부 개편에 따라 K학년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K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K학년의 교육과정(보육+교육)과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이 별개로 운영되지 않도록 양 교육과정 간의 상호 조정이 필요함.
 - 특히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보육 활동이 중요한 역할임에 주목하여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는 돌봄 기능이 포함된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기준이 구성되어야 할 것임.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과정상의 시간 배당 기준을 유치원 교육과정의 종일제 개념에 비추어 명시할 필요가 있음.
 - K학년과 1~6학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K학년과 저학년을 동일 학년군으로 묶음으로써 교육 목적과 성격을 일관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즉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K~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구성할 수 있음. 이들 학년군 편성에 따라 K학년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전면 개편에 가까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2) 교사자격

- 만 5세 K학년은 기간 학제 교원으로서, 교사자격은 장기적으로 유아교육

전공의 교사로 임용하며, 초등학교 교원과 동일한 학력의 학사 학위 이상의 교원 전문성 확보를 원칙으로 함.

- 국공립 유치원의 만 5세 K학년 교원은 현 국공립 임용 교원을 배치하되, 학사 학위 자격 소지를 원칙으로 학력을 고양함.
 - 현 국공립 유치원 임용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학사 학위 소지자로 자격 강화
 - 현 국공립 유치원 임용 교사 중 학사 학위 미 소지자는 만 5세 K학년 시행 후 완전 적용 기간(3년 혹은 5년)까지 취득하도록 함.
 - 향후 국공립 유치원 임용 예정 교사는 학사 학위 소지자로 자격 강화
 - 사립 유치원의 만 5세 K학년 교원은 유아교육 전공 학사 학위를 원칙으로 하고, 국공립 유치원 임용에 준하는 임용 과정을 적용함.
 - 현 사립유치원 교사 중 만 5세 K학년 교사는 유아교육 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를 우선 배치함.
 - 현 사립유치원 교사 중 만 5세 K학년 교사는 교원 임용과정(시험)을 통한 자격을 소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추후 사립유치원 교사 중 만 5세 K학년 교사는 교원 임용과정(시험)을 통한 자격 소지자를 임용함.
- ※ 중등교원 사립학교 임용 시 적용하였던 사립학교 교원 임용 순위고사 체제를 적용할 수 있음.

3) 교사 대 아동 비율

- 만 5세 K학년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25를 적용하고 추후 OECD 평균의 1:20으로 하향 적용
- 현 유치원의 만 5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0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김현숙, 신은수, 유영의, 전홍주, 노재은, 2008).
 - 현 유치원의 만 5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조정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의 만 5세 교사 대 아동 비율(1:25)을 적용할 필요
- 향후 유아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를 전제로 만 5세 학년 교사 대 아동 비

율의 하향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의 만 5세 K학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0으로 적용할 재정 확보
- 향후 만 3, 4세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만 3~5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평균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 제기
- 유치원의 만 3, 4세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하향 적용할 재정 확보
 - 만 4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 1:20 적용
 - 만 3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 1:15 적용

4) 시설 마련 방안

- 현 국공립 단설유치원, 병설 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기존 시설 적용
 - 현 국공립 단설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의 만 5세반을 만 5세 K학년으로 운영
 - 현 사립유치원의 만 5세 반을 만 5세 K학년으로 운영
 - 2008년부터 시행된 유치원 기관평가를 적용하여 만 5세 K학년 체제를 관리
- 16개 시도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별 증설이 필요한 만 5세 K학년은 국공립 시설의 확대를 우선으로 하고, 국공립 대 사립시설의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보완함.
 - 16개 시도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만 5세 K학년 증설은 국공립 유치원을 기반으로 확대함.
 - 16개 시도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만 5세 K학년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우선으로 확보함.
 - 16개 시도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만 5세 K학년은 국공립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적용 시설 보완을 통하여 확보함.
 - 16개 시도의 대도시의 만 5세 K학년 증설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우선으로 확보함.
 - 16개 시도의 대도시 지역 만 5세 K학년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우선으로 확보함.

- 16개 시도의 대도시 지역의 만 5세 K학년은 국공립 단설 유치원 증설이 어려운 지역은 초등학교 유희교실을 적용 시설 보완을 통한 병설 유치원 증설로 확보함.

□ 연도별 시설 편입 방안

- 2012~2014년 3년 간 현 무상교육(보육)비에 기초하여 3년간 중학교 의무교육 편입 방안과 동일한 방안으로 편입

<표 IV-2> 3년에 걸친 편입방안

단위: 수(명)

		2012	2013	2014
만 5세아 장래인구 수		442,373	440,129	436,478
만 5세 무상교육비율	농산어촌	17%	17%	17%
	중소도시	20%	40%	40%
	대도시	-	10%	43%
	총비율	37%	67%	100%
만 5세 무상교육 대상아수	농산어촌	75,203	74,821	74,201
	중소도시	88,474	176,051	174,591
	대도시	-	-	187,686
	계	163,677	250,872	436,478

- 2012~2014년 표준교육비에 기초하여 5년간 중학교 의무교육 편입 방안과 동일한 방안으로 편입

<표 IV-3> 5년에 걸친 편입방안

단위: 수(명)

		2012	2013	2014	2015	2016
만 5세아 장래인구수		442,373	440,129	436,478	431,714	425,809
만 5세 무상교육비율	농산어촌	17%	17%	17%	17%	17%
	중소도시	-	20	40%	40%	40%
	대도시	-	-	-	20%	43%
	총비율	17%	37%	57%	77%	100%
만 5세 무상교육 대상아수	농산어촌	75,203	74,821	74,201	73,391	72,387
	중소도시	-	88,025	294,591	172,685	170,321
	대도시	-	-	-	86,342	183,098
	계	75,203	162,846	368,792	332,418	425,806

나. K+5 방안

1) 교육과정

- 현행 초등학교 6년에서 5년으로 1년을 단축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의 만 5세아를 위한 1년 교육과정이 연계됨.
- 현행 초등학교 6년 교육과정을 5년 교육과정으로 이수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5년형 교육과정을 새로 개발하거나 현행 6년 교육과정의 압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초등학교 최종 학년인 5학년 교육과정과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이 재편성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감축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교육내용)을 K학년으로 구성해서는 안 될 것임. 즉 초등학교 학년별 교육과정을 1단계씩 하향화 하여 1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을 새롭게 설정할 K학년으로 구성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것임.
 - 따라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한 K학년의 만 5세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K학년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한 형태로 교육과정 압축 방식 등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즉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이 내용 적합성 및 연계가 이상적일 경우에는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교육과정을 각각 2.5년 교육과정으로 압축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특히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연계 및 내용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5년간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 내용 재조정이 필요할 것임.
 -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학년군 개념에 따라 초등학교 급의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 시 K~1학년군, 2~3학년군, 4~5학년군 등의 학년군으로 재편성 될 수 있음. 이들 각 학년군 내 학년 간에는 학생의 발달 특성, 교육 목적 및 내용, 방법상의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의 적절성 평가 및 K학년 설정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 K학년은 초등학교와 연계된 학년으로 만 5세아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만 3, 4, 5세)의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여 만 3, 4, 5세 연령별 교육과정 중 만 5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되, 해당 만 5세 유아의 향후 학습 발달 및 초등학교와 연계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편성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연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K학년 교육과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감축함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K학년으로 하향화 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서는 안 될 것임.
 -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의 5개 생활 영역별 교육활동을 K학년으로 설정할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와 유치원 5개 생활 영역 내용 간의 연계를 통해 이들 영역과 교과 간의 중복성 또는 계열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편성이 요구됨.

2) 교사자격 - K+6 방안과 동일

3) 교사 대 아동 비율 - K+6 방안과 동일

4) 시설 마련 방안 - K+6 방안과 동일

다. K+2 방안

1) 교육과정

- 현행 초등학교 복식 학급 운영 방식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 과정이 동일 학급 내에 편성됨.

- K학년+초1학년, K학년+초1, 2학년, K학년+초1, 2, 3학년 등으로 구성됨(학년군 개념 도입 시 다양한 형태로 가능).
 - K학년과 초등 1학년 대상, K학년과 초등 1, 2학년 대상, K학년과 초등 1, 2, 3학년 대상 별도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음. 즉 학년군별 교육과정을 구성하되, 학년군내 학년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학년군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임.
 - K학년 만 5세아의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교육과정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두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에 대한 안내가 국가 교육과정 기준 또는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원의 배치(유치원 자격 교사와 초등학교 자격 교사의 병행 교수 등) 문제는 분명히 언급되어야 할 것임.
- 농산어촌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만 3~4세, K학년,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의 분교형 종합학교 체제를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함.
-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과의 연계될 수 있는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의 연령별 교육과정 개정에 의하여 만 5세 K학년, 3~4세의 연령별 교육과정이 요구됨.
 - 농산어촌의 K학년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계 종합학교 체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구성
 - K학년 만 5세 유치원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1, 2학년 통합교육과정의 교과영역 연계 방안 추진
 - K학년 만 5세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1, 2학년 통합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수준별 연계 방안 추진
 - K학년의 교육과정은 만 3, 4세 교육과정, 만 0~2세 보육과정과 연계 교육과정 필요
- 농산어촌 지역의 분교형 종합학교에는 만 0~2세 병설 어린이집을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교사자격 - K+6 방안과 동일

3) 교사 대 아동 비율 - K+6 방안과 동일

4) 시설 마련 방안

- 현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내 국공립 병설 유치원의 기존 시설을 적용
 - 현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내 국공립 병설 유치원의 만 5세반을 만 5세 K학년으로 전환
- 농산어촌 지역의 만 3, 4세, 만 5세 K학년, 초등학교 1, 2학년(저학년)의 분교형 시설의 보완을 통한 선진화된 종합학교 시설 확보
 - 현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내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분교형 종합학교로 전환하여 유아 및 초등교육의 거점기관으로 운영

3. 장점

- K학년제 방안은 현행 유치원, 초, 중등 학제의 골격 유지에 의한 사회적 부담 최소화
 - 유치원의 만 5세 완전 무상교육체제로 유아교육의 선진화 기반 구축
 - 만 5세 초등학교 단순편입 시 추가되는 초등교원 재교육, 초등학교 시설 보완 및 증설 비용 경감
 - 현 유치원 교원 유지 및 유치원 시설 활용 가능에 의한 비용 절감
 - 만5세의 공교육 체제 편입으로 학부모의 유아기 육아비용 경감
- K학년 연계의 만 3, 4세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기반을 조성하여 OECD 국가 수준의 만 3~5세 유아교육의 선진 체제 구축
- K+6년제 방안은 현행 유, 초, 중등교육 학제 유지에 기반을 둔 만 5세 무

상공교육 체제 강화

- K+5년제 방안은 초등학교 5년제에 의한 조기 입학 연령 체제 방안으로 적절함.
- K+5년제 방안은 만 5세 초등학교 단순편입 시 발생하는 만 5세 교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최소화
- K+6년제의 7년제 초등학교 급의 문제 보완 가능
- K+5-3-3제에 의한 조기 입학 연령 체제 구축 가능

4. 단점

- K+6년제 방안은 조기 입학연령 체제 방안과 연계가 불가능함.
 - K+6년제 방안은 조기 입학연령 체제 방안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조기 진급·진학의 활성화가 어려움.
 - 조기 진급과 조기 진학이 활성화될 경우 중학교 조기입학이 중학교 입시화하여 사교육비 증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교육 초기단계에서 양극화 심화 가능성
- K+5년제 방안은 초, 중등학교 급의 학제 개편이 추진, 국제 기준의 의무교육 연한에 대한 문제 제기됨.
 - 의무교육 연한의 국제 기준을 위하여 K+5-3-4제 도입 시 모든 학교 급의 학제 개편이 추진되어야 하는 사회적 부담
 - 초등학교원의 5년제 축소로 초등학교원 수급의 문제 발생
 - 초, 중등 교육과정의 개편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 발생
 - K+5년제 방안은 2017년 중학교 입학, 2020년 고등학교 입학, 2024년 대학교 입학 및 추후 취업 경쟁의 사회적 부담에 의한 반발
 - 중, 고, 대학교 입학 시 2개 학년이 중복되어 2012학년 만 5세 K학년 입학생과 2011학년 현행 체제의 입학생의 해당 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

및 입시 경쟁 과열 우려,

- 추후 해당 학년에만 부여되는 입학, 취업의 경쟁에 의한 사회적 반발 우려됨.
- K+5년제 방안은 현 체제(K+초등 6년제)의 경제적 부담 중 1/6이 경감되나, 미래 세대에 부담이 부여되는 경제적 문제 발생

5. 소결

- 한국형 유치원 내 만 5세 연령을 위한 K학년 체제 도입으로 의무교육에 준하는 만 5세 무상공교육 체제의 구축 기반 제공
 - 기간학제 체제로서 유치원 내 K학년 체제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국공립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사립유치원을 적용한 다양한 유형 개발 가능
 - 농산어촌 지역은 현행 유치원 시설로서 만 5세 K학년 체제의 기반이 확보됨.
 - 농산어촌 지역은 현행 유향 초등학교 시설에 의한 국공립 단설, 병설 유치원을 증설하여 만 3, 4세, 만 5세 K학년, 초등 저학년을 연계하여 만 3세 이후 무상공교육 체제 구축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의한 초등학교 시설 개조, 교육과정 개정, 초등교원 재교육을 위한 경비 절감과 현재 유치원 시설 활용
 -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의한 단순 편입 안에 비교하여 위한 초등학교 시설 개조, 초등학교 교사 재교육 비용 절감
- 현 만 3-5세 유아교육 체제 선진화의 첫 단계로 만 5세 완전 무상공교육 체제 구축 및 현 유아교육의 교육시설, 교원 전문성, 교육과정 개정의 기반 구축

-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현재 유치원의 교육시설 활용가능, 교원의 활용가능, 교육과정 개정에 의한 선진화된 교육과정 적용이 가능하여 추가 재정 비용이 적음.
- 인구 감소에 의한 유치원과 초등저학년의 통합을 통한 유아-초등 연계 학교 구축을 통한 유, 초등 연계 교육기반 구축
- 농산어촌의 만 3, 4세 유치원+ 만 5세 K학년+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체제의 종합학교 체제 구축이 용이

□ 선진국 사례에 기초한 배경

- 미국의 K학년 체제의 문제를 보완한 한국형 K학년 체제 구축 필요
 - 미국 초등학교의 K학년은 초등학교의 시설과 연계되어 초등학교 교육의 구조적 형태로 운영 문제가 제기
 - 미국 초등학교의 K학년의 교사는 초등연계 자격증의 교사로서 유아교육전공 교사보다는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
 - 미국 초등학교의 K학년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문제가 제기
 - 미국 초등학교의 K학년 연계 PreKindergarten의 재정 확보 노력
- 미국 5세 K학년의 보완을 위하여 초등교육과의 연계보다는 3, 4세 공립 유아학교(Universal Prekindergarten)와 연계 체제를 강화
 - K학년 연계의 미국 공립 유아학교는 3~5세 유아를 위한 교육 시설 구축 강화
 - K학년 교사는 Pre-K 자격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100% 임용 후에 차후 K-초등학교 자격 교사를 차선으로 배치함.
 - K학년 교육과정은 미국 각 주에서 Pre-K standards에 기초한 연령별 교육과정 개발, 더 나아가 유아교육과정과 연계된 0~2세 Infant-Toddler 영아교육과정을 개발 적용 중
 - 미국 초등학교의 K학년 연계 PreKindergarten의 재정 확보 노력

- 미국 K학년 체제 보완을 통한 5세 입학 연령 관련 시사점
 - 미국의 공립 K학년 혹은 사립유치원의 K학년 체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재 유아단계의 공교육 체제 부재에 의한 OECD 국가 중 만 5세 낮은 공교육 취원율의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3, 4세 공립 유아학교(Universal Prekindergarten)와 연계한 5세 K학년 체제를 도입하여 현행 유치원(보육시설)의 5세를 유아학교 K학년 체제로 전환하면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 가능
- OECD 국가의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학교(Preschool)내 초등준비반(Preparatory class, Reception class)을 운영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의 학교 준비도 향상을 통한 생애초기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유아학교 급의 기간 학제로서 만 5세 연령에 해당하는 기초학년 체제임.
 - 5세 네덜란드의 유아반(Preschool class), 덴마크의 준비반(Preparatory class), 호주의 준비학년(Preparatory years), 영국의 준비반(Reception class)
 - 6세 노르웨이의 기초반(Grunskole), 스웨덴의 유아반(Forskola klass), 핀란드의 유아반(Esiopetus), 프랑스의 초등준비반(cp)

V. 대안모색 3 : 현행제도 유지 및 개선방안

1. 대안 제시 배경

가. 배경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의 근거에 따라, 만 5세 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기 위한 건물, 교실, 실외 놀이터, 교사,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평가제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며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선진국의 추세는 보육과 교육의 일방적이고 정치적 요구에 의한 기관의 일원화 방향이 아니라 그 나라들에서 자생적으로 성장, 발달해 온 유아교육과 보육기관들의 목적과 기능을 살리되, 부모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예: 영국의 경우, 반일제 유아교육(preschool), 종일제 보육, 아동센터의 오전 또는 오후 보육, 가정보육, 초등학교 내 반일제 교육 등 목적과 기능이 다양한 기관을 부모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되, 국가는 모든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동일하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용비용에 대해 지원함.
-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나라별로 기관의 역사에 따른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여 교육법, 보육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표 V-1> 각 나라별 유아교육과 보육기관의 종류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유치원관련 기관	nursery school preschool	유치원	유아원과 유치원	유치원 preschool
보육관련 기관	children's center 종일제보육	보육소	통합아동보육기관 호르트	종일제보육 방과 후 보육

- 유치원과 보육기관이 일원화 체제를 택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주로 국민의 조세 부담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복지 국가형 나라 즉 스웨덴,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이는 조세부담율이 40%이상 되는 나라들로 의무교육전인 영아와 유아에 대한 공적 지원 정도가 높음.
- 5세 취학 연령 국가로 대표적인 영국의 경우, 0~5세 미만 영유아의 연계적이고 연속적인 질 높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 즉 2007년 6월 정부조직법을 단행하여 0~19세까지의 모든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 가족 정책을 모두 통합하고자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로 행정부처의 명칭을 바꾸었음. 이는 사회복지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던 보육서비스와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수행하고자 함이며 뿐 만 아니라 아동과 가족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것임. 그 후 2008년도에는 그동안 0~3세와 3~5세의 Foundation Stage로 분리되었던 내용을 합하여 0~5세 연속성을 강조하고 보육과 교육의 통합을 이루도록 Early Years Foundation Stage를 개발하고 학습, 발달, 양육부분에 대한 통합과정을 마련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은 종일반을 강화하여 취업모 등의 종일제 운영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종일 보육 뿐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이나 연장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등 현재 부모나 가족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적 중복 투자는 재정적 측면에서는 매우 미비함.
- 현행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에게 모두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적체제에서 관리하고 있음. 아래의 표처럼 보육시설에는 총 17만 2천여명(시설장포함), 유치원에는 총 3만 4천명(원장, 원감포함)이 있어 약 20만명이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하고 있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단일 학과 보다는 여러 학과나 전공(유아교육과, 보육학과, 아동학과, 아동가족학과,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에서 교사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자격을 단일화하거나 두 자격증의 통합은 현행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유발하고 학문적 발전 뿐 아니라 대학 교과과정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 유발

<표 V-2>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현황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구분
	계	시설장	보육교사	원장	원감	교사	계	
총계	172,559	33,499	139,060	3,533	1,033	29,460	34,026	총계
국·공립	14,224	1,826	12,398	2	3	12	17	국립
법인	13,041	1,458	11,583					
민간	법인 외	6,224	969	100	342	7,544	7,986	공립
	민간개인	82,035	13,306					
부모협동	46,182	13,251	32,931	3,431	688	21,904	26,023	사립
가정	8,162	2,339	5,823					
직장	2,691	350	2,34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나. 정책 방향 근거

- 국가의 인재양성은 연령이 빠를수록 일찍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OECD, 2006). 이때 임신에서부터 만 5세까지 생애초기의 결정적 시기는 이후의 발달과 학습에 기초가 되며 중요한 시기이고 자원을 투입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는 시기라는 점에 주목함.
-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1900년 전후하여 상류층 가정의 유아의 학습을 시작으로 출발하였고 보육의 경우에는 1921년부터 저소득이나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필요 양육을 시작으로 출발. 두 기관 모두 긴 역사를 거치며 교육과 보육의 학문적, 사회적 역할을 담당.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두 기관 모두 유아의 발달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보충, 추가하면서 발전
- 발전적 방향이라 함은 두 기관이 부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자 한다는

점. 즉 가까이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맞벌이 부모의 경우 유치원 중 일제를 선택하거나, 두 자녀를 영아반과 유아반에 보내고자 하는 부모의 경우 영아반이 없는 유치원이 아니라 영아반과 유아반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함으로써 두 기관 모두 부모의 선택권과 요구를 수용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의 수는 변동이 없거나 약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수는 2배 이상 급증. 이는 차등보육료 지원의 적극적 확대와 맞벌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였기 때문⁴⁾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이번 정부에서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일치
- 현재 어린이집은 기관의 보육과정, 보육환경 및 인적자원과 안전/영양에 대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통가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음. 이처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적극 도입하여 민간주도의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 문제를 풀고 있으며 2010년 1월 현재 총 시설의 90%정도가 신청하였음.
- 유치원도 2009년 국공립시설에 대한 평가와 2010년 사립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적 및 지자체 수준의 강력한 추진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현행 유아교육과 보육의 두 체제는 법, 재정, 교사양성, 교사자격증, 교육/보육과정, 평가제도 등의 측면에서 발전적 방향을 유지해 나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음. 특히 유치원, 보육시설 모두 정부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간의 부모 부담 정도는 아래의 표처럼 차이가 크게 나고 있음.

4) 김현숙, 신은수, 유영의, 전홍주, 노재은(2008). 연령별 적정학급규모를 통한 유아의무교육대비 표준교육비산정연구. 교육인적자원부.

<표 V-3> 유치원과 보육시설 연간 비용에서 부모분담율

구 분	연간 1인당 비용(원)	부모분담율(%)	
		공 립 사 립	
유치원	2,235,000	24.7	91.0
보육시설	2,454,700	정부지원	43.1
		정부미지원	73.3

자료: 이옥, 김은설, 신나리, 문무경, 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러한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모 분담율을 낮추고 국가적 지원을 높이는 것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부분임.

2.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

가.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지원을 시행

- 아래의 표 V-4에서 보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이미 만 5세 무상 지원에 대한 법적 조항이 마련 되어있음.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경우 모두 만 5세 재원아 중 가구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자녀에게만 17만 2천원(공립유치원은 5만7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⁵⁾
- 표 V-5에서 보듯이 전체 우리나라 만 5세아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는 유치원이 25만명 어린이집이 18만명으로 전체 유아의 88.2%가 재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원아 수는 농어촌 지방의 경우 높지만 서울 등 대도시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80%에도 못 미치고 있음.

5) 보건복지부(2010). 보육사업안내.

<표 V-4>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에서 무상교육 조항 비교

법 조항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영유아보육법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
내용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3.24]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24]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 3. 24]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표 V-5> 만 5세 우리나라 인구수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아 재원 비율

	5세 총인구수 (2008) ⁶⁾	유치원 재원아 ⁷⁾	어린이집 재원아 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만 5세아	총인구수 대비 재원아 비율(%)
전국(A)	489,413	251,067	180,360	431,427	88.2
서울(B)	85,871	35,010 ⁹⁾	30,184	65,194	75.9

자료: 통계청(2007). 장래인구추계.
 한국교육개발원(2009). 2009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 보육통계.

6) 통계청(2007). 장래인구추계.
 7) 한국교육개발원(2009). 2009 교육통계연보(<http://std.chedi.re.kr/>).
 8)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 보육통계.
 9) 서울특별시교육청(2009). 서울교육통계연보(<http://statistics.sen.go.kr/>).

<표 V-6> 설립유형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아 수

단위: 명

구 분		설립주체별							
		총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 외	민간 개인			
어린이집	전국 계	1,091,287	122,919	114,629	53,281	597,992	1,389	184,598	16,479
	만5세	180,360	26,703	24,731	10,822	113,083	328	2,364	2,329
유치원	전국 계	537,361	125,305(231)		411,825				
	만5세	251,067	77,734(106)		173,22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2009). 2009 교육통계연보.

- 따라서 무상교육, 무상보육의 범조항의 내용처럼,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전면적으로 단기, 중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만 5세 재원아 중 전체 유아 모두가 무상보육 및 교육을 지원받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한 단계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필요 있음.
- 2010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만 5세 무상보육비를 받는 유아는 12만 2천명으로 위의 표 V-6의 보육아동수와 비교했을 때 약 6만명에 달하는 유아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 2012년부터 년도별로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가구소득하위100% 즉 평균소득수준은 물론 상위 100%까지 전체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비, 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보육료 확대 지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그 필요성과 추계를 제시하고 있음.¹⁰⁾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재원율을 100%로 높임.
- 현행 만 5세아에게 주어지는 유아교육비, 무상보육료인 17만 2천원을 현실화하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비용을 현실화하여 지원함.
-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모두 연장제와 반일제를 실시하고 있음.

10) 김현숙, 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 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료와 교육비는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지원액¹¹⁾을 달리하되 표 V-3-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반일제(연장제)와 종일제 기준으로 두 기관에게 모두 동일한 비용을 지원

<표 V-7> 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른 표준 교육비용의 1안과 2안

구분	표준교육 비용 ¹²⁾
중간시설인 95인 기준 반일제(연장제) 1안	230,000원
중간시설인 95인 기준 반일제(연장제) 2안	320,000원
중간시설인 95인 기준 종일제 1안	280,000원
중간시설인 95인 기준 종일제 2안	370,000원

□ 비용지원의 세부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안으로 구성가능¹³⁾

- 연장제(5시간 교육)에 대한 기본교육비를 책정하여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유지
 - 소득하위 70%를 넘어서서 전 아동에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기초학년 도입방안에서 검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본 시나리오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
- 제1안은 연장제 교육비는 230,000원, 종일제의 경우에는 50,0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설정
 - 이는 보육시설 95인기준 종일제 표준보육비용과도 유사하며 유치원의 종일제 기준 50,000원 추가와도 일치하여 두 시설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가능
- 제2안은 표준교육비용에 기초하여 5시간 기초교육비로 320,000원, 종일제의 경우에는 50,000원을 추가하여 370,000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 제3안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현실적 투입비용을 반영하여 5시간 기본교육비용으로 보육시설은 230,000원, 유치원은 320,000원을 설정하는 방안

11) 김현숙(2007). 연령별 적정학급 규모를 통한 유아의무교육대비 표준교육비 산정연구. 교육인적자원부

12) 김현숙(2007). 위의 연구.

13) 자세한 내용은 VIII장 예산추계의 내용에 수록되어 있음.

- 제4안은 정부의 재정부담수준을 고려하여 5시간 기본교육비로 현 무상보육비인 172,000원을 두 기관에 공히 설정하고 종일제의 경우 50,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나.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목표, 하위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그대로 유지함.

<표 V-8>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인간상과 목표의 비교

영역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가. 자율적인 사람 나. 창의적인 사람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라. 민주적인 사람 마.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목표	건강 생활	기본 생활 •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신체 운동 •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사회 생활	사회 관계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표현 생활	예술 경험 •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언어 생활	의사소통 •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 생활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탐구 생활	자연 탐구 •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 및 내용부분에서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 만 5세에게 주어지는 교육과 보육의 문서화된 내용은 유사

□ 즉, 구체적인 교육과 보육의 하위영역별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V-9>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 하위영역별 내용 비교

내용			
유치원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제 7차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건강생활	신체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몸 인식하기 <----> · 나의 몸 움직이기 <----> ·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하기 <----> · 안전하게 생활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과 신체인식 · 신체활동 참여/신체조절과 기본운동 · (기본생활) · 건강한 생활 · (기본생활) · 안전한 생활
사회생활	사회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알고 사랑하기 <----> · 가족과 함께 하기 <----> · 이웃과 더불어 살기 <----> · 우리 생활 돌아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존중/ 정서인식과 조절 ·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 · 사회적 지식
표현생활	예술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 찾아보기 <----> · 예술적 표현 즐기기 <----> · 감상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미적 탐색 · 예술적 표현 · 예술 감상
언어생활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기 <----> · 말하기 <----> · 읽기 <----> · 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탐구생활	자연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하는 태도 가지기 <----> · 과학적 기초능력 기르기 <----> · 수학적 감각 기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구적 태도 · 과학적 탐구 · 수학적 탐구
	기본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생활 · 안전한 생활 · 바른 생활

□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하위내용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이 많으며 표준보육과정의 경우 기본생활영역이 강조가 되고 있고 신체운동에서 신체활동의 참여와 사회관계에서 정서인식과 조절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되어 있음.

□ 그러나 수준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유치원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만 3~5세 세 개 연령층의 교육내용 수준 구분이 I 과 II수준으로 되어 있음. 만 5세의 경우 이 중 I 수준을 택하였을 때, 어느 내용은 만 5세에게 쉬운 부분일 수 있음. 반면 표준보육과정의 경우에는 만 3~5세가 I, II, III수준으

로 구분되어 있어서 만 5세의 내용을 III수준으로 택하였을 경우, 유치원교육과정에 비해 더 만 5세에게 적합한 내용이 될 것임.

- 1안: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그대로 각 기관에서 사용
 - 유치원교육과정의 수준별 내용인 II수준이 만 5세에게 적합한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표준보육과정의 경우 수준별 내용 중 III수준을 그대로 사용하면 됨.
- 2안: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수준별 내용을 비교하여 부분적 보완

다. 만 5세 무상교육과 보육을 시행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반 교실의 경우, 교사의 자격을 4년제 출신의 유치원 2급 정교사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담당하는 안

- 유아교육에서 발표한 선진화방향¹⁴⁾에 따르면 유치원교사를 점차적으로 상향하여 4년제 양성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사출신으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
-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의 경우, 동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있음.
-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장단기적 계획을 마련하여 보육교사를 4년제 양성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사출신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
 - 최근 미국에서도 저소득 유아를 위한 연방정부 서비스인 Head Start의 경우 1년제 CDC 과정의 교사, 2년제, 4년제 출신 교사로 다양하였으나 New York 시에서는 2008년에 모두 4년제 교사로 학력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하였고, 다른 주들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음.
 - 1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4년제 전공 관련 학사 출신의 자격증(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만 5세반을 맡도록 하는 방안
 - 2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2년제 이상 대학의 전문학사 출신자가 자격증

14) 유아교육지원과(2009). 유아교육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을 지니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만 5세반을 맡도록 함. 단,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어 4년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

라. 교사의 인건비 지원(호봉이나 수당 등)이나 근무시간 등은 두 기관에서 만 5세반 운영의 경우 동일하게 유지

-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호봉지급표에서 2010년도 기준으로 호봉과 월액수를 보았을 때 월 지급액에 있어서는 보육교사가 높음.
- 그러나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이외에 수당이 한두가지 항목밖에 없으나,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직수당 25만원, 담임수당 11만원 외에 교통비, 식비, 보조 수당 등 수당항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많음. 따라서 총 수당을 포함하면 보육교사와의 차이가 매우 큼.

<표 V-10>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인건비 호봉 지급 기준 (2010년)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호봉	보수총액	월지급액	호봉	봉급액 (수당포함) ¹⁵⁾
1	16,220,770	1,351,730	6(2년제)	1,080,700 (2,540,267)
* 보육교사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1호봉부터 시작하나 유치원교사는 학력에 따라 6~9호봉부터 시작함			7(3년제)	1,112,100 (2,653,567)
			8(4년제)	1,143,600 (2,711,317)

자료: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http://children.seoul.go.kr/>)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http://likms.assembly.go.kr/law/jsp/>)

-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 간의 인건비를 동일한 조건하에 조정하되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노력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의 격차 역시 함께 줄여나가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15) 김현숙(2007). 연령별 적정학급 규모를 통한 유아의무교육대비 표준교육비 산정연구. 교육인적자원부. P.95.

- 사립 유치원의 지역별 교사 인건비는 대도시가 190만원, 중소읍면지역이 150만원(김현숙, 2007)로 제시하고 있어 국공립유치원 6호봉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큰 차이가 남.
-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8시간 근무조건을 유치원교사나 어린이집교사가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이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요구됨.
- 8시간 종일제로 운영될 경우에는 교실 내 유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최소 7시간으로 하고 한 시간은 내일의 계획을 작성하고 일지를 쓰며, 활동자료를 만들고, 유아들의 발달 및 성장에 대한 관찰기록이나, 부모와 유아에 관련된 면담을 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근무조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종일제의 경우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함.
- 스웨덴의 피르스콜라의 경우 10시간을 운영하는 종일제 시설이지만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 유지하도록 함. 교대근무, 시간차 근무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사의 근로기준 시간을 준수할 수 있음(한유미, 오연주, 권정윤, 강기숙, 백석인, 2005).
- 일본 도쿄에 위치한 緑丘保育園(현장방문)에서는 정규 보육교사 14명 외에도 시간제 교사 5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주임교사가 오전, 오후의 근무시간을 1달 주기로 작성하고 있었음. 탄력적 주기별 근무시간의 조절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맞추어 일찍 출근한 교사들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일찍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는 교사들은 오후 연장되는 보육 운영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
- 교사의 일과 중 점심시간 1시간의 휴식은 교실에서 나와서 교사 휴게실에서 휴식하며 점심과 관찰일지등을 기록하는 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사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교사 처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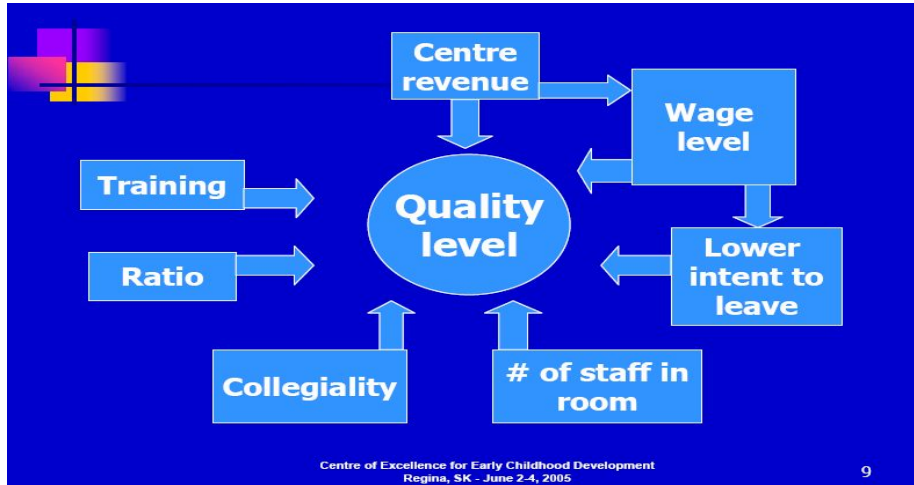
16) 김명순, 김혜금, 이윤선, 안현숙, 이나리, 김의정, 이수빈(2009).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보건복지부.

- 1안: 국공립 어린이집 호봉체제는 유치원 교사 호봉체제와 동일하게 학력 별로 차등을 두어야 하며, 유치원교사처럼 여러 수당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유치원의 평가제를 통해 질적 수준이 우수한 곳 상위 20%의 기관에 교사인건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상위 30%, 40% 50%의 기관에 교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함.
- 2안: 국공립 어린이집 호봉체제는 유치원 교사 호봉체제와 동일하게 학력 별로 차등을 두어야 하며, 유치원교사처럼 여러 수당을 포함하여야 함.
- 모든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였을 경우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교사들에게 지원함.

마. 학급당 만 5세 유아의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함

- 현행 유치원의 경우 교사나 학부모 모두 현재의 학급당 유아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¹⁷⁾ 그 이유로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높아서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고, 교실의 물리적 환경이 현재 유아를 수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응답
- Doherty(2005)는 유아들의 교육이나 보육의 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포함 요소들(그림 V-1 참조)을 제시하였는데, 교사 대 유아의 비율(ratio)과 교실 내에 있는 성인의 수(# of staff in room), 그리고 월급 수준, 동료 간의 협력관계(collegiality), 교사재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교육과 보육을 고려하여 만 5세 무상을 제시할 때 동일하게 조정되어야 할 부분임.

17) 김현숙 외 4인(2008). 연령별 적정학급규모를 통한 유아의무교육대비 표준교육비산정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그림 V-1] 교육과 보육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¹⁸⁾

- 미국 유아교육학회인 NAEYC에서는 교사 대 유아비율 중 5세는 최대 반정원이 20명일 때 교사 대 아동비율은 1:10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NAEYC, 2009, p. 29). 독일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1:12~15, 스웨덴은 5.4:1, 영국은 1:13로 제시되어 있음(OECD, 2006, Starting Strong, P. 145).
-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시행령(200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 195075) 제 2장, 제 16조에 의하면 유치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원아 수는 관할청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각 시도 교육청의 학급당 원아 수 기준은 다음 <표 V-11>과 같이 각 시도마다 매우 달라 만 5세의 경우에는 25~33명까지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OECD Starting Strong(p. 145)의 다른 나라와 같이 제시되고 표에서 한국의 유치원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20으로 제시되고 있음.

18) Doherty, G. (2005). Quality and predictors of quality in Canadian child care, Centre of Excellenc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http://www.excellence-earlychildhood.ca>

<표 V-11> 각 시도 교육청별 만 5세 학급당 유아 수

교육청	원 아 수						비고	
	3세	4세	5세	혼합반				종일반
서울	20	30	30	25			20	'06동일
부산	18	26	28	26			26	'06동일
대구	20	28	33	28			20	'06동일
인천	25~28	28~30	30~32	3. 4세 24~25	3. 4. 5세 20~24	4. 5세 28~30	20이내	교육장이 정함
광주	20	25	30	30			30	'06동일
대전	15	25	30	25			20	'06동일
울산	25	25	30	25			30	'06동일
경기	20	30	35	25			20	'06동일
강원	16	22	28	3~4세 14	4~5세 18	3~5세 16	15명 이내	
충북	20	29	29	29			25	'06동일
충남	15	20	25	20			20	'06동일
전북	18	23	28	3~4세 20	4~5세 25	3. 4. 5세 18	20	
전남	17	22	27	시 지역 : 27 읍 이하 지역 : 23			최저 5명	
경북	17	22	27	25				'06동일
경남	20	25	30	24			25	'06동일
제주	시 지역 : 30 농어촌 지역 : 28			28			2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유치원 현황.

- 보육의 경우에는 만 4세 이상 즉 만 5세반의 경우, 교사 1명당 20명의 유아수를 제시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0, 보육사업안내).
-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고, 두 기관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질적 수준 유지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임.
- 1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만 5세 아동들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동일하게 1:20으로 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함.
- 2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6시간미만 운영되는 만 5세반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2~3명의 초과 인원을 허용하되, 이 경우 교사 인건비나 기타 지원을 제한함.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1:20을 유지하도록 함.

3. 장점

- 현행의 기관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교사, 부모, 시설장, 만 5세 아동 모두에게 혼돈을 주지 않음.
- 만 5세아를 위한 별도의 시설(용지확보, 교실확보, 만 5세를 위한 실외놀이 시설 및 놀이터 추가 공간 확보) 및 교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없으며 이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 비용이 없음.
- 건물 등과 같은 물리적 비용에 소요될 추가 재정을 현재 만 5세 무상교육(보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현행 가구소득하위70% 이상 만 5세에게 지원됨으로써, 부모의 자녀교육(보육)비 지원 수급에 대한 체감 효과를 높이고 만5세의 수준 높은 발달적, 학습적, 양육적 기회를 확대하고, 이로 인해 국가 인재 양성을 조기부터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
- 만 5세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만 5세 전체 유아에게 확대됨으로써 현재 법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공교육, 공보육을 달성하게 됨.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나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던 유아들과, 두 기관에 다니지 않고 있는 만 5세 유아(대도시에서는 약 25%, 전국적으로 12%)들이 공교육, 공보육의 혜택을 받게 됨.
-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현실화된 교육비, 보육비용 수준으로 인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임.
- 현행의 만 5세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은 모두 최근인 2007년에 고시된 내용으로서 비교적 손쉽게 만 5세를 위한 내용을 뽑아 사용할 수 있어 새롭게 교육(보육)과정 개발에 투자비용이 최소화
- 현행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만 5세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의 안정화된 교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임.
-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타나는 획일화되고, 교과서 위주의 일

방적, 지시적인 집단 교육이 만 5세에게 부적합하므로 유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지나친 경쟁을 조장할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즉 놀이중심, 흥미중심의 발달에 적합한 방법을 통하여 미래 인재에 필요한 특성인 창의성, 독자성과 주도성 학습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음.

- 어린 유아들에게 기관을 자주 옮기는 것은 경험의 연계성 유지나 친근한 환경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음. 현행 기관을 다니다가 만 5세로 진급하였을 경우 기관을 바꾸지 않고 친근한 환경에서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유아들의 발달에 더 적합함.
- 각 기관의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만 2세와 3세의 연계, 만 3세와 4세, 만 4세와 5세의 연계가 이루어져 유아에게는 경험의 단절이 적고 교사는 발달적으로 연결된 지도가 용이함.
- 새로운 제도에 따른 교사 채용과 증원이 없이 현재의 교사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당장 실행 가능함. 교사 채용과 증원, 새로운 자격제도 개발 등에 투입될 비용을 현행 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에 투입함으로써 그 효과가 직접 만 5세에게 나타나고 간접적으로 부모들의 만족도 향상될 것임.
- 몇 안 되는 나라 중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시도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만 5세는 초등 1학년이라는 용어보다 'Reception Class' 라고 지칭하며 놀이중심, 개별차 강조, 융통성 있는 학급 운영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가 총 20만명임. 만 5세아를 각 기관에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교사들의 실직 대란이 없고 교사 양성대학의 졸업생들의 일자리 축소가 일어나지 않음.
- 현행의 법적 규정을 수정하지 않아도 원하는 부모의 경우 만 5세 자녀를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 5세를 현행 체제에 두는 것에 대한 부모 반발이 없음.
-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과서 개발, 교사용 자료집 개발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없고, 만약 개발을 한다면 겪게 될 개발진의 구성(초등교육계, 유아교육계, 보육계)에 따른 갈등 심화 현상이 없음.

4. 단점

- 만 5세 무상교육비, 무상보육료 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이 추후 몇 년간 크게 증가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논의가 유보됨.
- 유치원과 보육시설 내 만 5세반의 경우 교사 학력 수준 차이에 따른 내부 갈등이 교사학력이 모두 일정해 질 때까지 유발될 수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중 국공립과 사립(민간)시설간의 교사 호봉, 수당, 근무조건 등이 현행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교사들의 국공립에 취직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반면 민간(사립)시설에서는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해 질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
- 교사들의 연수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 동일한 국가 무상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안전사고나 위생, 영양 등의 문제가 사회에 자주 보고될 경우, 부모들이 느끼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아질 것임. 따라서 일정 수준의 질을 유지하도록 기관을 평가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만 지원이 확대될 경우 영어학원을 비롯한 학원계의 반발 예상

5. 소결

- 본 장에서 제시한 각 시나리오의 내용에 따라 정부의 지원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학급당 아동수가 동일하고, 교사의 교육수준이 양 기관에서 동일하며 교사의 호봉이나 급여가 일치하게 될 경우 두 기관에 동일한 비용기준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관련 시나리오 중 제 2안인 표준교육비용에 기초하여 서비스 시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 만약 두 기관의 아동 수, 운영형태, 교사의 자격수준 등에 여전히 현재의 차이가 지속될 경우에는 표준보육비용과 표준교육비용에 따라 차이를 두어 두 기관에 대한 지원도 차등화되어야 함.
- 단, 서비스 시간별로 종일제와 연장제의 비용지원 수준은 두 기관 중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서비스 시간에 따른 비용차이는 실현하는 게 필요
- 만 5세에 대한 무상보육지원을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

VI. 조기진급·졸업 활성화(학제탄력화) 방안

1. 취지 및 필요성

- 본 연구에서 만 5세 학제관련 대안으로 제시한 초등학교 편입방안, 기초학년제 도입방안이 도입되는 경우 조기진급·졸업 학생,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이 활발히 모색될 필요
- 일괄 입학이나 만 5세아 단계적 입학의 경우 기존 만 6세아와 혼합 학급에서 학습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신체 및 인지, 정서 발달 측면에서 학습 부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수 재능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동일 학년 아동보다 지적, 정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도 있음.
 - 특히 아동에 따라서는 교과별 학습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교과 전반에 걸쳐 학습 능력이 우수하거나 반대로 뒤쳐지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조기 진급을 통해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학습 부진 아동은 학습 부진 요인 확인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배려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법적으로 조기 진급이나 졸업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진급이나 졸업 대상이 되는 아동이 많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학령에 따른 순차적 진급(법정 수업일수 이수에 따른 진급 및 졸업), 대상 아동에 적합한 프로그램 부재, 학력(學力)보다는 학력(學歷)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반의 문제이기도 함.
 - 이에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조기 진급이나 진급 유예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실효성이 높은 종합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조기 진급 및 졸업, 진급 유예 방식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프로그램) 측면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진급할 수 있도록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일 학년 내 교과 학습 전반이 부진하거나 특정 교과 및 영역에 있어 뒤쳐지는 아동의 경우에는 진급을 유예하거나 실질적인 보충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학습 능력에 따른 처방과 학력 인정 방안, 이에 따른 행정적, 법규적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그램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현행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아동의 능력과 발달상황에 따라 교육제도에 탄력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나아가 학제탄력화 제도는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

□ 학생 개인의 재능 발굴과 성취향상 지원

- 국가는 발달심리학이론에 의거하여 가능한 한 모든 학습자의 재능을 개발하고 능력과 적성 그리고 학습속도에 맞는 교육 기회의 제공 필요
- 속진을 통하여 수업연한을 단축시킴으로써 가장 창의적인 나이에 전문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생애 경력개발과 성취 수준 향상
- 학생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어려서부터 집중적이며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재능의 조기 발굴 및 자아실현 지원

□ 학제탄력화를 통한 교육제도선진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

- 학제탄력화로 개인차에 대응하는 선진적 학제 정착
- 고급 두뇌들로 하여금 창조의 절정기인 20~30대에 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
- 지식기반 사회의 본격 도래에 따른 고급 두뇌의 수요 증가와 인재 유출 방지에 대응

- 정책환경의 복잡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 이슈 해결 지원
 - 축약적 산업화에 뒤이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가속적 진입과정에서 극심한 가치 다원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 해결력 제고 필요
 -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에 교육부문의 적극대응 필요
 -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하락을 입직연령 하향 조치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
 - 지금까지 다양한 입직연령 하향 방안(수학연한 단축, 군복무기간 단축, 실업계고 지원강화 등)이 제안되었으나(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부작용이 우려되어 실행이 어려웠지만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활성화는 연착륙이 가능한 방안임.

2. 운영현황

가. 현행 법 제도 운영

- 1995년도부터 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년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미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기졸업을 한 학생은 전체적으로 그 수가 늘고 있으나 이는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조기 입학하게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조기졸업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인해 늘어난 수치일 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오히려 그 수가 점차 줄고 있음.

<표 VI-1> 조기졸업자 대상 인원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초등학교	6	1	7	0	8	56	9	3
중학교	12	0	16	25	27	23	23	54
고등학교	363	222	885	819	995	1,190	1,243	1,366
계	381	223	908	844	1,030	1,269	1,275	1,423

- 2004년과 2005년에 고등학교 조기졸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대학에서 조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시작했기 때문
 - 2004년 이후부터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도 대학에서 조기입학 허가를 받으면 조기졸업을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

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생 현황

1) 조기진급

<표 VI-2> 조기진급 학생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9학년도	24	0	36	60
2008학년도	40	1	0	41
2007학년도	52	1	4	57
2006학년도	17	1	12	30
2005학년도	24	1	17	4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 조기졸업

<표 VI-3> 조기졸업 학생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9학년도	3	54	1,366	1,423
2008학년도	9	23	1,243	1,275
2007학년도	56	23	1,190	1,269
2006학년도	8	27	995	1,030
2005학년도	0	25	819	844

주: 일반계 고등학교 조기 졸업자 현황 : ('08년) 66명, ('07년) 149명, ('06년)53명.

다. 영재교육과 속진제도와와의 연계 운영

1) 미취학 또는 초등저학년 단계

-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등 4학년부터 영재교육 시작하고 있음.
-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대상의 영재교육은 아직 미미하고 실험적임.

2)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

- 2006년 43,025명의 학생들이 각 영재기관에서 교육받고 있음.
- 진로시스템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해외에서는 초등단계에서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후 점차 대상을 좁혀가는 반면, 한국은 그 반대이므로 초등 영재교육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대학 진학

- KAIST의 80%는 과학고 출신. 2004년 과학고 고2 조기졸업자 비율은 전체 입학생의 72%, 일반고까지 확대 시 82%차지

4) 영재교육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 연계 운영

- 현재 한국의 영재교육은 심화교육 위주이므로 속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방안: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속진을 독려하는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학교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30,000여명을 비롯하여 과학고등학교 3,000여명 및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현재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등에서도 영재교육을 시작하고 있음(표 VI-4 참고).

<표 VI-4> 국내영재교육의 현황

부처	기관 수	학생 수(명)	비고	
과학기술부(과학영재교육원)	25	5,945	'06 입학생 기준	
교육인적자원부	영재학급	327	11,226	'05 교육인적자원부
	영재교육원	197	20,036	
	과학고	18	3,340	
	과학영재학교	1	428	
문화관광부	1	400	'05 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정통부	1	250	'06 ICU 영재교육원	
특허청	1	1,400	'06 발명교육센터(연수생)	
계	18	43,025		

자료: 각 기관별 담당자(2006.9).

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유형

1) 학년별 속진 = 월반

- 학년별 속진의 유형
 - 조기입학: 초등학교 조기입학, 상급학교 조기입학
 - 조기진급: 이론적으로 한 개 학년 이상 넘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한 개 학년만 뛰어넘게 허용
 - 조기졸업: 규정된 교육과정 조기에 마칠 경우 그 학력 인정되면 1, 2년 일찍 졸업

2) 교과별 속진

○ 교과별 속진의 유형

- 능력 혼합반: 특정 교과시간에만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
- 조별지도: 한 학급 내 특정 교과에서 우수한 학생 선정하여 조 편성 후 특정 교과 시간에만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 이수하도록 함
- 동학년 특별반: 같은 학년에 소속된 학생 들 중 특정 교과 우수학생들을 모아 특별반 운영. 차상급 학년 교육과정 이수
- 혼합학년 특별반: 학업 성취 수준 또는 능력 수준이 비슷한 여러 학년 학생들을 모아 학급을 만들어 특별반 운영. 대학과 같은 체제로 필수 교과, 선택 교과가 있고 각 학생들은 지도 교사와 협의 하에 수강할 과목을 선정. 대학 과정에서 각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하는 것과 비슷한 체제

3) 대학과정 조기이수

- 우수한 학생에게 이중 등록에 의해 대학교 과목을 수강하면 그만큼 대학교 과정을 조기이수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
- 사사제도 : 특정 영역 전문가가 우수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
- 이중학점 취득 허가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정규 교과 이외의 대학교과를 수강하기 위해 재학하는 학교와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여 대학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 교과별 속진에서는 고등학생의 대학교과과정 조기이수를 가장 많이 함.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과 동시에 고등학교의 졸업이수 학점이 됨. 고등학교에 대학 교과 이수자가 많을 경우 교수가 고등학교로 출강하기도 함.

4) 기본 방향의 설정

가) 대상자 선정

- 학업성적, 잠재능력, 성숙한 사회/정서성 모두에 중점

나) 속진 실시 교과 선정

- 학교 급이 낮을수록 전 과목, 학교 급이 높을수록 특정 교과에서 실시

다) 물질/인적 자원의 구비도 평가

- 학교나 지역 사회의 설비 상태, 교육프로그램, 자료, 교구의 구비 정도, 교사의 수 및 훈련 정도, 판별 도구의 구비 정도

라) 속진제 유형 선정

- 단계별로 자학학습 → 교사개인지도 → 특별반 이수압축 유형으로 나감.

마) 판별 방법 및 절차 선정

- 도구 및 기준은 학교 급별로 달리 정함.
- 표준화되고 타당도와 신뢰도 지수가 높은 최신 검사를 사용
- 다양한 자료 수집하여 종합적 판별
- 신뢰성 확보위해 교직원 위원회의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 둬.

3. 국제동향

가. 해외 속진사례

1) 대만

가) 속진제 실시 개관

- 대만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속진제의 방식은 크게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이 6가지로 나뉜.

- (1)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6세로 되어 있어 우수한 어린이가 조기에 취학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 조기 입학제
- (2)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년별로 속진하는 방식
- (3) 교과별로 속진하는 방식
- (4) 이수과정을 압축하여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연한 단축 방식
- (5) 조기 진학방식
- (6) 정규 수업 연한 동안 공부하면서 상급학교 과정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는 선수과정 이수 방식

나) 국민소학교의 속진제

- 국민 교육법에서 실시 근거와 범위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내용을 보면, “국민소학교의 특수 재능아에 대해 그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단축 연한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수업 연한 단축 방식은 ‘국민 소학 특수 재능아의 수업 연한 단축령’에서 크게 4가지(학과별 속진 방식, 각과 평균 속진 방식, 한 학년 속진 방식, 조기 졸업을 통한 속진 방식)로 구분함.

(1) 학과별 속진 방식

- 학생의 개인차에 따라 일부 교과에서만 특출한 성취 수준을 나타내어 한 학년을 건너 뛴 교재를 소화해낼 수 있을 때 채용하는 방식
- 이러한 교과의 시간수가 주당 전체 시간의 1/2을 초과하며 국어, 수학,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경우 이 학생의 학적은 상급 학년에 속하도록 함.
- 이러한 학생이 6학년에서도 모든 교과를 소화해내지 못할 때는 계속하여 나머지 학과를 이수해야만 졸업 가능함. 즉, 학과별로 속진하여 5년내에 다 마치면 5년만에 졸업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일반 학생과 같이 6년을 재학해야 함.

(2) 각과 평균 속진 방식

- 6년간의 과정을 속진에 의해 5년간에 마치도록 하는 방식.
- 구체적인 방식은 1학년 수료 후 속진식, 2학년 수료 후 속진식, 3학년 수료 후 속진식의 세 가지로 구분됨.
- 1학년 수료 후 속진식은 1학년 과정을 관찰기로 운영하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5개년의 교육과정을 4개년으로 재구성하여 이수하는 방식임. 2, 3학년 수료 후 속진식도 동일함.

(3) 년별 속진 방식

- 특수 재능 학생의 모든 학과 성취 수준이 일개 학년 이상을 넘어선 때 한 학년을 건너뛰도록 하는 방식. 이 경우 총 4차례의 속진 기회가 있음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

에서 6학년으로).

- 속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2학년말에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은 1학년말, 3학년말, 4학년말의 순위로 실시함을 권장함.

(4) 조기 졸업을 통한 속진 방식

- 5학년을 마칠 때 모든 학과의 학업 성취도가 6학년 수준을 넘어선다고 인정되어 6학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민 중학교로 진학하는 방식
- 한편 이상의 여러 방식으로 속진한 학생이 적응을 못할 경우 학생 개인 사례별로 토론을 거쳐 추수지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도 개선되기 어려운 때는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정상 학년으로 회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함.
- 속진 대상자인 특수 재능 학생이 지녀야 할 필수 조건, 이들의 판정 절차와 자료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5) 필수 조건(4가지)

- 단체 지능 검사의 결과가 상위 5% 이내인 자
- 개인 지능검사의 결과가 IQ 140이상이거나 또는 평균점으로부터 표준편차가 정적으로 2.5를 초과
- 심신 발달과 건강 상황이 양호한 자
-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

(6) 판정 절차(초심과 재심)

- 초심에서는 학교장이 전문가와 교내 유관 교사를 선임하여 판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여러 내용을 종합하여 판별함.
(구체적으로 ① 교사의 관찰과 추천, ② 학부모의 관찰과 추천, ③ 학업 성취도, ④ 집단 지능 검사 결과, ⑤ 개인 지능 검사 결과, ⑥ 학생 심신 발달 평가)
- 이들 내용을 토대로 기준을 통과한 특수 재능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학교 당국이 판정 자료와 함께 직할시나 현, 시 정부 교육국에 재심을 요청함.
- 이어 재심에서는 현, 시정부 교육국이 관련 학자 전문가와 교육 행정가

등으로 관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초심 자료를 심사함.

다) 중등학교의 속진제

□ ‘고급 중학법’ 제 8조에서는 “특수 재능 학생에 대해 개별지도를 강화하며 특히 우수한 성취도를 보인 학과의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급 중학 시행령’ 제 22조에서도 이를 구체화하여 수업 연한의 단축 뿐 아니라 별도의 심오한 교육과정까지도 제공하도록 규정함.

(1) 속진 방식

- 국민소학과 같이 원칙적으로 조기 입학은 제외한 5가지 방식(학년별 속진, 학과별 속진, 이수과정 압축, 조기 진학, 선수과정 이수의 방식)을 적용하나, 주로 조기 진학 방식을 통해 속진의 효과를 얻고 있음.
- 조기 진학이 이루어지는 부문을 보면 80년대 초반에 수학과 자연과학 부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활성화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과정 이수 방식을 개방 체제인 학점제로 바꿈으로써 일반 능력 우수자도 충분히 조기 진학이 가능하도록 실험하고 있는 중임. 수학, 자연학과 특수 재능 선발은 2차(초심, 재심)에 걸쳐 이루어짐.

(2) 판정방법

- 초심은 두 가지 자료 즉, 교과 지도 교사와 담임교사의 평상시 관찰과 평가, 학생의 성취도인데, 성취도는 관련 학과의 성적이 필히 상위 1% 이내이어야 하며, 그 수준도 1개 학년을 뛰어넘어야 함을 요구함. 이외 구체적, 전국적인 과학 경시대회나 전람회 등에서 매우 우수함을 인정받은 경우 등도 초심의 대상이 됨.
- 재심은 교육부가 학과 전문가, 심리학자, 교육학자와 교육 행정가로 판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함. 이들 중 중, 고 2학년 학생은 다시 지능 및 고등 사고 능력 검사를 거쳐 소정의 수준에 도달하면 곧바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수준을 인정받게 되어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에 응시할 수 있음.
- 1998년에 들어서 특수 재능 학생의 조기 진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학력 검증제도를 마련함. ‘초, 중등학교 특수 재능 학생 조기 진학

에 관한 학력 검정 실시 요점'에 의하면, 조기 진학자의 학력 감정은 우수한 지능, 높은 학업 성취도, 양호한 심신 발달과 정서를 요건으로 함. 또한, 고등학교 단계 교육과정 이수방식을 학년, 학점제로 전환함으로써, 능력 있는 학생들은 2년에 고급 중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속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2) 중국

가) 특수 재능의 판별 기준, 방법, 절차

<표 VI-5> 특수재능 판별 방법

	기준	방법
인지 특성	사고력, 관찰력, 기억력	인지적 실험, 지능검사
창의적 특성	창의적 사고, 창의적 상상,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의 검사
학습 능력	지식 숙달의 속도, 스타일, 깊이, 확고한 정도	학습능력과 성취 검사, 학습과정의 관찰 분석
특수 재능	수학, 외국어, 지도력, 음악, 미술	특수재능에 관한 검사, 산출물 평가(숙제)
인성 특성	흥미, 관심, 지적 호기심, 자신감, 독립심	질문지, 관찰, 교육실험, 면접

□ 특수 재능의 판별은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 (1) 광범위한 조사로서 특수 재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하는 학생이나 부모는 등록 가능함. 등록 시 학생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출함.
- (2) 일차 검사로서 주요 교과목에 관한 지식과 능력 또는 지능을 측정함.
- (3) 이차 검사로서 일반 지적 학문적 재능아를 판별하기 위해 중국 초상 아동 연구 협의회가 개발한 아동의 인지 능력 검사를 실시함. 일반 아동보다 2년 정도 앞서거나, 평균보다 정적으로 표준편차 2이상의 점수를 받거나, 상위 5%이내에 드는 아동은 특수 재능아로 판별함.
- (4) 추후 검사로서 3단계까지 합격한 아동의 인성적 특성에 관하여 이전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삼아 면접함.

- (5)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 후 관찰 단계로서 특수 재능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찰 평가를 수행함.

나) 속진 방법

□ 속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1) 월반과 같은 것으로 특수 재능 판별 검사에서 합격한 아동은 국민학교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 및 상급학년으로의 조기진학이 허용됨.
- (2) 특별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압축하여 이수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재능을 계발하는 학습 활동을 전개함.

3) 이스라엘

가) 특수 재능아의 정의와 판별

- 특수 재능아 판별 검사는 국립 행동 과학 연구소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문교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쫘뜨(Szold) 연구소가 실시함.
- 쫘뜨 연구소는 학교에서 상위 15% 내의 높은 성적을 나타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이 학생들은 자기들이 속한 학교에서 치른 예비 검사를 근거로 추천됨. 검사 결과 상위 1~3%의 높은 수행을 보인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배치됨.

나) 속진 제도

□ 이스라엘의 특수 재능 교육 체제는 심화 학습 프로그램이 가장 주를 이루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속진 방법을 적용함. 단, 속진제는 이스라엘에서 실시하는 아래 11가지 유형 중 하나에 불과함.

- (1) 기숙사 시설이 있는 전일제 특수학교, (2) 기숙사 시설이 없는 전일제 특수학교, (3) 전일제 직업학교, (4) 전일제 특별학급, (5) 시간제 특별 학급, (6) 일반 학급 내의 특수 재능아 지도, (7)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동시 등록, (8) 일반 지적 능력 검사에 합격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이나 대학교에서의 방과 후 학습, (9) 특수 학문 적성 검사를 합격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이나 대학교에서의 방과 후 학습, (10) 사립의 방과 후 학습

나. 각국의 영재교육

1) 미국

- 연방정부의 영재교육법으로 주정부가 중심이 되어 주관,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약 1~15% 학생 대상)이 활성화되어있음. 전체 50개주 영재교육정책 실천중이며 그중 32개가 의무화, 10개 주는 특수교육의 일부 실시하고 있음.
- 교육부에서는 국립영재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면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장려
-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형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학교로서 영재들을 위한 정규학교 형태인 15개 수학과학 고등학교를 주립으로 운영하지만, 주로 k-12 공립학교 내에서 다양성을 존중한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영재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2) 영국

- 2000년 사회통합을 위한 성격강한 '교육기준예산법령'을 제정하여 2001년 공립학교에서 5~10%학생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모든 초, 중등학교에 영재교육전문 지도교사를 배치하는 등 학교체제 안에서의 영재교육 강화하고 있음. 전국 1000개 중학교와 400개의 초등학교 및 26개 기관에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02년부터 국립영재교육원을 설립하여 회원에게는 여름학교, e-learning제공, 학습네트워크를 제공하였고, 교사, 수석교사, 행정원이 서로 협력하여 영재학생들 교육 시 필요한 질 표준을 만들어 제공.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도시 내 수월성 프로그램'과 현장에서의 협력과 혁신적 e-learning기반을 가진 33개의 런던지부를 아우르는 일관된 지역적 접근에 근거하는 '런던 영재교육'의 정책을 펴고 있음.

3) 호주

- 미국과 유사하게 주정부가 주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주별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영재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음.
- 호주의 영재교육기관은 크게 상위 약 15%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기관 영재교육'과 가장 우수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영재교육'이 있음.
- 2004년 이후로 정부의 지원이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영재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일반 학교 내에 영재반을 설치하여 일반교육과 영재교육을 연계하여 받게 하고 학생의 필요와 수준에 맞게 조기입학이나 조기진학 등의 속진이나 학급 안에서 능력별 집단편성, 차별화된 교육과정 등의 제공을 통해 학생에 맞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4) 싱가포르

- 교육부에 영재교육 전담과를 설치하고 상위 1%의 학생 대상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영재교육대상자를 초등학교 3학년 말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수리, 공간지각 능력검사를 실시하여 그 중 상위 1%의 학생을 선발하여 일반학교 내의 상설 영재학급 형태로 제공. 또한 이들은 교과 및 교육활동은 일반 학생과 분리되어 따로 교육을 받으나 나머지 교과목은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음.
- 영재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발하여 4학년부터 받고, 이들은 중등과정으로 올라갈 때 별도의 선발시험을 치르지 않고 성취도나 학습태도, 졸업시험을 토대로 중학교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지 결정됨.

5) 일본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평등주의 정신에 억눌려 영재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으나,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과학기술과 이과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퍼사이언스고등학교를 일본 전역에 26개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기술 분야의 발전 및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10개교를 지정하

여 IT인재 육성프로젝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재교육을 시작하고 실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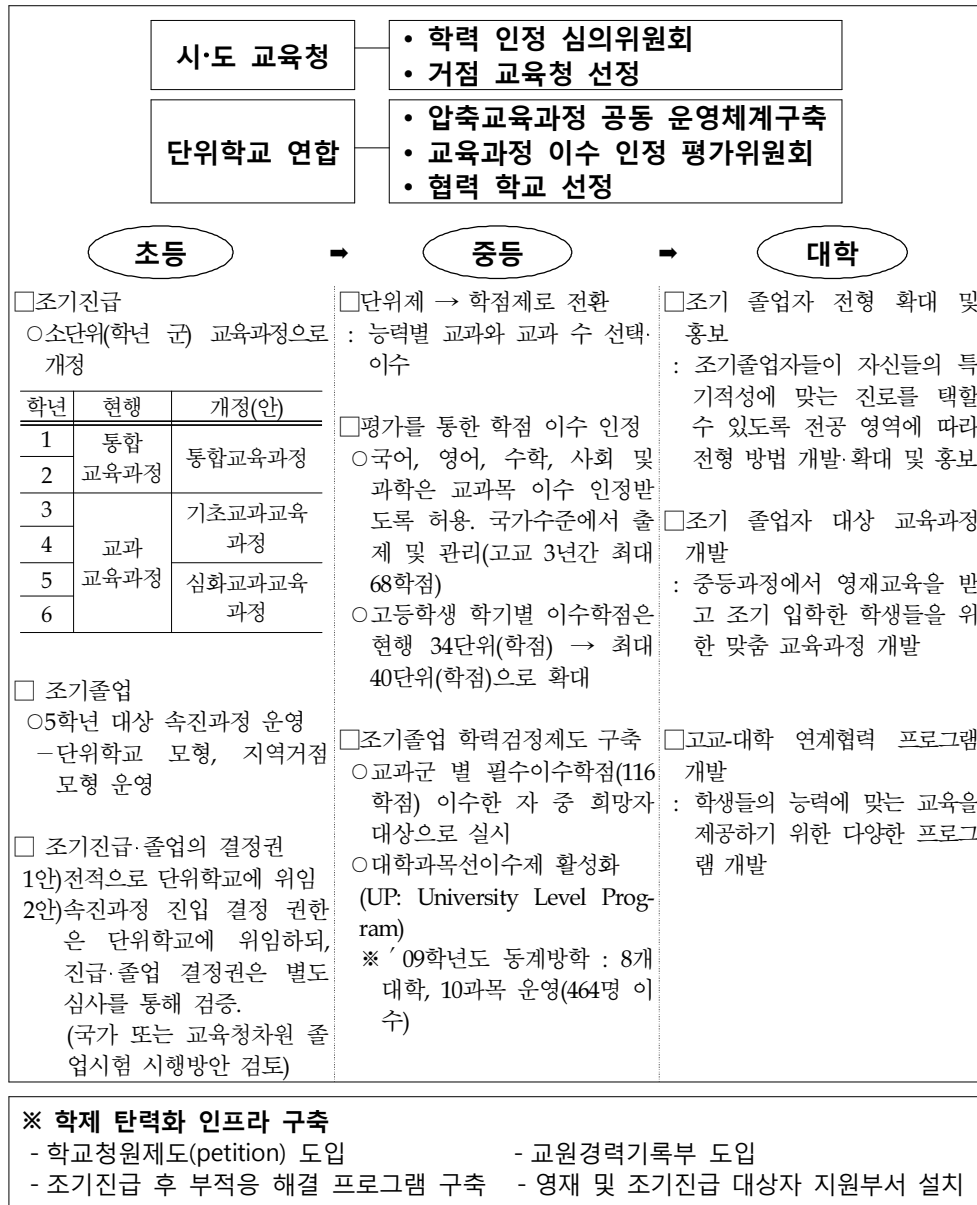
6) 독일

- 독일은 일반 교육제도가 영재교육이라 할 만큼 교육내용이 체계적이고 상급학교와의 연계체제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 4년제인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전학생 대상으로 수학, 과학 영재를 위한 심화과정을 실시한 후, 졸업생 중 최상위에 속하는 25%정도가 김나지움(독일의 전통적 중등기관)에, 중상위권 25%는 레알슐레(실과학교)에, 중하위권 40%는 하우스프트슐레와 게잡트슐레에 입학. 김나지움 입학생 중 2, 30%는 낙제가 되며, 나머지 학생 중 졸업시험인 동시에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아비투어에 합격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은 90%정도임.

7) 러시아

- 영재교육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며 과학영재를 위한 특수학교는 국무총리령에 의해 설립, 운영되며 '과학교육부' 산하에 두어 별도로 관리함.
- 영재교육기관으로 일반학교와 특별학교, 그리고 통신 영재교육학교와 서클활동으로 나누어짐.
- 영재교육은 전통적으로 속진과 심화를 기본교육방법으로 하며 특별 교과내용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조절하고 심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4. 정책대안 시나리오



[그림 VI-1] 조기진급(졸업) 연계 시스템

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방안

기준 및 절차

-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도구개발과 초심·재심판별위원회 설치
- 학부모 신청과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1차 판별함. 1차 판별에서 합격한 학생은 재심 판별위원회가 주요 교과영역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여 최종 판별함.
- 다양한 영역에서의 조기진급(졸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조기진급(졸업) 후의 진로를 제시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학부모와 학생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함.

학교청원제도(petition) 도입

-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학습의 수준, 방식, 여건 등이 맞지 않는 경우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야 함.
- 연중 수시로 정규교육과정이 잘 맞지 않는 속진 대상 학생과 학부모가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조기진급(졸업) 검정제도 구축

- 평가를 통한 학점 인정(중등)과 조기졸업 학력검정 제도를 구축하여 조기진급(졸업) 여부를 결정함.

나. 압축교육과정 운영

- 시·도 교육청의 학력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조기진급(졸업) 대상에 대한 다양한 압축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함.
- 학년(군)별 조기진급 대상자에 대한 교과(군)별 속진 프로그램(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각 학교나 거점 교육청에 지원하여야 함.

- 교과(군)별 속진 프로그램 편성·운영을 위해 능력 혼합반, 조별 편성반, 동학년 특별반, 혼합학년 특별반 등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만5세아 초등학교 편입이나 K-grade 설정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조기진급·졸업 학생,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시·도교육청의 학력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조기 진급(졸업) 대상에 대한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학년(군)별 조기 진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들 대상에 대한 교과(군)별 속진 프로그램(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 교과(군)별 속진 프로그램 편성·운영을 위해 능력 혼합반, 조별 편성반, 동학년 특별반, 혼합학년 특별반 등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능력 혼합반: 특정 교과 시간에만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임.
 - 조별 편성반: 한 학급 내 특정 교과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를 편성한 후 특정 교과 시간에만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임.
 - 동학년 특별반: 동일 학년에 소속된 학생들 중 특정 교과에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 특별반을 구성하여 차상급 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임.
 - 혼합학년 특별반: 학업 성취 수준 또는 능력 수준이 비슷한 여러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을 편성하여 특별반을 운영하는 것임.
 - － 시·도교육청은 학년(군)별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조기 진급 대상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년(군) 및 교과(군)별 압축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음.
- 만 5, 6세아 혼합반 편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습 부진아에 대한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각 학년(군)별 기본 교육과정 이수 시 학습 부진아에 대한 특별 보충 학

습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진급 유예 예방 및 기본 학습에 필요한 보충 지도를 실시함.

- 특히 학습 부진아에 대해서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나 방학 중 특별 보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방과 후 교육이나 방학 중 프로그램에서는 오프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EBS 학습, 교내 사이버 학습 등을 통해 효율적인 보충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다. 압축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 확립

-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압축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년(군)별 교과군(별)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절차가 필요함.
- 교육과정 이수 인정방식: 단위학교별, 학교 간 협력, 관할 교육청 내 거점 학교 등 운영.
-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업성적, 잠재능력, 사회·정서적 성숙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표준화된 도구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 선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 기관(교육청, 단위학교 등)에서는 교육청별 또는 인근 학교 간 압축교육과정 공동 운영 체계 구축 및 교육과정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 등 공식적인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초등학교 재학생 조기진급 및 유예의 운영방식

<표 VI-6> 초등학생의 진급 및 유예 운영방식 사례

대상		운영 방식(유형)	편성·운영 방안
초등학교 재학생	조기 진급 대상자	학교 내 별도 프로그램 구성, 학교 간 협력 또는 관할 교육청 내 거점학교 구축	정규 교육과정 이수, 학습 우수 확인 → 조기 진급을 위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조기 이수
	진급 유예 대상자	학교 내 별도 프로그램 구성, 학교 간 협력 또는 관할 교육청 내 거점학교 구축	정규 교육과정 이수, 학습 부진 확인 →방과후 및 방학 중 보충 학습 프로그램 운영→정상 이수

□ 압축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

○ 단위학교 독립형

-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단위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조기 진급 및 유예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 대상 교과, 아동, 교수 이수 인정 방식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이와 관련된 학력인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과별 이수 인정 평가, 이수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단위학교가 책임지고 추진

○ 학교 연합형

- 시설, 교사 등을 고려하여 개별 단위 학교에서 조기 진급 및 유예 대상자에 대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려울 때 관할 교육청 내의 단위 학교들이 연합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타 학교 학생들의 교과 수업 이수 방식 등에 대해 협력하여 추진

○ 거점학교형

- 관할 교육청 내 조기 진급 및 유예 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교사 등을 갖춘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거점학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거점 학교 지정 대상 학교 교사들의 전공이나 전문성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에 적합한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교실이나 기자재 등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 필요. 거점학교 지정 학교의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있음. 특히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 주말학교 수업,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지역사회 연계형

- 조기 진급 및 졸업 대상자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편성·운영 방안의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구축하는 방식. 기본적으로 관련 교사가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해당 교과와 관련된 지역인사, 지역소재 평생교육시설,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와 자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이

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시설과의 협약, 협정을 통해 공적인 관계를 유지 하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장치를 갖출 필요 있음.

교원경력기록부 도입

-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이 교원이 입직 이후부터 이수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학생지도 경력, 업무분장(영재, 조기진급업무 등) 방과후 교수 교과 등 교원의 특기와 경험 등을 기록하여 경력개발을 통한 전문성제고로 조기진급(졸업) 전문가 양성.
- 조기진급(졸업) 담당 교사에게는 각종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장학사 선발 시 조기진급(졸업) 담당교원 경력을 활용하도록 함.

라. 조기진급(졸업)과 영재교육과의 연계 모색

-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을 조기진급(졸업) 잠재적 대상자로 여기고, 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압축교육과정 및 속진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함.
- 종래의 심화 위주의 영재교육과정을 속진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조기진급(졸업)을 활성화 함.
- 영재학생을 위한 진로 및 조기진급(졸업)상담소 설치 운영.
- 영재교육의 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대학 교육과정을 적극 개발하여 실행하도록 함. 즉, 중등단계에서 심화 및 속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재들이 대학에서도 중등과정과 연계된 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른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여 조기진급을 촉진함.

마. 조기진급 후 부적응 해결 프로그램 구축

- 조기진급 후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안하도록 함.

- 학년별 속진 후 6~10주 사이에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상담 및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보충교육 이후에도 적응이 어려운 경우는 원급으로의 회귀 절차를 돕. 본인, 부모, 교사의 요청과 각 학교에 설치된 평가위원회 및 시·군 평가위원회를 거쳐 원급 회귀 여부를 결정함.

바. 대학의 조기졸업자 전형 확대 및 고교-대학 연계협력 강화

- 조기졸업자전형을 일정부분 확대하거나 적극 홍보하여 조기졸업을 대입과 연결시킴으로써 조기진급(졸업)을 활성화함.
- 고교-대학 연계로 학습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유운영하도록 함.
- 대학의 outreach program을 활성화 하여 초·중·고교의 교육발전에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함.

사. 조기진급 및 유예관련 고려사항

- 조기 진급 및 진급 유예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조기 진급 및 진급 유예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 제기 및 해결 방안 도출이 필요함.
 - 대통령령에 제시된 조기 진급 및 졸업 규정을 다음과 같음.

- 교육법상(대통령령) 조기 진급 및 졸업 대상자는 '재능이 우수한 자'이고, 대상자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 지능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함.
-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은 각급 학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해 학교장이 인정함.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칙으로 결정함.
- 조기 진급 및 졸업 제도 시행을 위해 학교장은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조기 진급 및 졸업 제도 시행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교육감이 정함.

- 교과목별 교육과정 조기 이수, 진급, 졸업에 대한 인식 재검토
- 이미 교육법상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됨.
 - 조기 이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학업성취도 우수자는 최소한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해당 교과 성취기준의 90%이상을 달성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교과목별 조기 이수는 교과목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의 90%이상을 달성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지능 검사 점수 및 정서 발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해야 할 것임.
 - 성취기준 90% 이상이라는 객관적 기준 외에도 개인적 발달 등 조기 이수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지만,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거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에 따라 학력 인정의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조기 이수 대상자 선정 방식은 서울시교육청(1996), 부산광역시교육연구원(1997) 등의 여러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교과목별 교육과정 조기 이수 인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임.
 -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년에서 특별반(차상급 학년 교육과정 이수) 편성을 통해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조기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임.(물론 전교과 조기 이수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름)
 -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 이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해당 교과의 집중 이수를 통해 조기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임.
 -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고려 사항으로 해당 교과의 조기 이수 이후에 해당 학생이 어떻게 진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됨.
 - 즉, 해당하는 특정 교과만 해당 학년보다 먼저 이수하게 되는 것이지(조

기 이수), 모든 교과목의 성적 우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차상급 학년으로의 진급(조기 진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특정 교과목만 조기 이수하는 경우, 조기진급을 위해 다른 교과목의 이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해당 학년의 학력 인정의 문제가 대두됨.
- 결국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문제는 특정 교과목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없으므로 모든 교과목의 성적 우수자 또는 영재아에 해당하는 매우 특별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조기 진급 및 졸업에 대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극소수의 학생만이 조기 진급 또는 졸업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행 교육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음.
- 학교 교육에서 특히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다른 학생들보다 조기에 진급하거나 졸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조기 진급 및 졸업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장점

- 압축교육과정의 활용으로 우수학생이 동질적인 집단에서 도전적인 학습경험을 통해 창의적 성취와 탐구 동기 유발의 선순환 구조 정착 가능
- 재능아 학습 특성에 적절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잠재능력을 일찍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
- 우수한 학생들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음.
- 학습자의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학제를 탄력화 함으로써 교육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함.
- 다른 안(案)과 대비하여 무리한 재정 수요가 요구되지 않음.

6. 단점

- 속진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학교현장에서 위화감 조성 및 구별을 차별로 오해하여 불만 야기
- 경쟁적으로 속진하고자하는 경우 과열 과외 야기 가능성 있음.
- 속진 대상자의 선정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또 다른 갈등 요인 양산
- 특수 재능아에게 충분히 도전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학습흥미를 상실하여 오히려 학습부진의 요인이 될 수 있음. 특수재능아일수록 자기의 지적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학습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부작용은 같은 학습 경험으로 인해 일반 아동들에게 미치는 부작용보다 심각함.
- 학년별 속진과 교과별 속진의 약점

<표 VI-7> 학년별 및 교과별 속진의 약점

학년별 속진의 약점	교과별 속진의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수준은 비슷하지만 학습 특성이 이질적인 학생과 생활하므로 학생에게 부담을 줌. ○ 속진을 위해 모든 교과목 성적이 우수해야 하므로 특정 분야 우수 학생의 재능 계발이 어려움 ○ 창조적 사고 및 고급 사고 계발 기회가 적음 ○ 이수과정 압축에 의한 학년별 속진 시에는 한 개의 학급 안에 별개의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 특별반 운영 시 위화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에 맞는 자료, 공간, 교사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 ○ 분반의 번거로움, 학교 외의 프로그램과 연결해야 하므로 시간적, 행정적으로 복잡 ○ 교사의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특별반 운영을 위해 교사의 정규 일과 외의 노력이 필요

Ⅶ. 만 5세 학제개편 대안별 예산추계

1. 초등학교 편입 시나리오 예산추계

□ 초등학교 편입관련 예산추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Ⅶ-1> 예산추계의 기준

- 2012년부터 시행 예상
- 학생 수는 통계청 인구추계 활용, 매 시행 연도의 감소 인구수를 적용함.
- 비용 추계 시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까지의 학생 수, 학교 수 등만 고려함.
 -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의 약 83%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분포
 -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의 약 86%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분포
 - 읍면지역은 대부분 학급당 학생 수 과소, 유휴교실 과다, 소규모 학교이므로 학급 증설, 학교신설 및 교사인건비 고려하지 않음.
 - 단,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비용은 전체 증가학생수의 50% 정도를 적용함.
- 학급당 학생 수: 현재 평균 감안, 재정소요과다 추정 지양,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 고려
 - 현재 수준 : 초등학교 27.8명, 중학교 34.4명, 고등학교 34명
 - 초등학교 : 30명, 중학교 : 35명, 고등학교 : 35명 적용
- 학급당 교원 수
 - 초등학교 : 학급당 1.15명, 중학교 : 1학급당 2.05명, 고등학교 : 2.5명 적용
- 학급 증설 비 : 1학급당 1억원
- 학교 신설 비
 - 전국 공통 건축비 : 초등학교 200억, 중등 140억
 - 부지 비 : 서울 450억, 경기 300억, 인천 250억, 그 외 지역 100억
 - 초등학교신설시 : 서울 650억, 경기 500억, 인천 450억, 그 외 지역 300억원
 - 중고등학교신설시 : 서울 590억, 경기 440억, 인천 390억, 그 외 지역 240억
 - 초등학교 신설 비는 최소 350억~450억원 범위 적용
 - 중고등학교 신설 비는 최소 300억~350억원 범위 적용
- 교사인건비 : 경력 6-7년, 15~16호봉 평균 연봉 40백만원 적용
-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 시설설치비 급당 20백만원, 연간운영비 급당 35백만원
- 증가학생수의 50% 수요 추정, 돌봄 교실 1학급당 학생 20명 기준
- 학급증설과 학교신설 병행 계산 방식
 - 현재 상황에서 10학급이상의 학급증설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최대 50%수준이므로 증가학급수의 50%는 학급증설로, 50%는 학교신설로 배당함.
 - 학교신설시 학교당 학급 수 규모: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30학급, 고등학교 30학급 적용

□ 세부 시나리오별 필요예산

-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신설비의 수준에 따라 필요학급을 학급증설 50%와 학교신설 50%로 확보할 경우 네 가지의 예산산출이 가능
- 초등학교 신설비 450억원, 중고등학교 신설비 350억원을 가정한 경우의 예산

<표 VII-2> 5세 초등학교 편입 소요 예산 1(안)

단위: 백만원

방안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만 5세 일괄 편입 시	인건비	3,378,000	2,634,120	3,181,800	9,193,920
	학급증설/학교 신설비	8,262,000	6,765,400	6,725,300	21,752,700
	방과 후 돌봄	2,543,570	-	-	2,543,570
	계	14,183,570	9,399,520	9,907,100	33,490,190
3개월 분할 편입 시	인건비	3,342,240	2,611,320	3,154,000	9,107,560
	학급증설/학교 신설비	8,165,500	6,724,800	6,649,700	21,540,000
	방과 후 돌봄	2,516,660	-	-	2,516,660
	계	14,024,400	9,336,120	9,803,700	33,164,220
2개월 분할 편입 시	인건비	3,305,760	2,597,640	3,138,240	9,041,640
	학급증설/학교 신설비	8,114,000	6,614,000	6,574,100	21,302,100
	방과 후 돌봄	2,489,290	-	-	2,489,290
	계	13,863,950	9,246,540	9,712,240	32,833,030

주: 학교 신설비 초등학교 450억원, 중고등학교 350억원 적용 시

○ 초등학교 신설비 400억원, 중고등학교 신설비 350억원을 가정한 경우의 예산

<표 VII-3> 5세 초등학교 편입 소요 예산 2(안)

단위: 백만원

방안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만 5세 일괄 편입 시	인건비	3,378,000	2,634,120	3,181,800	9,193,920
	학급증설/학교 신설비	7,412,000	6,765,400	6,725,300	20,902,700
	방과 후 돌봄	2,543,570	-	-	2,543,570
	계	13,333,570	9,399,520	9,907,100	32,640,190
3개월 분할 편입 시	인건비	3,342,240	2,611,320	3,154,000	9,107,560
	학급증설/학교 신설비	7,325,500	6,724,800	6,649,700	20,700,000
	방과 후 돌봄	2,516,660	-	-	2,516,660
	계	13,184,400	9,336,120	9,803,700	32,324,220
2개월 분할 편입 시	인건비	3,305,760	2,597,640	3,138,240	9,041,640
	학급증설/학교 신설비	7,279,000	6,614,000	6,574,100	20,467,100
	방과 후 돌봄	2,489,290	-	-	2,489,290
	계	13,074,050	9,211,640	9,712,340	31,998,030

주: 학교 신설비 초등학교 400억원, 중고등학교 350억원 적용 시

○ 초등학교 신설비 400억원, 중고등학교 신설비 300억원을 가정한 경우의 예산

<표 VII-4> 5세 초등학교 편입 소요 예산 3(안)

(단위: 백만원)

방안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만 5세 일괄 편입 시	인건비	3,378,000	2,634,120	3,181,800	9,193,920
	학급증설/학교 신설비	7,412,000	5,875,400	5,840,300	19,127,700
	방과 후 돌봄	2,543,570	-	-	2,543,570
	계	13,333,570	8,509,520	9,022,100	30,865,190
3개월 분할 편입 시	인건비	3,342,240	2,611,320	3,154,000	9,107,560
	학급증설/학교 신설비	7,325,500	5,839,800	5,774,700	18,940,000
	방과 후 돌봄	2,516,660	-	-	2,516,660
	계	13,184,400	8,451,120	8,928,700	30,564,220
2개월 분할 편입 시	인건비	3,305,760	2,597,640	3,138,240	9,041,640
	학급증설/학교 신설비	7,279,000	5,744,000	5,709,100	18,732,100
	방과 후 돌봄	2,489,290	-	-	2,489,290
	계	13,074,050	8,341,640	8,847,340	30,263,030

주: 학교 신설비 초등학교 400억원, 중고등학교 300억원 적용 시

○ 초등학교 신설비 350억원, 중고등학교 신설비 300억원을 가정한 경우의 예산

<표 VII-5> 5세 초등학교 편입 소요 예산 4(안)

(단위: 백만원)

방안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만 5세 일괄 편입 시	인건비	3,378,000	2,634,120	3,181,800	9,193,920
	학급증설/학교 신설비	6,562,000	5,875,400	5,840,300	18,277,700
	방과 후 돌봄	2,543,570	-	-	2,543,570
	계	12,483,570	8,509,520	9,022,100	30,015,190
3개월 분할 편입 시	인건비	3,342,240	2,611,320	3,154,000	9,107,560
	학급증설/학교 신설비	6,485,500	5,839,800	5,774,700	18,100,000
	방과 후 돌봄	2,516,660	-	-	2,516,660
	계	12,344,400	8,451,120	8,928,700	29,724,220
2개월 분할 편입 시	인건비	3,305,760	2,597,640	3,138,240	9,041,640
	학급증설/학교 신설비	6,444,000	5,744,000	5,709,100	17,897,100
	방과 후 돌봄	2,489,290	-	-	2,489,290
	계	12,239,050	8,341,640	8,847,340	29,428,030

주: 학교 신설비 초등학교 350억원, 중고등학교 300억원 적용 시

2. 기초학년 도입관련 예산추계

- 기초학년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에게 적용하는 경우의 예산 추계가 필요
 -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운영상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 기초학년을 도입한다는 것은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만 5세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교과과정 및 수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초등학교 과정과 연계한다는 의미 포함
 - 의무교육으로의 확대는 아니지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의 학습에 대한 권리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무상교육지원의 원칙을 천명할 필요

- 예산추계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운영시간의 차이, 현재의 투입비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임.

- 유치원의 경우 많은 비중의 아동이 연장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 보육시설의 경우 종일제 서비스 이용아동 비중이 높은 편
 -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지자체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자율화 되어 있음.
 - 보육시설의 종일제 기준 비용보다 유치원의 연장제 수업료가 더 높은 편
 - 현재 정부의 만 5세 무상보육료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동일하게 월 172,000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유치원은 종일제 아동에게 50,000원을 추가로 지원(사립유치원 기준)
- 정부의 예산수준을 고려하여 K학년 도입(K+6년제)에 따른 정부의 무상교육비 지원은 기본교육과정에 국한
- 기본교육과정은 총 5시간(오전 9시~오후 2시)으로 설정
 - 지원 금액은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
 - 종일제에 대한 지원은 현재 소득하위 70%까지 50,000원 지원하는 것을 유지하되 2017년 이후에는 소득하위 80%까지 지원 폭을 확대
- 지원 대상 아동
- 5시간 기본교육관련 비용은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전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10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만5세 아동 수는 447,025명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전체 5세 아동수의 39.1%인 174,787명
 -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전체 아동 수의 56%인 251,760명 (2009년 4월 기준)
 - 따라서 전체 아동의 95% 수준이 두 시설 중 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복수로 이용하고 있음.
 -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적어도 95%의 아동이 두 시설에 등록할 것으로 보임.
 - 종일제의 경우 보육시설은 전체 인원 대비 70%, 유치원은 35%로 산정

<표 VII-6> 시설유형별 서비스 수혜 대상자 (2010년 기준)

만 5시간 교육	지원기준	보육시설(명)	유치원(명)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 아동	174,787	251,760
종일제	'12~'16 : 하위 70% 이하 지원	122,351	88,116
추가 지원	'17~'20 : 하위 80% 이하 지원		

○ 2020년까지 장래인구추계와 2010년 기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률에 따른 시설이용 아동 수에 대한 추계

- 보육시설 이용률은 전체 아동의 39.1%, 유치원 이용률은 56%를 이용
- 종일제의 경우 보육시설은 전체 인원 대비 70%, 유치원은 35%로 산정

<표 VII-7> 연도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아동 수 추정

	아동 수	보육시설 이용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종일제	유치원 종일제
		아동 수	아동 수	아동 수	아동 수
2012	442,373	174,787	251,760	122,351	88,116
2013	440,129	172,090	246,472	120,463	86,265
2014	436,478	170,663	244,428	119,464	85,550
2015	431,714	168,800	241,760	118,160	84,616
2016	425,809	166,491	238,453	116,544	83,459
2017	419,209	163,911	234,757	114,738	82,165
2018	412,026	161,102	230,735	112,771	80,757
2019	404,757	158,260	226,664	110,782	79,332
2020	397,615	155,467	222,664	108,827	77,932

□ 제1 시나리오: 보육시설 연장제 및 종일제 기준 표준보육비용에 기초하여 지원

<표 VII-8> 보육시설규모별 연장제 만5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구분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48,000	252,000	124,000	213,000	127,000	211,000	121,000	205,000	124,000	205,000	117,000	195,000
교재교구비	54,400	54,400	53,100	53,100	52,600	52,600	52,000	52,000	50,800	50,800	50,100	50,100
급간식비	42,200	49,500	38,000	49,500	36,100	49,500	35,900	49,500	33,800	49,500	32,900	49,500
관리운영비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설치비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보육비용	297,300	426,600	266,800	380,300	267,400	375,800	260,600	367,200	260,300	365,000	251,700	353,3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보육통계.

<표 VII-9> 보육시설규모별 종일제 만5세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용

구분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48,000	252,000	124,000	213,000	127,000	211,000	121,000	205,000	124,000	205,000	117,000	195,000
교재교구비	54,400	54,400	53,100	53,100	52,600	52,600	52,000	52,000	50,800	50,800	50,100	50,100
급간식비	62,000	73,300	55,800	73,300	52,900	73,300	52,700	73,300	49,600	73,300	48,400	73,300
관리운영비	37,000	48,000	37,000	43,000	37,000	41,000	37,000	40,000	37,000	39,000	37,000	38,000
시설설치비	15,700	22,700	14,700	21,700	14,700	21,700	14,700	20,700	14,700	20,700	14,700	20,700
표준보육비용	317,100	450,400	284,600	404,100	284,200	399,600	277,400	391,000	276,100	388,800	267,200	377,1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보육통계.

- 보건복지가족부(2009)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게 필요한 표준 보육비용을 운영시간에 따라 산정하였음.
-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이 종일제이므로 연장제 비용과 종일제 비용의 차이는 급간식비 차이로 최소한 반영하였음.
- 제1안은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투입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된 수준이고, 제2안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1:20으로 유지하면서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비용을 투입할 경우의 아동 1인당 투입비용임.
- 시설규모 97인을 기준으로 선정할 경우 제1안의 연장제 비용은 267,400원이고, 종일제의 비용은 284,200원임.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연장제 비용 조정 필요
 - 종일제에 대한 정부지원은 사립유치원 월 5만원 국공립 유치원 월 3만원
 - 보육시설 종일제에 대한 정부지원도 유치원과 통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종일제 비용 280,000원에서 5만원을 제외한 230,000원을 기본교육과정의 교육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
- 즉, 5시간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무상교육비는 230,000원으로 설정하고 보육시설과 유치원 공히 종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50,000원을 추가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공립과 민간의 지원수준의 차이를 이용하여 재조정
-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료 지원액인 172,000원에 비해서는 종일제의 경우 10만원 이상, 연장제의 경우도 58,000원이 증가

<표 VII-10> 제1 시나리오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구분	5시간 기본교육(전 아동)	종일제 추가지원(소득 하위 70%)
보육시설	230,000원	50,000원
유치원	230,000원	50,000원

□ 제2 시나리오 : 유치원의 연장제와 종일제 비용에 기초하여 지원

<표 VII-11> 유치원 연장제 기준 만 5세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

구분	40		55		95		150		205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31,000	184,000	161,900	223,100	194,600	270,500	179,300	249,300	173,300	236,100
급식비	40,400	47,800	38,100	47,800	34,300	47,800	32,400	47,800	30,500	47,800
교재교구비	47,400	75,000	47,400	75,000	47,446	75,000	47,400	75,000	47,400	75,000
관리운영비	33,000	47,100	28,600	40,800	26,300	37,500	24,100	34,500	22,900	32,700
시설설치비	23,300	33,200	20,100	28,800	19,500	26,900	18,400	26,200	16,900	24,100
표준교육비	275,100	387,100	296,100	415,500	322,100	457,700	301,600	432,800	291,000	415,700

<표 VII-12> 유치원 종일제 기준 만 5세 아동 1인당 표준교육비

구분	40		55		95		150		205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181,000	272,800	211,900	311,900	244,600	359,300	229,300	338,000	223,300	324,800
급식비	59,200	70,200	57,200	70,200	51,400	70,200	48,600	70,200	45,700	70,200
교재교구비	47,400	75,000	47,400	75,000	47,446	75,000	47,400	75,000	47,400	75,000
관리운영비	33,000	47,100	28,600	40,800	26,300	37,500	24,100	34,500	22,900	32,700
시설설치비	23,300	33,200	20,100	28,800	19,500	26,900	18,400	26,200	16,900	24,100
표준교육비	343,900	498,300	365,200	526,700	389,246	568,900	367,800	543,900	356,200	526,800

- 유치원의 95인 기준 연장제 표준교육비용 제1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육 시설과 유치원 모두 만 5시간 기본교육비용으로 320,000원을 설정
- 종일제 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 5만원의 추가비용 지원
- 현 정부의 만 5세 무상보육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80% 증가

<표 VII-13> 제2 시나리오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구분	5시간 기본교육(전 아동)	종일제 추가지원(소득 하위 70%)
보육시설	320,000원	50,000원
유치원	320,000원	50,000원

□ 제3 시나리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현실적 투입비용의 차이를 인정

- 만 5시간 무상 교육비를 두 시설에 차등하여 지원하되 장기적으로 이를 통일하는 방안
- 보육시설의 만 5시간 무상교육비는 230,000원으로 설정하고, 유치원의 만 5시간 무상교육비는 320,000원을 설정
- 두 시설 모두에게 종일제의 추가적인 지원은 5만원으로 통일
- 이 경우, 보육시설의 종일제는 보육시설 만 5세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해지고, 유치원의 연장제는 만 5세 표준교육비용과 유사해지는 장점
- 단, K학년 도입이 두 시설의 질적 수준을 동일화한다는 전제를 포함하므로 이와 같은 차이는 시설의 질적 수준이 현실화될 경우 해소될 필요성
- 2012~2016년의 5년 간 두 시설의 비용차이를 해소하도록 조정

<표 VII-14> 제3 시나리오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2012년 시작 기준)

구분	5시간 기본교육(전 아동)	종일제 추가지원(소득 하위 70%)
보육시설	230,000원	50,000원
유치원	320,000원	50,000원

□ 제4 시나리오: 비용 절감 안

- 가장 비용을 절감하는 안으로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이 받는 정부보조수준에 기초한 지원방안 마련
-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 아동이 유치원을 종일제로 이용할 경우 무상보육료 172,000원에 종일제 추가지원 50,000원을 지원받음.
- 따라서 5시간 기본 교육료는 172,000원으로 설정하고 종일제 추가지원 비용 50,000원 설정

<표 VII-15> 제4 시나리오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5시간 기본교육(전 아동)	종일제 추가지원(소득 하위 70%)
보육시설	172,000원	50,000원
유치원	172,000원	50,000원

□ 제1 시나리오 소요예산

<표 VII-16> 제1 시나리오 소요예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육시설 기본교육비용	482,412,120,000	489,217,452,000	499,715,599,692	509,088,396,576	517,188,360,909	524,449,052,908	530,925,228,088	537,205,952,720	543,557,006,111
유치원 기본교육비용	694,857,600,000	700,670,601,600	715,705,715,952	729,130,395,475	740,731,428,268	751,127,662,655	760,406,652,325	769,400,038,338	778,496,897,790
보육시설 종일제 지원비용	51,387,420,000	52,112,293,800	53,230,530,192	54,228,981,374	55,091,945,476	63,846,138,594	64,634,146,335	65,398,985,549	66,172,218,071
유치원 종일제 지원비용	24,320,016,000	24,523,414,200	25,049,758,620	25,519,563,842	25,925,739,778	32,004,589,450	32,399,835,320	32,782,966,773	33,170,567,130
5시간 무상교육비	1,177,269,720,000	541,329,745,800	552,946,129,884	563,317,377,950	572,280,306,385	588,295,191,501	595,559,374,423	602,604,938,269	609,729,224,182
종일제 지원비	75,707,436,000	76,635,708,000	78,280,288,812	79,748,545,216	81,017,685,254	95,850,728,044	97,033,981,656	98,181,952,322	99,342,785,201
보육시설 비용	533,799,540,000	541,329,745,800	552,946,129,884	563,317,377,950	572,280,306,385	588,295,191,501	595,559,374,423	602,604,938,269	609,729,224,182
유치원 비용	719,177,616,000	725,194,015,800	740,755,474,572	754,649,959,317	766,657,168,045	783,132,252,105	792,806,487,646	802,183,005,111	811,667,464,920
총계	1,252,977,156,000	1,266,523,761,600	1,293,701,604,456	1,317,967,337,267	1,338,937,474,430	1,371,427,443,606	1,388,365,862,069	1,404,787,943,380	1,421,396,689,102

□ 제2 시나리오 소요예산

<표 VII-17> 제2 시나리오 소요예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육시설 기본교육비용	671,182,080,000	680,650,368,000	695,256,486,528	708,296,899,584	719,566,415,177	729,668,247,524	738,678,578,210	747,416,977,698	756,253,225,893
유치원 기본교육비용	966,758,400,000	974,846,054,400	995,764,474,368	1,014,442,289,357	1,030,582,856,720	1,045,047,182,824	1,057,957,081,496	1,070,469,618,557	1,083,126,118,664
보육시설 종일제 지원비용	51,387,420,000	52,112,293,800	53,230,530,192	54,228,981,374	55,091,945,476	63,846,138,594	64,634,146,335	65,398,985,549	66,172,218,071
유치원 종일제 지원비용	24,320,016,000	24,523,414,200	25,049,758,620	25,519,563,842	25,925,739,778	32,004,589,450	32,399,835,320	32,782,966,773	33,170,567,130
5시간 무상교육비	1,637,940,480,000	732,762,661,800	748,487,016,720	762,525,880,958	774,658,360,653	793,514,386,117	803,312,724,545	812,815,963,246	822,425,443,964
종일제 지원비	75,707,436,000	76,635,708,000	78,280,288,812	79,748,545,216	81,017,685,254	95,850,728,044	97,033,981,656	98,181,952,322	99,342,785,201
보육시설 비용	722,569,500,000	732,762,661,800	748,487,016,720	762,525,880,958	774,658,360,653	793,514,386,117	803,312,724,545	812,815,963,246	822,425,443,964
유치원 비용	991,078,416,000	999,369,468,600	1,020,814,232,988	1,039,961,853,198	1,056,508,596,498	1,077,051,772,274	1,090,356,916,817	1,103,252,585,331	1,116,296,685,794
총계	1,713,647,916,000	1,732,132,130,400	1,769,301,249,708	1,802,487,734,157	1,831,166,957,151	1,870,566,158,391	1,893,669,641,361	1,916,068,548,577	1,938,722,129,758

□ 제3 시나리오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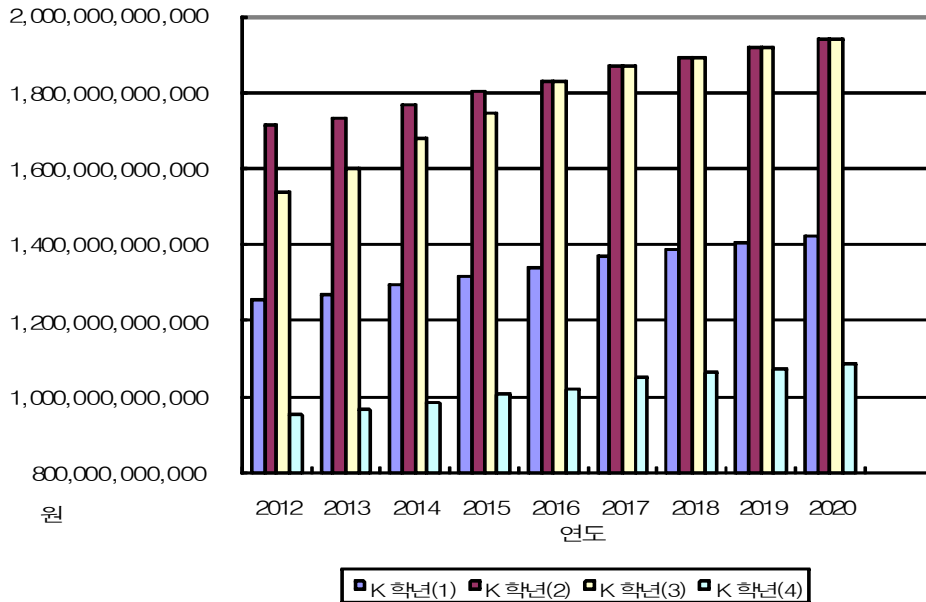
<표 VII-18> 제3 시나리오 소요예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육시설 기본교육비용	496,884,483,600	547,710,843,000	604,221,340,323	652,961,204,304	719,566,415,177	729,668,247,524	738,678,578,210	747,416,977,698	756,253,225,893
유치원 기본교육비용	966,758,400,000	974,846,054,400	995,764,474,368	1,014,442,289,357	1,030,582,856,720	1,045,047,182,824	1,057,957,081,496	1,070,469,618,557	1,083,126,118,664
보육시설 종일제 지원비용	51,387,420,000	52,112,293,800	53,230,530,192	54,228,981,374	55,091,945,476	63,846,138,594	64,634,146,335	65,398,985,549	66,172,218,071
유치원 종일제 지원비용	24,320,016,000	24,523,414,200	25,049,758,620	25,519,563,842	25,925,739,778	32,004,589,450	32,399,835,320	32,782,966,773	33,170,567,130
5시간 무상교육비	1,463,642,883,600	599,823,136,800	657,451,870,515	707,190,185,678	774,658,360,653	793,514,386,117	803,312,724,545	812,815,963,246	822,425,443,964
종일제 지원비	75,707,436,000	76,635,708,000	78,280,288,812	79,748,545,216	81,017,685,254	95,850,728,044	97,033,981,656	98,181,952,322	99,342,785,201
보육시설 비용	548,271,903,600	599,823,136,800	657,451,870,515	707,190,185,678	774,658,360,653	793,514,386,117	803,312,724,545	812,815,963,246	822,425,443,964
유치원 비용	991,078,416,000	999,369,468,600	1,020,814,232,988	1,039,961,853,198	1,056,508,596,498	1,077,051,772,274	1,090,356,916,817	1,103,252,585,331	1,116,296,685,794
총계	1,539,350,319,600	1,599,192,605,400	1,678,266,103,503	1,747,152,038,877	1,831,166,957,151	1,870,566,158,391	1,893,669,641,361	1,916,068,548,577	1,938,722,129,758

□ 제4 시나리오 소요예산

<표 VII-19> 제4 시나리오 소요예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육시설 기본교육비용	360,760,368,000	365,849,572,800	373,700,361,509	380,709,583,526	386,766,948,158	392,196,683,044	397,039,735,788	401,736,625,513	406,486,108,918
유치원 기본교육비용	519,632,640,000	523,979,754,240	535,223,404,973	545,262,730,529	553,938,285,487	561,712,860,768	568,651,931,304	575,377,419,975	582,180,288,782
보육시설 종일제 지원비용	51,387,420,000	52,112,293,800	53,230,530,192	54,228,981,374	55,091,945,476	63,846,138,594	64,634,146,335	65,398,985,549	66,172,218,071
유치원 종일제 지원비용	24,320,016,000	24,523,414,200	25,049,758,620	25,519,563,842	25,925,739,778	32,004,589,450	32,399,835,320	32,782,966,773	33,170,567,130
5시간 무상교육비	880,393,008,000	417,961,866,600	426,930,891,701	434,938,564,901	441,858,893,634	456,042,821,638	461,673,882,123	467,135,611,061	472,658,326,988
종일제 지원비	75,707,436,000	76,635,708,000	78,280,288,812	79,748,545,216	81,017,685,254	95,850,728,044	97,033,981,656	98,181,952,322	99,342,785,201
보육시설 비용	412,147,788,000	417,961,866,600	426,930,891,701	434,938,564,901	441,858,893,634	456,042,821,638	461,673,882,123	467,135,611,061	472,658,326,988
유치원 비용	543,952,656,000	548,503,168,440	560,273,163,593	570,782,294,371	579,864,025,265	593,717,450,218	601,051,766,625	608,160,386,748	615,350,855,912
총계	956,100,444,000	966,465,035,040	987,204,055,294	1,005,720,859,272	1,021,722,918,899	1,049,760,271,855	1,062,725,648,748	1,075,295,997,809	1,088,009,182,900



[그림 VII-1] 기초학년 도입의 시나리오 별 예산수준

3. 현 지원체계 유지 시 예산추계

- 현 지원체계를 유지할 경우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지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연계하는 방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
 - K학년 도입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만 5세 교육과정을 통일화하는 것도 가능
 - 그러나 만 5세 교육기능의 강화를 위해 아동 1인당 정부 지원 금액은 표준보육비용이나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용 수준을 반영하여 상향조정될 필요
 - 따라서 현재 만 5세 무상보육료가 소득하위계층 70%까지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수용하되 이를 2017년 이후에는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소득수준과 유치원 이용아동의 소득수준의 차이로 인해 보육시설은 70%의 아동이 무상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으나, 유치원은 46%의 아동이 혜택수혜
 - 보육시설 만 5세 이용아동 175,323 명 중 122,314명이 무상보육료 수혜
 - 유치원 만 5세 이용아동 251,760명 중 117,000명이 무상보육료 수혜
- 아동 1인당 지원비용은 K학년 설치의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네 가지 방안을 검토

□ 지원대상 아동

- 지원아동은 2012~2016년 향후 5년간 현재의 지원 비율 즉 보육시설 70%, 유치원 46%가 유지된다고 가정
- 2017년 이후에는 무상교육비 지원수준을 소득하위 80%계층까지 증가시킨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보육시설 아동의 80%, 유치원 아동의 56%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

<표 VII-20> 정부지원 대상 아동 수

연도	아동 수	보육시설 지원 아동 수	유치원 지원 아동 수	보육시설 종일제 지원 아동 수	유치원 종일제 지원 아동 수
2012	442,373	122,351	115,810	85,646	40,534
2013	440,129	120,463	113,377	84,324	39,682
2014	436,478	119,464	112,437	83,625	39,353
2015	431,714	118,160	111,210	82,712	38,924
2016	425,809	116,544	109,688	81,581	38,391
2017	419,209	131,129	131,464	91,790	46,012
2018	412,026	128,882	129,212	90,217	45,224
2019	404,757	126,608	126,932	88,626	44,426
2020	397,615	124,374	124,692	87,062	43,642

- 제1 시나리오 : 보육시설의 연장제 및 종일제 기준 표준보육비용에 기초하여 지원
 - 만 5시간 무상교육비로 230,000원을 책정하고, 종일제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50,000원을 추가지원

<표 VII-21> 시나리오 1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5시간 기본교육(전 아동)	종일제 추가지원(소득 하위 70%)
보육시설	230,000원	50,000원
유치원	230,000원	50,000원

□ 제2 시나리오 :유치원의 연장제와 종일제 비용에 기초하여 지원

- 만 5시간 무상교육비로 320,000원을 책정하고, 종일제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50,000원을 추가지원

<표 VII-22> 시나리오 2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5시간 기본교육(전 아동)	종일제 추가지원(소득 하위 70%)
보육시설	320,000원	50,000원
유치원	320,000원	50,000원

□ 제3 시나리오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현실적 투입비용의 차이를 인정

- 보육시설의 경우 만 5시간 무상교육비로 230,000원 책정하고 종일제 아동에게는 50,000원 추가지원
- 유치원의 경우 만 5시간 무상교육비로 320,000원 책정하고 종일제 아동에게는 50,000원 추가지원
- 2012~2016년의 5년간 두 시설의 비용차이를 해소하도록 조정

<표 VII-23> 시나리오 3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2012년 시작 기준)

	5시간 기본교육(전 아동)	종일제 추가지원(소득 하위 70%)
보육시설	230,000원	50,000원
유치원	320,000원	50,000원

□ 제4 시나리오 : 비용절감안

- 2010년 기준 만 5세 무상보육료인 172,000원을 만 5시간 무상교육비의 기준으로 사용

- 종일제의 경우 50,000원 추가지원
- 보육시설의 경우 현재 172,000원이 종일제 기준으로 할 경우 222,000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유치원의 경우는 동일

<표 VII-24> 시나리오 4의 아동 1인당 월별 지원액

	5시간 기본교육(전 아동)	종일제 추가지원(소득 하위 70%)
보육시설	172,000원	50,000원
유치원	172,000원	50,000원

□ 제1 시나리오 소요예산

<표 VII-25> 제1 시나리오 소요예산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육시설 기본교육비용	337,688,760,000	342,452,216,400	349,800,626,976	356,361,877,603	362,032,784,557	419,559,882,245	424,741,500,704	429,764,762,176	434,847,003,403
유치원 기본교육비용	319,635,600,000	322,308,135,600	329,224,980,708	335,401,188,289	340,735,276,570	420,631,747,054	425,825,747,952	430,864,564,582	435,958,822,168
보육시설 종일제 지원비용	51,387,600,000	52,112,232,000	53,230,657,500	54,228,981,374	55,092,080,537	63,845,860,368	64,634,289,622	65,399,280,718	66,172,522,095
유치원 종일제 지원비용	24,320,400,000	24,523,476,000	25,049,758,620	25,519,983,449	25,925,645,235	32,004,311,224	32,399,892,635	32,783,025,807	33,170,627,935
5시간 무상교육비	657,324,360,000	394,564,448,400	403,031,284,476	410,590,858,978	417,124,865,094	483,405,742,613	489,375,790,326	495,164,042,895	501,019,525,498
종일제 지원비	75,708,000,000	76,635,708,000	78,280,416,120	79,748,964,823	81,017,725,772	95,850,171,592	97,034,182,257	98,182,306,526	99,343,150,031
보육시설 비용	389,076,360,000	394,564,448,400	403,031,284,476	410,590,858,978	417,124,865,094	483,405,742,613	489,375,790,326	495,164,042,895	501,019,525,498
유치원 비용	343,956,000,000	346,831,611,600	354,274,739,328	360,921,171,738	366,660,921,804	452,636,058,278	458,225,640,587	463,647,590,389	469,129,450,103
총계	733,032,360,000	741,396,060,000	757,306,023,804	771,512,030,716	783,785,786,899	936,041,800,892	947,601,430,912	958,811,633,283	970,148,975,601

□ 제2 시나리오 소요예산

<표 VII-26> 제2 시나리오 소요예산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육시설 기본교육비용	469,827,840,000	476,455,257,600	486,679,133,184	495,807,829,709	503,697,787,210	583,735,488,341	590,944,696,632	597,933,582,158	605,004,526,474
유치원 기본교육비용	444,710,400,000	448,428,710,400	458,052,147,072	466,645,131,533	474,066,471,749	585,226,778,510	592,453,214,541	599,463,742,027	606,551,404,755
보육시설 종일제 지원비용	51,387,600,000	52,112,232,000	53,230,657,500	54,228,981,374	55,092,080,537	63,845,860,368	64,634,289,622	65,399,280,718	66,172,522,095
유치원 종일제 지원비용	24,320,400,000	24,523,476,000	25,049,758,620	25,519,983,449	25,925,645,235	32,004,311,224	32,399,892,635	32,783,025,807	33,170,627,935
5시간 무상교육비	914,538,240,000	528,567,489,600	539,909,790,684	550,036,811,083	558,789,867,747	647,581,348,709	655,578,986,254	663,332,862,877	671,177,048,569
종일제 지원비	75,708,000,000	76,635,708,000	78,280,416,120	79,748,964,823	81,017,725,772	95,850,171,592	97,034,182,257	98,182,306,526	99,343,150,031
보육시설 비용	521,215,440,000	528,567,489,600	539,909,790,684	550,036,811,083	558,789,867,747	647,581,348,709	655,578,986,254	663,332,862,877	671,177,048,569
유치원 비용	469,030,800,000	472,952,186,400	483,101,905,692	492,165,114,982	499,992,116,984	617,231,089,735	624,853,107,176	632,246,767,834	639,722,032,691
총계	990,246,240,000	1,001,519,676,000	1,023,011,696,376	1,042,201,926,065	1,058,781,984,731	1,264,812,438,444	1,280,432,093,430	1,295,579,630,710	1,310,899,081,260

□ 제3 시나리오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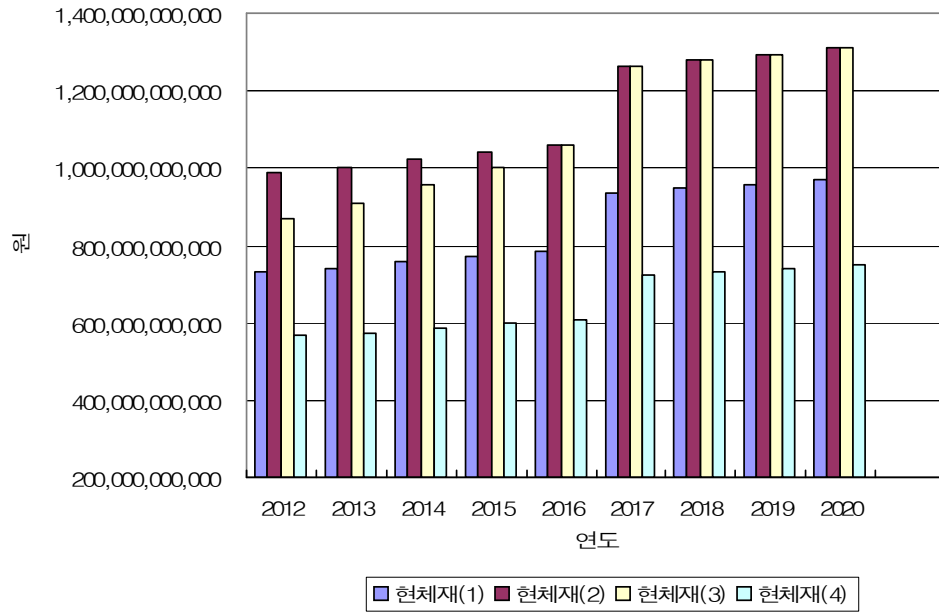
<표 VII-27> 제3 시나리오 소요예산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육시설 기본교육비용	347,819,422,800	383,397,590,100	422,954,584,183	457,072,843,013	503,697,787,210	583,735,488,341	590,944,696,632	597,933,582,158	605,004,526,474
유치원 기본교육비용	444,710,400,000	448,428,710,400	458,052,147,072	466,645,131,533	474,066,471,749	585,226,778,510	592,453,214,541	599,463,742,027	606,551,404,755
보육시설 종일제 지원비용	51,387,600,000	52,112,232,000	53,230,657,500	54,228,981,374	55,092,080,537	63,845,860,368	64,634,289,622	65,399,280,718	66,172,522,095
유치원 종일제 지원비용	24,320,400,000	24,523,476,000	25,049,758,620	25,519,983,449	25,925,645,235	32,004,311,224	32,399,892,635	32,783,025,807	33,170,627,935
5시간 무상교육비	792,529,822,800	435,509,822,100	476,185,241,683	511,301,824,387	558,789,867,747	647,581,348,709	655,578,986,254	663,332,862,877	671,177,048,569
종일제 지원비	75,708,000,000	76,635,708,000	78,280,416,120	79,748,964,823	81,017,725,772	95,850,171,592	97,034,182,257	98,182,306,526	99,343,150,031
보육시설 비용	399,207,022,800	435,509,822,100	476,185,241,683	511,301,824,387	558,789,867,747	647,581,348,709	655,578,986,254	663,332,862,877	671,177,048,569
유치원 비용	469,030,800,000	472,952,186,400	483,101,905,692	492,165,114,982	499,992,116,984	617,231,089,735	624,853,107,176	632,246,767,834	639,722,032,691
총계	868,237,822,800	908,462,008,500	959,287,147,375	1,003,466,939,369	1,058,781,984,731	1,264,812,438,444	1,280,432,093,430	1,295,579,630,710	1,310,899,081,260

□ 제4 시나리오 소요예산

<표 VII-28> 제4 시나리오 소요예산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육시설 기본교육비용	252,532,464,000	256,094,700,960	261,590,034,086	266,496,708,468	270,737,560,625	313,757,824,983	317,632,774,440	321,389,300,410	325,189,932,980
유치원 기본교육비용	239,031,840,000	241,030,431,840	246,203,029,051	250,821,758,199	254,810,728,565	314,559,393,449	318,443,602,816	322,211,761,339	326,021,380,056
보육시설 종일제 지원비용	51,387,600,000	52,112,232,000	53,230,657,500	54,228,981,374	55,092,080,537	63,845,860,368	64,634,289,622	65,399,280,718	66,172,522,095
유치원 종일제 지원비용	24,320,400,000	24,523,476,000	25,049,758,620	25,519,983,449	25,925,645,235	32,004,311,224	32,399,892,635	32,783,025,807	33,170,627,935
5시간 무상교육비	491,564,304,000	308,206,932,960	314,820,691,586	320,725,689,843	325,829,641,163	377,603,685,351	382,267,064,061	386,788,581,128	391,362,455,075
종일제 지원비	75,708,000,000	76,635,708,000	78,280,416,120	79,748,964,823	81,017,725,772	95,850,171,592	97,034,182,257	98,182,306,526	99,343,150,031
보육시설 비용	303,920,064,000	308,206,932,960	314,820,691,586	320,725,689,843	325,829,641,163	377,603,685,351	382,267,064,061	386,788,581,128	391,362,455,075
유치원 비용	263,352,240,000	265,553,907,840	271,252,787,671	276,341,741,648	280,736,373,800	346,563,704,673	350,843,495,451	354,994,787,147	359,192,007,991
총계	567,272,304,000	573,760,840,800	586,073,479,258	597,067,431,491	606,566,014,962	724,167,390,025	733,110,559,512	741,783,368,275	750,554,463,066



[그림 VII-2] 현 체재 유지 시 시나리오별 예산수준

Ⅷ. 요약 및 결론

- 만 5세 학제개편과 관련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분석하고 장단점 제시
 - 초등학교 편입방안, 기초학년 도입방안, 현 체제 유지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
 - 각 제도의 장단점과 예산소요도 함께 제시

- 만 5세 초등학교 편입방안은 세 가지 세부 시나리오로 분류하여 정리
 - 2012년에 일괄 편입하는 방안의 경우 특정한 해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100% 증가하며 높은 수준의 예산을 요구
 - 특정 한 해에 학생수가 200%(6세 100%+5세 100%)로 증가, 매년 다음 학년으로 이동, 총 초등학생 수는 시행전년도 대비 17%씩 증가하여 6년간 지속되었다가 7년차에 이전 학생 수로 환원됨.
 - 이를 감안한 대폭적인 시설·학급 증설 및 교사 증원 배치 등의 조치 필요(6년간에 해당함)
 - 학교신설비용 수준에 따라 30조~34조의 예산소요
 - 3개월씩 나누어 네 번에 걸쳐 초등학교에 편입하는 방안은 그 충격은 다소 줄일 수 있으나 실현과정에서 여전히 상당한 무리가 따름.
 - 총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5년차에는 만 5세 아동 일괄 초등학교 입학
 - 첫 해에 학생수가 125%로 증가, 매년 다음 학년으로 이동 4년간 지속, 총 초등학생 수는 3년 단위로 3년간 증가 → 3년간 유지 → 3년간 감소(이전상태로 환원) 과정을 거치며 9년간 증감변화 가져옴.
 - 현재 학급수로는 수용 불가능하여 신규투자 필요
 - 학교신설비용 수준에 따라 30~34조의 예산이 필요하며 총괄편입에 비해 비용은 약간 감소

- 2개월씩 나누어 총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7년차에는 만 5세 아동 일괄 초등학교 입학
 - 첫 해에 학생수가 117%로 증가, 매년 다음 학년으로 이동 6년간 지속, 총 초등학생 수는 증가 → 감소(이전상태로 환원)하며 11년간 증감변화가 저음.
 - 이를 감안한 시설·학급 증설 및 교사 증원 배치 등 조치 필요한데 17%는 소폭 증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증설 및 증원 조치 없이 다소간의 과밀학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총 예산은 과밀학급을 유지하지 않는한 총괄편입이나 3개월 단위 편입에 비해 약간 줄어드나 거의 유사한 수준임.
- 기초학년도입 방안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재교육, 시설 개조 및 증축 비용을 위한 재정적 부담 최소화하면서 만 5세에 대한 교육내용과 정부지원을 강화하여 공교육체계를 구축
- 유치원의 만 5세반을 기초학년 체제로 구축함으로써, 만 5세 유아교육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공교육 비율을 높여, 영유아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교원의 질 제고를 위한 체제 구축
- 제1안은 기초학년 +6년제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의 수준 별 교육과정을 만 3, 4, 5세의 연령별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여 만 5세 교육과정을 기초학년 교육과정으로 구성.
 - 만 3, 4, 5(K학년)세 교육과정은 연령별로 개정하고, 각 연령별 교육과정은 유아의 발달 편차를 고려하여 세분화하는 것이 요구됨.
 - K학년의 유치원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1,2학년 통합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영역의 연계 방안 추진
 - 필요예산은 1일 5시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제공할 경우, 제공단가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 연간 1조~1조7천억원 소요
- 제2안은 기초학년+5년제로 현행 초등학교를 6년에서 5년으로 1년 단축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의 만 5세아를 위한 1년 교육과정이 연계되는 형태

- 초등학교 최종 학년인 5학년 교육과정과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이 재편성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이 내용 적합성 및 연계가 이상적일 경우에는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교육과정을 각각 2.5년 교육과정으로 압축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특히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연계 및 내용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5년간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 내용 재조정이 필요
 - 제3안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만 3~4세, K학년,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의 분교형 종합학교 체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기초학년+2년제를 도입하는 것임.
 - 농산어촌의 K학년과 초등학교 저학년 현계 종합학교 체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구성
-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 대해 무상보육비를 지원하는 원칙을 반영하되 아동 1인당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이나 표준교육비용에 따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교사의 질적 수준을 두 기관에서 통합하는 방안이나 교사 대 아동비율을 동일화하는 방안 등 두 시설의 차이를 고려하되 시설의 기준이나 교사배치, 교사수준에 대해 질적 수렴을 이루어나가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시나리오를 통해 제시하였음.
 - 아동 1인당 단가에 따라 정부소요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6천억~1조 수준임.
- 위의 만5세 학제개편의 세 가지 대안과는 별도로 만 5세의 학제가 개편될 경우 발생하는 아동 개인별 학습능력, 정서발달 등의 차이로 인한 조기진급이나 유예를 보다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제탄력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음.

- 위의 세 가지 대안 중 만 5세에 대해 기초학년을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예산소요나 제약조건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만 5세 유아교육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기초학년 도입을 통해 만 5세에 대한 유아교육 커리큘럼을 통일하고 교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영유아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임.
- 현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근간을 변화시키지 않고 두 시설에서 서비스를 수혜받고 있는 만 5세 아동 모두에게 기초학년제에 근거하여 1일 5시간 교육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만 5세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준다는 실리적인 목적달성 가능
- 현행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통일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만 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지원방향이 나 향후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관계설정 등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음.
- 현행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되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능적 통일을 지속적으로 구현해간다면 기초학년 도입이나 현행체제의 개선은 사실은 유사한 정책방향이 될 가능성이 큼.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09).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유치원 현황.
- 김명순, 김혜금, 이운선, 안현숙, 이나리, 김의정, 이수빈(2009).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보건복지부.

- 김재인, 이향란(2005). 스웨덴과 일본의 방과 후 아동보육제도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5(2), 111-148.
- 김정현, 박애경(2006). 이탈리아 영아보육과 유아교육행정 체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6(1), 41-62.
- 김정효(2007). 초등학교 학제 개편에 대한 검토: 유-5-3-4-4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0(2), 231-251.
-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김현숙(2007). 연령별 적정학급 규모를 통한 유아의무교육대비 표준교육비 산정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현숙, 신은수, 유영의, 전홍주, 노재은(2008). 연령별 적정학급규모를 통한 유아의무교육대비 표준교육비 산정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7 보육통계.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0). 보육사업안내.
- 부산광역시교육연구원(1997). 조기진급 대상아동 선정과 압축교육과정의 구안적용. 전포초등학교.
- 서울시교육청(1996). 조기진급 및 졸업제의 이론과 실제. '96장학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2009). 서울교육통계연보.
- 유아교육지원과(2009). 유아교육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 이옥, 김은설, 신나리, 문무경, 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화도(2007). 프랑스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 연구. *유아교육연구*, 27(5), 5-31.
- 조부경, 김영실, 신은수(2006). [쟁점연구] 어린이 삶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유아교육 학제 개편. *유아교육연구*, 26(3), 5-32.
- 최순자(2007). 일본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최근 동향 검토. *생태유아교육연구*, 6(1), 161-175.
- 통계청(2007). 장래인구추계.

- 하윤수, 이일주, 김도기(2007). 초등학교 학제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 분석. 한국초등교육학회(편), 제1회 학술발표회: 초등교육의 발전과 학제 개편.
- 한국교육개발원(2009). 2009 교육통계연보.
- 한국교육개발원(2009). 2009 교육통계연보.
- 한유미, 오연주, 권정윤, 강기숙, 백석인(2005). 스웨덴 보육제도의 재정구조. 스칸디나비아 연구, 5, 417-430.
- DeMeis, J., & Stearns, E. (1992). Relationship of school entrance age to academic and social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6(1), 20-27.
- Doherty, G. (2005). *Quality and predictors of quality in Canadian child care*. Centre of Excellenc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From <http://www.excellence-earlychildhood.ca>
- European Commission(2009). *The structure of European education systems 2009/2010*. Brussel, Belgium: European Commission.
- Morrison, F. J., Griffith, E. M., & Alberts, D. M. (1997). Nature-nature in the classroom: Entrance age, school readiness, and learning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54-262.
- NAEYC(2009). NAEYC Quality Rating Improvement Scale(QRIS) Toolkit. <http://www.naeyc.org>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aris.
- OECD(2009a). *Education at a glance*. Paris, France: OECD.
- OECD(2009b). OECD family database. Retrieved April 5, 2010, From <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 Spitzer, S., Cupp, R., & Parke, R. D. (1995). School entrance age, social acceptance, and self-perceptions in kindergarten and 1st grad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433-450.
- Sweetland, J. D., & DeSimone, P. A. (1987). Age of entry, sex,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sychology of the Schools*, 24, 406-412.

부록

1-1. 만 5세 일괄 편입 시 소요 예산(1안) : 초등학교

(단위: 명, 개, 백만원)

초등학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만 5세 인구추계	442,373	440,129	436,478	431,714	425,809	419,209	
만 5세 초등입학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만 5세 초등입학아수	442,373	440,129	436,478	431,714	425,809	419,209	
만 6세 인구추계	435,331	441,438	439,201	435,560	430,808	424,917	
만 6세 초등입학아수	435,331 (100%)						
초등1년 취학아수	877,704	440,129	436,478	431,714	425,809	419,209	
전국 총 증가학생수	442,373						
도시지역 증가학생수(83%)	367,170						
증가학급수	12,239						
증가학급수의 50% 학급증설	6,120						
학급증설 비용 (100)	612,000						612,000
증가학급수의 50% 학교신설수	170						
학교신설비(A) (45,000)	7,650,000						7,650,000

1-2. 만 5세 일괄 편입 시 소요 예산(1안) : 중·고등학교

(단위: 명, 개, 백만원)

중학교	2018	2019	2020	총계	고등학교	2021	2022	2023	총계	
만 11세 인구추계	435,805	433,608	430,021		만14세 인구추계	431,643	429,472	425,924		
만 11세 중등입학비율	100%	100%	100%		만14세 고등입학비율	100%	100%	100%		
만 11세 중등입학아수	435,805	433,608	430,021		만14세 고등입학아수	431,643	429,472	425,924		
만 12세 인구추계	428,467	434,489	432,301		만15세 인구추계	423,865	429,827	427,666		
만 12세 중등입학아수 (100%)	428,467				만15세 고등입학아수 (100%)	423,865				
중등1년 취학아수	864,272	433,608	430,021		고등1년 취학아수	855,508	429,472	425,924		
전국 총 증가학생수	435,805				전국 총 증가학생수	431,643				
도시지역 증가학생수 (86%)	374,792				도시지역 증가학생수 (86%)	371,213				
증가학급수	10,708				증가학급수	10,606				
증가학급수의 50% 학급증설	5,354				증가학급수의 50% 학급증설	5,303				
학급증설비용(100)	535,400				학급증설비용(100)	530,300				530,300
증가학급수의 50% 학교신설수	178				증가학급수의 50% 학교신설수	177				
학교신설비(A) (35,000)	6,230,000				6,230,000	학교신설비(A) (35,000)	6,195,000			
학교신설비(B) (30,000)	5,340,000			5,340,000	학교신설비(B) (30,000)	5,310,000			5,310,000	
증가교원수	21,951				증가교원수	26,515				
교원인건비(40)	878,040				교원인건비(40)	1,060,600				
교원인건비(누적분)	-	878,040	878,040	2,634,120	교원인건비(누적분)	-	1,060,600	1,060,600	3,181,800	
소요예산(A)	9,399,520				소요예산(A)	9,907,100				
소요예산(B)	8,509,520				소요예산(B)	9,022,100				

2-1. 만 5세 3개월 분할 편입 시 소요 예산(2안) : 초등학교

(단위: 명, 개, 백만원)

초등학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만5세 인구추계	442,373	440,129	436,478	431,714	425,809	419,209	412,026	404,757	397,615	
만5세 초등입학비율	25%	50%	75%	100%	100%	100%	100%	100%	100%	
만5세 초등입학아수	110,593	220,065	327,359	431,714	425,809	419,209	412,026	404,757	397,615	
만6세 인구추계	435,331	441,438	439,201	435,560	430,808	424,917	418,332	411,166	403,915	
만6세 초등입학아수	435,331 (100%)	331,079 (75%)	219,601 (50%)	108,890 (25%)						
초등1년 취학아수	545,924	551,143	546,959	540,604	425,809	419,209	412,026	404,757	397,615	
전국 총 증가학생수	110,593	110,032	109,120	107,929						
도시지역 증가학생수(83%)	91,792	91,327	90,569	89,581						
증가학급수	3,060	3,044	3,019	2,986						
증가학급수의 50% 학급증설	1,530	1,522	1,510	1,493						
학급증설비용 (100)	153,000	152,200	151,000	149,300						605,500
증가학급수의 학교신설수	43	42	42	41						
학교신설비(A) (45,000)	1,935,000	1,890,000	1,890,000	1,845,000						7,560,000
학교신설비(B) (40,000)	1,720,000	1,680,000	1,680,000	1,640,000						6,720,000
학교신설비(C) (35,000)	1,505,000	1,470,000	1,470,000	1,435,000						5,880,000

초등학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증가교원수	3,519	3,501	3,472	3,434						
교원 인건비(40)	140,760	140,040	138,880	137,360						
교원 인건비 (누적분)	-	140,760	280,800	419,680	557,040	557,040	416,280	276,240	137,360	3,342,240
방과후 돌봄교실 대상아동수	55,297	55,016	54,560	53,964						
방과후 돌봄교실 대상학급수	2,765	2,751	2,728	2,698						
방과후 돌봄교실 설치비(20)	55,300	55,020	54,560	53,960						218,840
방과후 돌봄교실 연간운영비 (35)	96,775	96,285	95,480	94,430						
방과후 돌봄교실 연간운영비 (누적분)	-	96,775	193,060	288,540	382,970	382,970	286,195	189,910	94,430	2,297,820

소요예산(A)	14,024,400
소요예산(B)	13,184,400
소요예산(C)	12,344,400

3-1. 만 5세 2개월 분할 편입 시 소요 예산(3안) : 초등학교

(단위: 명, 개, 백만원)

초등학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만5세 인구추계	442,373	440,129	436,478	431,714	425,809	419,209	412,026	404,757	397,615	390,635	384,436	
만5세 초등입학비율	17%	34%	51%	68%	85%	100%						
만5세 초등입학아수	75,203	149,644	222,604	293,566	361,938	419,209	412,026	404,757	397,615	390,635	384,436	
만6세 인구추계	435,331	441,438	439,201	435,560	430,808	424,917	418,332	411,166	403,915	396,788	389,824	
만6세 초등입학아수	435,331 (100%)	366,394 (83%)	289,873 (66%)	213,424 (49%)	137,859 (32%)	72,236 (17%)						
초등1년 취학아수	510,534	516,037	512,476	506,990	499,796	491,445	412,026	404,757	397,615	390,635	384,436	
전국 총 증가학생수	75,203	74,822	74,201	73,391	72,388	62,881						
도시지역 증가학생수(83%)	62,419	62,102	61,587	60,915	60,082	52,192						
증가학급수	2,081	2,070	2,053	2,030	2,003	1,740						
증가학급수의 50% 학급증설	1,041	1,035	1,027	1,015	1,002	870						
학급증설비용 (100)	104,100	103,500	102,700	101,500	100,200	87,000						599,000
증가학급수의 학교신설수	29	29	29	28	28	24						
학교신설비(A) (45,000)	1,305,000 0	1,305,000 0	1,305,000 0	1,260,000 0	1,260,000 0	1,080,000 0						7,515,000
학교신설비(B) (40,000)	1,160,000	1,160,000	1,160,000	1,120,000	1,120,000	960,000						6,680,000

초등학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학교신설비(C) (35,000)	1,015,000	1,015,000	1,015,000	980,000	980,000	840,000						5,845,000
증가교원수	2,393	2,381	2,361	2,335	2,303	2,001						
교원 인건비(40)	95,720	95,240	94,440	93,400	92,120	80,040						3,305,760
교원 인건비 (누적분)	-	95,720	190,960	285,400	378,800	470,920	455,240	360,000	265,560	172,160	80,040	
방과후 돌봄교실 대상아동수	37,602	37,411	37,101	36,696	36,194	31,441						
방과후 돌봄교실 대상학급수	1,880	1,871	1,855	1,835	1,810	1,572						
방과후 돌봄교실 설치비(20)	37,600	37,420	37,100	36,700	36,200	31,440						216,460
방과후 돌봄교실 연간운영비(35)	65,800	65,485	64,925	64,225	63,350	55,020						2,272,830
방과후 돌봄교실 연간운영비(누적분)	-	65,800	131,285	196,210	260,435	323,785	313,005	247,520	182,595	118,370	55,020	
소요예산(A)												13,909,050
소요예산(B)												13,074,050
소요예산(C)												12,239,050

3-3. 만 5세 2개월 분할 편입 시 소요 예산(3안) : 고등학교

(단위: 명, 개, 백만원)

고등학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총계
만14세 인구추계	431,643	429,472	425,924	421,291	415,543	409,118	402,120	395,039	
만14세 고등입학비율	17%	34%	51%	68%	85%	100%			
만14세 고등입학아수	73,379	146,020	217,221	286,478	376,017	409,118			
만15세 인구추계	423,865	429,827	427,666	424,134	419,522	413,800	407,403	400,436	
만15세 고등입학아수	423,865 (100%)	356,756 (83%)	282,260 (66%)	207,826 (49%)	141,559 (32%)	75,203 (17%)			
고등1년 취학아수	497,244	502,777	499,481	494,304	517,576	484,321	407,403	400,436	
전국 총 증가학생수	73,379	73,010	72,407	71,619	70,642	61,368			
도시지역 증가학생수 (86%)	63,106	62,789	62,270	61,593	60,752	52,776			
증가학급수	1,803	1,794	1,779	1,760	1,736	1,508			
증가학급수의 50% 학급증설	902	897	890	880	868	754			
학급증설비용(100)	90,200	89,700	89,000	88,000	86,800	75,400			519,100
증가학급수의 50% 학교신설수	30	30	30	29	29	25			
학교신설비(A) (35,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15,000	1,015,000	875,000			6,055,000
학교신설비(B) (30,000)	900,000	900,000	900,000	870,000	870,000	750,000			5,190,000
증가교원수	4,508	4,485	4,448	4,400	4,340	3,770			
교원인건비(40)	180,320	179,400	177,920	176,000	173,600	150,800			
교원인건비(누적분)	-	180,320	359,720	359,720	359,720	359,720	330,200	150,800	3,138,240
소요예산(A)									9,712,340
소요예산(B)									8,847,340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

발행일 2011. 2.

발행처 교육과학기술부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www.nest.go.kr

인 쇄 한학문화 02)393-6332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